

베트남전쟁 기억 승화를 위한 연구

제 정 관(국방대학교 교수)

박 군 열(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티우민프엉(Trieu Minh Phuong)(베트남 국방대학교 교무처장)

- < >
1. 서 론
 2. 베트남전쟁의 개황과 관련연구의 이론적 배경
 3.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협력을 위한 토대로서 전쟁기억 승화
 4. 베트남전쟁관련 주요 기억 유형 분석
 5. 베트남전쟁에 대한 재평가 및 기억 승화 방향
 6. 결 론

1.

가.

“뭣 하러 나라를 위해 싸웠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날까지 이렇게 혼자 갈 것을” 2005년 3월 1일 서울 도봉구 세종병원 영안실. 이날 새벽 서울 노원구 상계

동 7평짜리 임대주택에서 숨을 거둔 이모(62·복지관 청소원)씨 동료들은 이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오열했다. 이씨를 처음 발견한 동료 김모(43·여)씨는 “가끔 (이씨가) ‘나라를 위해 그렇게 고생했는데 결국 내 몸에 병만 남았다’고 한탄했다”며 “그래도 항상 성실히 살려고 노력했던 분”이라며 눈물을 쏟았다. 1) (강조 : 필자)

이 내용은 “남베트남참전용사의 쓸쓸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한 일간지에 실린 기사이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스며있는데, 첫째, “나라를 위해”라는 대목에서 ‘국가에 대한 봉사’와 그 ‘반대급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둘째, “싸웠소”라는 대목에서는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군인으로서 소임을 다했다는 의미와 참전자를 소위 ‘용병’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군인에 대한 폄하 감정이 동시에 느껴지며, 셋째, “고통스럽게”라는 대목은 참전용사의 후유증을 직접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베트남전쟁은 중층적 복잡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쟁에 대한 해석방법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전쟁해석에 있어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갈등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²⁾ 1945년 광복과 1948년 헌법이 제정되고 난 뒤 국가로서의 제 모습을 갖고 치룬 6·25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은 그 이념적 갈등양상과 민족적 범주를 뛰어 넘어 한국민 스스로에게 많은 갈등요인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³⁾ 특히 베트남전쟁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갈등양상

1) 『세계일보』, 2005. 3. 2.

2) 전쟁에 대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갈등요인의 배아에 대해 대한민국 건국이전까지 소급하는 연구도 있다(오운호, “한국 영화와 내면화된 전쟁문화”, 한국문화사학회, 『역사와 문화9』, 푸른역사, 2004, pp. 93~ 94).

3) 흔히 ‘베트남전쟁’이라고 할 때, 베트남 사람들이 겪은 전쟁은, 첫째, 제2차 세계대전이 계속되고 있던 1943년 11월 카이로에서 전쟁수행과 전후처리를 위한 회담 결과에 따라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다시금 확보하게 되자 이에 대항한 항불전쟁을 말한다. 이를 민족해방전쟁이라고도 한다. 둘째, 디엔 비엔 푸(Dien Bien Phu) 전투에서 프랑스에 대항한 베트남의 승리로 1954년 7월 20일 제네바 협정이 조인됨으로서 북위 17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남북으로 단절된 채 베트남 민족끼리의 전쟁을 벌이게 된다. 그런데 각각의 남북 베트남에 대해 이념적인 기준에 따라 주변 및 관련국들의 전쟁 참여로 인해 남북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이념전쟁이 펼쳐지게 된다. 셋째, 관련국들이 철수하고 난 뒤, 남베트남이 일방이 되고 북베트남과 남베트남내의 민족해방전선(NLF: National Front for the Liberation of South Vietnam, 약칭으로는 National Liberation Front임)이 일방이 되어 쌍방간에 진행된 외부 개입없이 진행된 베트남민족 내부의 이념전쟁이다. 한국은 이상의 세 가지 전쟁 중에서 두 번째에 참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베트남전쟁이란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는 한, 두 번째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으로 전개된 것은 그 형태로 볼 때 한국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바로 이 점은 한국의 국가 탄생이 시민사회의 자발적 동기유발에 의해 비롯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기존 국가중심의 전쟁해석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에 이르러 한국 내부에서 많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베트남전쟁이 국가중심에서 시민사회중심의 재해석이 촉발된 것은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양민학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1999년 9월이었다.⁴⁾ 이 시기는 한국전쟁 중 미군에 의해 ‘노근리’에서 민간인이 피살되었다는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그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였고, 또한 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정부의 사과와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시기였다.

양민학살문제가 제기되고 난 후, 그러한 일들이 사실로 속속 드러남에 따라 한 언론사에 의해 지속적인 ‘베트남전 캠페인’이 이루어졌으며, 지식인과 학생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베트남전 진실위원회’가 결성되기도 했다. 이 단체는 ‘베트남전역사기 념관’ 건립 추진운동 등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진실찾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전 참전자들은 실제 전쟁에 참여도 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가 하면,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자기고백을 하기도 했다.⁵⁾

이와 같이 적어도 한국내에서의 베트남전쟁 문제는 그 자체적인 요인에 의해 처음

4) 최초의 보도는 『한겨레21』의 베트남 현지지의 구수정이라는 한국 유학생 통신원에 의해 “아, 몸서리쳐지는 한국군!”이라는 제하의 기사내용(『한겨레21』, 제256호, 1999. 5. 6.)이며, 이어서 9월에는 “특집 베트남 종단 특별리포” 총 7개 기사가 특별취재 형식으로 실렸다(『한겨레21』, 제273호, 1999. 9. 2.): 사실 1992년에 이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바 있다. 즉 민간인을 베트콩으로 오인 사살하고 귀를 잘라 전과를 보고하였으나, 그 중 한명이 생존하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당시 상황을 보도함으로써 베트남 전에서의 민간인 학살의 존재를 최초로 기사화했다고 할 수 있다(“전두환 연대에서의 학살사건”, 『월간조선』 4월호, 1992). 하지만 이 보도는 당시 노태우 정부 말기 문민화를 요망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베트남전쟁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단행본이 출간되었는데, 전문외교관에 의해 저술되었다: 이용준, 『베트남, 잊혀진 전쟁의 상흔을 찾아서』, 조선일보사, 2003.

5) 참전용사 자기고백의 경우, 김진선을 꼽을 수 있다. 그는 베트남전쟁에 맹호부대 중대장으로 참전했는데, 베트콩들에게 현상금이 붙었을 정도로 강경한 전투를 했다고 한다. 후에 4성장군까지 진출하였다. 그런데 자신의 참전기간 중 겪었던 일들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책자로 펴내게 되어 같이 참전한 많은 사람들로 부터 패배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의 한글본 책자는 첫 주한 베트남대사를 지낸 응웬푸핑에 의해 2002년 베트남어로 『전쟁의 기억』이라는 제목하에 출판되었다(『경향신문』, 2002. 8. 12). (김진선, 『산 자의 전쟁, 죽은 자의 전쟁』, 중앙 M&B, 2000)

부터 부각된 것이 아니라, 한국내의 다른 쟁점적 사안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전쟁해석에 대한 시민사회의 일종의 도전은 6·25한국전쟁의 정사(正史)에 공식적으로 반영되기도 했다.⁶⁾

따라서 한국사회에서의 베트남전쟁 문제는 그 전쟁 자체의 문제로 접어 들 수 없게 된 것이다. 역으로 베트남전쟁에 대한 전향적인 재해석의 틀을 제시하는 것은 현대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쟁점 사안들에 대한 일종의 기준점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것이 본 연구를 착수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베트남전쟁의 당사자들이 역사적 사실로서의 전쟁 자체에 대한 기억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에게 있어서 베트남전쟁은 일반적으로 전쟁이 갖는 복잡성보다 훨씬 더 복잡한 특성을 갖고 있다.⁷⁾ 전쟁의 구도를 객관화시켜보면, 전쟁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당사자 즉 군인들의 대치국면 이외에도 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게 된다. 이를 보다 시간적으로 입체화시켜보면, 세대간에도 매우 복합적인 현상을 야기 시킨다.

한국과 베트남 국민들에게 있어서 베트남전쟁이 갖는 이와 같은 복잡성은 베트남전쟁을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2004년 7월 발간·배포한 『6·25전쟁사』(2004. 7) 중 4·3사건 관련 내용을 수정배포했다. 주요 수정 내용은 ‘무장폭동’이란 용어를 ‘제주4·3특별법’에 명시한 대로 ‘4·3사건’ 또는 ‘소요사태’로 대체하고 ‘포로가 된 인민유격대도 처형하지 않았고 양민으로 인정된 자는 전원 귀향조치했다’, ‘주민들의 협조로 남원면 의귀리에서 30여명 사살’ 등의 내용은 삭제했다. 반면 ‘제주도 경비사령부가 1948년 10월 17일 해안선부터 5km 이외의 지점에 대한 통행금지를 포고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폭도배로 인정, 총살에 처할 것’ 등을 추가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행정자치부 산하 제주4·3지원단, 제주4·3유족회 등 관련 단체,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연구했었던 많은 사람들(권귀숙, 2001; 2004 등)의 공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전쟁해석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전과 국가의 권위 실추”로 요약된다. 따라서 전쟁에 대한 국가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쟁 자체 및 작은 전투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평가에 있어서 권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권귀숙, “제주 4·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회학』 35(5), 한국사회학회, 2001, pp.199~231; 권귀숙, “기억의 재구성 과정: 후체험 세대의 4·3”, 『한국사회학』 38(1), 한국사회학회, 2004, pp.107~130.

7) John Keegan, 유병진 역, 『세계전쟁사』 [A History of Warfare], 까치, 1996.

다른 창작뮤지컬 『블루 사이공』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⁸⁾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 김문석 상사는 함경북도 북청군 신창읍 토속리 1033번지가 고향으로 10대의 소년 시절에 빨갱이라고 놀림을 받았으며, 위협에 굴복하여 마을주민들을 인민군들의 총탄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는 마을을 떠나 객사하는 등 이데올로기가 만들어 낸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과 전쟁의 아픈 상처를 가슴에 안고 있는 퇴역 군인이다.

김추자의 노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가 조용히 흐르다 음악이 차차 고조되면서 막이 오르고 무대에는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퇴역군인 김상사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 이를 끌고 있는 것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딸 김신창이다.

박정희 정부시절, 태극기와 베트남 국기가 나란히 걸리고 그 좌우로는 ‘한국은 공산주의를 타파하고 자유를 수호한다’ ‘이기고 돌아오라’는 선전구호가 아로새겨진 가운데 ‘6.25전쟁 당시 우방의 파병에 보답한다’라는 내용의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과 함께 남베트남 파병식이 성대하게 펼쳐진다.

남베트남에서 지내던 어느날 김상사는 댄스클럽 파라다이스 바에서 운명의 여인 후엔을 만나게 된다. 후엔의 아버지를 포함한 선대 가족은 프랑스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으며 이러한 집안의 과거 가족사가 동기가 되어 후엔 또한 베트남콩으로서 활동하고 있던 여인이었다. 전쟁의 상처를 공유하고 있는 김상사와 후엔은 서로의 과거 전쟁에 의한 상처를 보듬으며 불 같은 사랑에 빠져 들게 되고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도 잠시 지나지 않았다.

케산전투에 참전하게 된 김상사에게 후엔은 참전을 만류하고, 같이 도망갈 것을 제의하지만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김상사는 자신의 애기를 가진 그녀의 만류를 뿌리치고 참전을 결심한다. 후엔은 자신의 힘으로 김상사의 케산전투 참가를 막아서지 못하게 되자 그의 죽음을 예감한다. 김상사는 그녀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북청이라고 지어주고 그녀에게 북에 있는 자신의 고향집 주소를 외우게 한다. 둘은 쫓투~베트남의 추석~의 화려한 연등 속에서 마지막 이별의 긴 포옹을 한다.

결국 케산전투에서 김상사의 부대는 전멸하게 되고, 김상사는 적의 포로가 되지만 후엔의 도움으로 국내로 귀환할 수 있게 된다. 그는 귀국해서 결혼했지만 고엽제 후유증으로 오랜 병고에 시달리게 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딸을 낳게 되자 부인이 도망가고 만다. 병원에서 신음하던 김문석상사는 끝내 권총으로 자살하고 만다. 후엔의 아들이 타이한 김북청이 김상사의 영정을 가지고 김신창을 찾아간다. 남매는 해후한다. 테마음악 블루 사이공이 장중하고, 장엄하게 흐르면서 막이 내린다.

⁸⁾ 이 뮤지컬은 1996년 초연 이후 뮤지컬 관련 온갖 상을 휩쓸며 지난 8년간 꾸준히 공연된 후 2004년 2월 6일~18일간 서울 대학로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고별공연을 했다.

여기서 이 뮤지컬의 내용은 실제 한국군이 참여한 바 없는 케산전투를 운운하고 있는 점 등에서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문화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고를 반영한다고 할 때, 베트남전쟁이 한국과 베트남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신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줄거리를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베트남전쟁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공유했었던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의 연장선상에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단순화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이 탐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표점은 바로 베트남전쟁이 갖는 복잡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베트남전쟁은 또한 베트남과 한국이 현재와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 양국 모두 이 전쟁을 “접어 두고 가자”는 식으로, 과거 청산문제에 대해 분명한 논리를 제시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시 들추어내어 토론할 여지를 계속해서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갈등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는 두 번째 과제이다.

본 연구가 세 번째로 탐구하고자 하는 바는 베트남전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새로운 준거를 찾고자 하는 데 있다. 사실 한국은 베트남전쟁 이전에도 베트남과의 역사적 인연이 있었으며, 전쟁 자체에도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내의 여러 가지 문화적 연결고리가 부분적으로 베트남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베트남전쟁의 복잡성을 규명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과 더불어 베트남전쟁 자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베트남의 과거 군사적 경험을 정리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향후 양국간의 선린우호관계를 도모해 나가는데 있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공유경험으로 인해 더 이상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이 지양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해법으로 다음 세 가지 점을 탐구하여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즉 첫째, 베트남전쟁 자체가 갖는 복잡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베트남전쟁에 대한 한국내부의 갈등적 여론 극복논리의 개발이다. 셋째, 베트남전쟁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쟁에 대한 문화적·윤리적 접근법(cultural and ethical approach)을 취할 것이다. 이는 한국과 베트남간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분석틀이다. 선행연구가 주로 거대담론 위주의 이념적, 주제적 접근이었다면, 본 연구는 생략된 행간을 읽고, 불편부당하지 않는 입장에서 공고한 향후의 양국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⁹⁾

실제로 전쟁에 대한 역사적 현상은 그에 관여한 모든 사람, 사물 그리고 사건들을 복합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역사는 공존의 장이다. 이 역사의 장에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매순간마다 대립과 화합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공존한다. 따라서 하나의 진리만이 강요될 수 없다. 한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에게 있어서 베트남전쟁의 기억은 아직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지속되는 일종의 역사적 개념이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또는 진실)에 대한 기억은 이와 관련된 개인과 공동체의 오늘과 내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객관적 사실 자체가 비록 특정 순간과 장소에서 실재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시간과 장소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요약, 재해석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원들도 자연히 바뀌게 됨에 따라 전승의 절차도 밝게 되면서 과거사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폭은 점점 넓어져간다.

베트남전쟁의 과거 기억은 현재에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주로 탐

9) “문화적 접근”은 John Keegan(1996)과 van Peurson(1994)의 생각에서 찾을 수 있다. Keegan은 자신의 책자 서문에서 ‘전쟁은 문화적 행위’(cultural activity)라고 정의하고, 단순한 군사적 다툼행위로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최근 이집트 공영방송이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를 방영했는데, 이를 계기로 이슬람국가들이 한국군(자이툰부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보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2005. 2. 23 검색). 또한 van Peurson은 문화에 대해 언급하기를 “정태적(static)이라기보다는 역동적(dynamic)이며, 따라서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에 더 가깝다”고 말한 바 있다. John Keegan, 앞의 책; C.A. van Peurson, 강영안 역,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Cultuur in Stroomversnelling], 서광사, 1994. 한편 “윤리적 접근”은 기존의 전쟁관련 연구가 군사학적 전략·전술을 주로 다루어 온 것에 대해 반성적 전체를 하고, 전쟁을 정의전쟁론의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다. 정의전쟁론의 핵심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조건이 전제되면 전쟁을 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또한 그러한 명분에 입각하여 실제 전투행위에 있어서도 도덕적 취지가 구현되는 것을 전제한다. 정의전쟁론의 연구에 대해서는 이후에 보다 상세히 다룰 것이다.

구하고자 했던, 베트남전쟁 자체의 복잡성과 베트남전쟁에 대한 평가기준의 재설정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가설적 방법론을 동원해야 한다. 첫째, 전쟁 공동체(war community) 개념이다. 전쟁의 중층적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모든 전쟁에는 전투 당사자의 실질적인 전투행위 이외에도 다양한 인적·물적인 요소들이 개입된다. 이러한 제반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전쟁 공동체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의 개념이다. 정의전쟁론은 크게 “전쟁 자체의 정당성(Jus ad Bellum)”과 “전쟁 수행상의 정당성(Jus in Bello)”으로 나뉜다. 소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적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쟁자체의 성격에 천착하여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투행위에 있어서 반륜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인해 그 전쟁자체의 정당성이 문제시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역으로 부당한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정당한 행동을 했을 경우 이를 정당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전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쟁 자체에 대한 평가와 전투행위에 있어서의 행위에 대한 평가로 이원분류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정의전쟁론은 이러한 필요성을 해소해준다. 여기에 정의전쟁론의 또 하나의 분석도구로 “전쟁자체와 전투행위간의 상관적 정당성(corelated justice)”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전쟁자체의 정당성과 전투행위에 있어서의 정당성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다루는 것이다.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베트남과 한국의 과거 아픈 공유경험을 토대로 발전적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 및 현존 관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편견을 긍정적으로 승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전제하고자 한다.

1. 가 .
2. , .

3. ()
4. , 가
5. 가
6. 가
7. , 가 “ ”
8. 가 가
9. 가 (=)가 , 가
(mission)

본 연구는 상기 연구 목적 구현을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자의 편성을 한국의 학자와 베트남의 군사전문가로 하였다. 전체적인 기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중심 시각(core scope)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체로 한국의 입장에서 베트남으로부터의 어떤 교훈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 연구수행 기관의 기본적인 입장을 참작하였다.

따라서 분석의 시각 자체는 한국의 입장이 될 것이지만, 베트남 자체의 관련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은 이미 한국내에 알려진 시각이나 자료의 재생이 아니라 베트남측 연구자의 ‘있는 그대로’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측 연구자들의 이념적 편향성은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지 않음을 밝힌다.

2.

가.

1) 전쟁자체에 대한 개황

베트남전쟁의 개황은 배경, 규모, 결과(피해 등), 그리고 철수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베트남전쟁의 배경은 당시의 국제정세에서 그 요인을 찾는 경우가 지배적이다.¹⁰⁾ 한국의 참전은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 진행되었다. 미국은 공산주의가 동남아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중국과 소련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던 와중에 베트남내부에서의 공산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데 총력을 기울였다.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은 여기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¹¹⁾ 전쟁참전 배경은 미국과 한국의 사정이 상이한 면이 있다. 우선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된 것은 유럽에서의 나치에 의한 패권경향을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었다.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철수를 결심했던 1954년은 공산주의 팽창의 도미노 현상이 극에 달했다. 이미 동유럽과 중국이 공산화되었으며, 한반도에서 발생한 6·25전쟁이 겨우 봉합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념의 대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반도 적화에 실패한 공산주의 팽창의 기세가 동남아시아로 방향을 바꿈으로써, 베트남이 이념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베트남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상황은 ‘독립과 민족의 통일을 위한 투쟁’이었다. 그러나 자유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냉전체제에 의한 이념 대립의 일환’이었다. 이 때문에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철수하자,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한 후견국의 역할을 미국이 떠맡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된 남베트남의 젊은 지도자 응

10) 당시 프랑스의 “공산주의 저지 전략”과 미국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상당히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 전자는 기존의 식민지배체제를 복구하기 위한 저의를 갖고 있었으며, 미국은 반패권(비록 그것이 공산주의가 아닐지라도)의 기본 골격을 견지했었다.

11) 최용호,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127~130.

오딘지엠(Ngo Dinh Diem)은 1955년 10월 26일, 호찌민의 북베트남에 대항하는 베트남공화국(Republic of Vietnam)을 건국하고, 대통령에 취임했다.¹²⁾ 이로서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하는 새로운 남·북 분단체제가 형성되었다. 미국이 베트남 사태에 개입하자, 호찌민은 강력히 반발했다. 그리고 남부에서 활동하고 있던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과 함께 지엠 정부의 전복을 시도함으로써,¹³⁾ 제2차 베트남전쟁, 즉 항미(抗美)전쟁에 돌입했다. 남베트남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자,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군사고문단’에 이어 전투병력을 파병하여, 베트남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그리고 우방국의 지원을 호소함에 따라 한국정부도 2개의 전투사단을 파병하게 되었다.¹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적극 개입하자,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남베트남 정부가 머지 않아 국내의 게릴라를 제압하고, 동남아에서 공산주의 팽창을 막는 보루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 미국 정부는 베트남의 프랑스 세력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워싱턴이 보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전쟁이었다. 중국 공산당이 이미 내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제 그들이 세력을 확장해 북동쪽 국경으로는 한반도의 공산주의자들을 지원하고 남동쪽으로는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을 무장시킬 것처럼 보였다. 그리하여 1953년에 미국은 베트남에서 프랑스 군대가 사용한 무기와 탄약의 대부분을 공급했고 전쟁 비용도 3분의 2가량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베트민과 프랑스의 협상이 제네바에서 체결된 한반도 평화협정에 덧붙여졌다.¹⁵⁾ 트루만 대통령의 인도차이나에 관한 인식은 1945년과

12) 호찌민(Ho Chi Minh, 胡志明)의 본명은 응웬아이꾸억(Nguyen Ai Quoc)이다.

13) 이와 관련된 다음 자료 참조: “1959년에 하노이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남베트남의 무장반란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954년에 북쪽으로 철수했던 남베트남 출신의 공산당 간부들이 게릴라 투쟁을 지도하기 위해 다시 파견됐다. 이제 공산당의 정책은 베트민처럼 모든 계급이 참여하는 민족해방전선(NLF)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 방향은 수십만 명의 무토지 농민이 게릴라 부대로 몰려드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다”(Jonathan Neale, 정병선 역, 『미국의 베트남 전쟁: 미국은 어떻게 베트남에서 패배했는가』, 책갈피, 2004, p.85)

14) 미국은 철저히 반패권을 주장했고, 공교롭게도 당시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패권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은 반공을 지향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른 어떤 이념일지라도 당시의 미국의 이 미지를 훼손하는 경우는 사실이 묵인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15) 위의 책, pp.84~85.

1952년 사이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켰다. 1945년 프랑스와 호찌민 간에 적대행위가 일어났을 때 트루만은 단호하게 호찌민의 편을 들었다. 그는 전쟁을 일으킨 것은 프랑스이므로 프랑스가 식민지 야망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했다.¹⁶⁾

그러나 그 후 트루만 대통령과 미국 지도층의 이러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반전현상은 인도차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사태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외부에서 전개된 국제적 상황변화 때문이었다. 1948년에 이르러서 미국 국민들의 세계적 역할에 대한 개념이 크게 바뀌었다. 위기는 베를린에서, 그리스에서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동서간의 분단 현상도 더욱 구체화되고 굳어졌다. “철의 장막”과 “봉쇄”라는 개념이 미국의 대외정책을 온통 지배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동서 양진영의 틈은 날마다 더 깊어만 갔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창시자인 트루만 대통령은 자신을 무자비한 전체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하여 싸울 자유세계의 지도자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¹⁷⁾

트루만 대통령은 무서운 적이 동남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프랑스를 인도차이나에 계속 주둔시키기를 바랐다. 1950년 5월, 그리핀 사절단은 인도차이나 주둔 프랑스군에 2천3백만 달러의 경제원조와 1천5백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하자는 원조계획을 건의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며칠 후, 트루만 대통령은 인도차이나로 수송될 첫 항공기의 선적을 승인하였다. 이외에도 상호방위원조계획에 따른 1억1천9백만 달러의 군사원조를 프랑스에 제공하였다. 1952년에 이 원조는 3억 달러로 증액되었다.¹⁸⁾

1954년 중엽 제네바회담과 그 몇 주 후 동남아조약기구(SEATO)의 체결을 계기로,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의 군사개입은 종결되고 미국의 군사력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제네바협상에서는 인도차이나에서의 적대행위를 종식시키고,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3개의 독립국가를 수립하기로 하는 등 몇 개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서 베트남에 대한 조항은 17도선에 “임시군사분계선”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었다. 호찌

16) John G. Stoessinger, 김중구·채한국 역, 『전쟁의 원인』,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8, p.112.

17) 위의 책, p.115.

18) 위의 책, p.116.

민군은 이 선의 북쪽에서 재편성하게 되었다. 그 선은 군사적 의미만을 띠었고, 남베트남의 정치적인 통일은 2년 후에 캐나다, 인도, 폴란드 등 3개 중립국으로 구성된 국제관리위원회의 감시하에 실시되는 총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 호찌민으로서는 1956년의 총선거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정 조항을 수락할 수 있었다. 소련과 중공은 그들이 최근에 채택한 평화공존노선에 따라 호찌민에게 선거에서 그의 승리가 확실하니 걱정 말고 협정조항을 수락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제네바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 정부는 제네바회담의 막바지에 일방적으로 화해를 방해하는 위협이나 힘의 사용을 자제하기로 서약하고, 협정의 어떠한 위반사항일지라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담에서 미국의 일반적인 입장은 국회의원의 선거를 앞두고 아이젠하워가 아시아 평화의 창조자라는 것을 국내 여론에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였기 때문에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더욱이 인도차이나의 평화적 해결을 방해한다면, 유럽 방어계획에 프랑스가 참여하지 않을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상충되는 고려사항으로 말미암아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제네바협정과 관계를 끊고 아시아가 더 이상 공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다른 해결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해답이 바로 동남아조약기구를 만드는 것이었다. 덜레스 국무장관은 이제 전쟁이 끝났으므로 미국은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방어체제를 만들어 “캄보디아, 라오스, 남베트남이라는 진정한 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단언하였다. 마닐라에서 동남아조약기구를 결성하는 조약에 서명하던 날, 8개 조약국은 부가적인 의정서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자유남베트남을 이 기구의 보호 하에 두기로 하였다. 미국은 이처럼 이미 제네바에서 결론이 난 일을 뒤집기 위하여 동남아조약기구를 창설하였고, 남베트남을 하나의 독립국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¹⁹⁾

한편 한국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배경은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국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 즉 한국 내부의 요인과 미국의 국제전략 속에서 협력자로서의 역할 충족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그 순서는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²⁰⁾ 실질적으로 베트남전쟁에 한국군의 파병이 이루어진 것은

19) 위의 책, pp.121~122.

1962년 4월에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베트남의 응오딘지엠 대통령으로부터 “베트남에 공산위협이 심각하다. 도움을 바란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받고,²¹⁾ “한국정부와 국민은 국내자원과 국제적인 관계, 그리고 한국의 이익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자유베트남을 지원하는데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냄으로써 비롯되었다.²²⁾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의 배경에 대해서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 1월 2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베트남이 공산화될 경우, 첫째, 공산주의 침략에 대항하는 자유세력의 대공전선에 커다란 혼란과 차질이 생기고, 둘째, 공산세력은 한반도를 포함하는 전태평양 지역의 자유국가들에 대하여 노골적이고 급진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군의 베트남파병은 첫째, 전 아시아인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집단안전보장의 도의적 책임의 일환이고, 둘째, 자유베트남에 대한 공산침략은 곧 한국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므로 간접적 국가안보이며, 셋째, 과거 1950년 6·25전쟁시 16개국 자유우방국의 지원으로 공산침략을 격퇴시킨 우리가 또 다른 우방이 공산침략에 희생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정의감에 의한 것이다.²³⁾

둘째, 베트남전쟁의 규모현황이다. 우선 인력면에서는 62만 이상의 미군을 포함한 140여만 명의 반공진영의 병력과 250만의 북베트남 베트남군이 대치하여 싸웠다. 한편 전투행위에 참가한 부대규모는 지역별로 다음 <표 1>과 같다.

20) 이 요청의 순서가 중요한 것은 후에 소위 ‘용병’ 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된다. 또한 그 요청이 박정희 대통령 이전의 이승만 대통령 재임시에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은 소위 ‘과거사청산’의 범주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베트남전 파병논리에도 배치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21) 1962년 4월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의 지위(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겸 대통령 권한 대행)를 고려해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베트남 정부의 응웬 칸(Nguyen Khanh) 수상으로부터 한국군 파병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서한은 이후 1964년 7월 15일에 다시 접수되었다. 실제로 1963년 12월 17일에 제3공화국이 출범했음을 볼 때 이러한 추측은 가능하다.

22) 국방군사연구소, 『남베트남파병과 국가발전』, 1996, p.163; 물론 그 이전에 미국을 상대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본격화된 것은 미국이 아닌 베트남의 요청에 따른 것이 중요하다.

23) 박정희, “남베트남파병에 즈음한 담화문”,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2』, 대한공문사, 1973, pp.302~303, 신중호, “한국군의 남베트남전 참전과 한국에 미친 영향”, 육군제3사관학교 충성대연구소, 2000, p.17 재인용; 보다 상세한 막후의 이야기는 최용호(2004, pp.137~144) 참조.

< 1>

		VC			
1군단지역 남베트남 북부	304, 308, 312, 320B, 324, 325, 711, 316사단 (라오스)	지방 VC	1, 2, 3보병사단, 해병사단, 1수색기갑여단	해병1, 3사단, 101공정사단, Americal 단(전23사단), 82공정사단, 3여단	한국해병2여단 (청룡)
2군단지역 남베트남 중부	2, 3, 320사단	지방 VC	22, 23보병사단, 2수색기갑여단	4보병사단, 173공정여단	한국수도사단 (맹호), 한국9보병사단 (백마)
3군단지역 사이공 주변	7사단	7, 9VC사단 지방 VC	5, 25, 18보병사단 (전10사단), 공정사단, 3수색기갑여단	1, 25보병사단, 1기갑사단 (공중기동)	태국1의용사단, 호주1독립여단
4군단지역 메콩델타	1(캄보디아), 6사단	5VC사단, 지방 VC	7, 9, 21보병사단, 4수색기갑여단	9보병사단	
북베트남	330,350,250 사단				
북베트남	338훈련사단, 전차CMD사단, 351포병사단				
비고 (공군)			1, 2, 3, 4, 5, 6 비행사단	2, 834비행사단, 제7공군	

자료 : Harry G. Summers, Jr., 민평식 역, 『미국의 남베트남전 전략』 [On Strategy: The Vietnam War in Context], 병학사, 1983[1982], pp.307~308.

한국군의 경우, 연도별로 그 구체적인 참전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 2>

1966년	45,065	45,065	40,564	722	54	4,295	—
1967년	48,839	48,839	41,877	735	83	6,144	—
1968년	49,869	49,838	42,745	785	93	6,215	31

1969년	49,755	49,720	42,772	767	85	6,096	35
1970년	48,502	48,478	41,503	772	107	6,096	34
1971년	45,663	45,632	42,345	662	98	2,558	31
1972년	37,438	37,405	36,871	411	95	28	33

자료: 최용호,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18.

셋째,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이다. 베트남전쟁으로 통해 발생한 사망자 통계는 미군의 경우 20만명이 넘었으며, 베트남병력이 80만명, 한국을 비롯한 자유우방이 1만7천여명, 북베트남 및 베트남의 군대는 250만명에 이른다(<표 3> 참조). 여기서 한국군에 국한해서 보면 전사망자가 5천명이 넘으며, 부상자는 만천명이 넘는다(<표 4> 참조).

< 3>

(1965~1973)

		(1969.3.27)					
미 군	총계	625,566	205,013	46,226	133,371	5,456	10,276
	육군	440,691	130,359	30,644	76,811	2,904	7,173
	해군	37,011	6,433	1,477	4,178	788	880
	해병대	86,727	64,486	12,953	51,389	114	1,631
	공군	61,137	3,735	1,152	993	1,650	592
남베트남군		1,000,000	800,000	196,863	502,383	미상	미상
기타 자유세계군대* (1969)		72,000	17,213	5,225	11,988	미상	미상
북베트남군 및 베트남군(추정)		1,000,000	2,500,000	900,000	1,500,000	미상	미상

주1) ‘*’ 은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뉴질랜드, 태국을 말함.

2) 미군의 경우, 당시 전세계에 산재되어 있던 총병력은 3백만명이었으며, 육군160만명, 해군 60만명, 해병대40만명, 공군40만명이었음.

자료, Harry G. Summers, Jr., 앞의 책 p.308.

< 4>

(1965~1973)

계	325,517	5,099	4,601	272	226	11,232	8,380	2,852	4
육군	288,656	3,850	3,476	243	140	8,211	5,567	2,644	4
해군	36,246	1,240	1,125	29	86	3,021	2,813	208	
공군	615								

자료, 최용호,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p.429.

넷째, 베트남전쟁의 철수 현황이다. 많은 군사작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남베트남 내부의 정치·사회적인 혼란으로 인해 전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다음은 미국내의 당시 베트남전쟁에 대한 인식을 소개한 내용이다.

미국 내에도 베트남전 참전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강해졌고, 병역기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쟁 수행을 위한 정치적 결단에도 우유부단한 면이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미군의 사기 역시 높아질 수가 없었다. 당시 베트남의 암시장은 유명했다. 베트남인들은 일부 부패한 미군과 짜고 군용 식료품이나 탄약을 몰래 훔쳐냈다. 마약 거래가 성행했고 1972년 성병보균율이 심할 경우 10명 중 7명이나 되었다.²⁴⁾

이와 같은 군의 대민관계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작전 자체에는 물론 미국 내의 여론이나 베트남인들의 이탈감 그리고 세계 여론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1968년 3월 16일에 있었던 My Lai 학살의 경우는 이러한 분위기에 불을 지폈다. 미군 제23보병사단 제20보병대대 C중대의 특수임무 부대가 Quang Ngnai 성의 My Lai 4개의 마을에서 아녀자를 포함한 200여명의 비무장한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이다. 1년 이상 공개되지 않았던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자유세계의 충격은 엄청났

²⁴⁾ Harry G. Summers, Jr., 앞의 책 p.276.

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969년 1월 25일 대통령 보좌관이었던 Henry Kissinger와 Le Duc Tho 사이에 비밀회담이 파리에서 진행되었다. 1971년 7월 9일 미군은 베트남의 방위책임을 남베트남군에게 인계했고, 이를 시작으로 국방장관 Melvin Laird는 ‘베트남전쟁의 베트남화 계획(Vietnamization of War Program)’의 첫 단계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모든 지상전투의 책임이 남베트남군에게 인계된다는 것이다. 한국군도 그 해 12월부터 이듬해 4월 초에 걸쳐 해병 제2여단이 Da Nang에서, 제100군수사가 Cam Ranh에서 철수하였다. 이때 베트남 주둔 제7공군 사령관 John Lavelle 대장이 북베트남군에 대하여 허락없이 공중폭격을 명령했다는 이유로 물러나 중장으로 강등, 예편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Henry Kissinger와 Le Duc Tho 사이에 정전협정이 발표된 것은 1973년 1월 23일이었다. 1월 28일 08,00시(베트남시간)부터 정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다. 1월 29일 파리에서 조인된 이 협정에는 미군 포로의 석방, 잔류 미군의 철수, 휴전감시를 위한 국제군의 설치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이 파리협정에 따라 3월 29일 북베트남이 67명의 미군포로를 석방함으로써 미국 민간인 기술자 8천5백 명을 제외한 모든 미군이 베트남을 떠났다. 한국군도 지원부대를 포함한 모든 병력이 1973년 2월 3일에서 3월 23일 사이에 철수하였다. 그러나 파리협정에는 남베트남 내에 10만 이상의 북베트남 병력이 잔류한 것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²⁵⁾

베트남은 다시 전쟁상태로 돌입했고 그해 6월 13일 미국, 남·북베트남, 그리고 베트남 대표간에 휴전협정의 종식을 위한 새 휴전협정을 조인하였다. 그러나 전투는 계속되었고, 북베트남군의 공세가 치열해져 갔다. 1975년 1월에 Phuoc Binh이 함락되었고, 3월에는 Hue가, 4월엔 Da Nang이 무너졌다. 4월 21일 Thieu 대통령이 사임하고 1주일 후에는 후임자 Huong 대통령이 사임하게 된다. 드디어 1975년 4월 30일 11,30분 남베트남 4개 군단이 붕괴되고 북베트남군에게 항복함으로써 4월 30일 35년에 걸친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된다. 북베트남의 20개 사단, 베트남의 3개 사

25) 당시 미군측에서는 남베트남에 주둔했던 북베트남 병력을 14만 5천명으로 추산했다(김한식, 『동남아 정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모시는 사람들, 2004, p.438).

단으로 구성된 일방과 남베트남군 19개 사단 미군 11개 사단, 한국을 포함한 우방군 3개 사단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전투가 끝이 난 것이다.

마침내 전쟁과 국민들의 반대에 지친 존슨 정부는 평화협상을 모색하게 되었다. 1973년 1월 27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파병했던 모든 군대를 철수시키게 되었다. 이로써 미국 중심 측과 북베트남 중심 측과의 베트남전쟁은 끝나고, 남북의 베트남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미국과 평화협정이 체결되자, 남베트남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켜야 했다. 그러나 외세 적결을 외쳐오던 대부분의 남베트남 국민들은 모든 외국군이 철수했음에도 북베트남과 NLF의 도발에 대해 방관적 자세로 일관했다. 당시 남베트남에는 미군이 철수하면서 넘겨준 최신 장비와 함께 100만명이 넘는 지상군, 세계4위의 공군력 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낡은 재래식 장비와 빈약한 보급체계를 가지고 있는 북베트남과 NLF의 전력은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1975년 1월, NLF와 북베트남군의 총공세가 시작되자, 이에 맞선 남베트남군은 전투다운 전투도 해보지도 못한 채, 4월 30일 최후를 맞이했다. 그리고 허수아비와 같았던 NLF 정권은 1976년 7월 2일, 북베트남이 주도하는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에 흡수 통일되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베트남전에서의 철수과정에서 한국군의 철수는 1971년에 접어들면서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 정책’에 따라 파병병력의 철수가 검토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훈령 71-1호(주월 한국군의 철수, 1971. 8. 30)와 동 훈령 수정1호(1972. 2. 21)에 의거, 1971년 12월 4일 제2해병여단의 철수를 시작으로 1972년 4월 1일까지 9,476명의 병력을 철수시켰다. 반면 2개 보병사단을 주축으로 한 전투병력 37,000여명은 1973년초 휴전이 될 때까지 계속 잔류하였다. 주베트남 한국군의 제2단계 철수는 1973년 1월 8일, 파리에서 체결된 휴전협정의 규정사항인 “모든 외국군대는 휴전 후 60일 이내에 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한다”는 조항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잔류부대의 철수를 지시한 국방부 훈령(1973. 1. 26)에 의해 1973년 1월 30일 125명의 선발대가 항공편으로 철수하였으며, 3월 14일까지 본대가 철수하고, 3월 23일 후발대 118명이 항공편으로 철수함으로써, 남베

트남에 주둔하였던 모든 부대가 철수하였다.²⁶⁾

2) 선행연구의 개황

베트남전쟁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다음 몇 가지의 접근법을 취해 왔다. 첫째, 군사적 접근이다. 전쟁을 통해서 전략전술상의 승패요인을 분석하고, 그 교훈을 도출해내는 등의 사안을 주로 다룬다.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연구는 주로 이러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대체로 이 접근법은 공간사적(公刊史的)인 접근과 전투경험담 등이 주류를 이룬다.²⁷⁾

둘째, 경제적인 접근이다. 경제적인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전쟁을 통해서 국가경제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왔는가,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간접자본이 파괴되었는가 등의 사안은 바로 이러한 접근법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셋째, 정치·외교적 접근이다. 주로 전쟁발발의 배경 및 전쟁을 위한 정책결정과정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접근법이다.²⁹⁾

넷째, 사회문화적 접근이다. 전쟁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의 파생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는 접근이다. 예를 들어 전쟁으로 인해 ‘라이파이한’ 문제라든지, 민간인 학살 논란 등과 같은 전쟁윤리적 문제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 접근은 주로 문학이나 비판적 지식인들의 작품을 통해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작품들은 이후 영화화되거나, 다른 비판적 지식인들의 연구에 일종의 전거 역할을 함으로써 그 잘못된

26) 최용호(2001), 앞의 책 pp.20~22;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 철수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다음 참조, 이미숙, “베트남 전쟁시 한국군의 철수결정과정”, 『군사』, 제45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107~142.

27) 공간사적인 접근은 다음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국방군사연구소(1996);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 『파월한국군전사1 상』, 197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 연구 총서1』, 2002; 최용호(2001); 최용호(2004); 전투경험담 위주의 접근은 다음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훈섭,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샘터, 1993; 서경석, 『전투감각』, 샘터, 1991; 서경석, 『전장감각』, 샘터, 1999; 허만선, 『베트남 그 머나 먼 전선』, 21세기군사연구소, 2000.

28) 신중호, 앞의 책 김성철, 『베트남 대외경제개방 연구, 북한에 주는 합의』, 통일연구원, 2000; 정영규, 『동남아시아 경제의 이해』, 다해, 2003; 정영규, 『동남아시아 사회와 문화』, 울곡출판사, 2003 등

29) 이동원, 『대통령을 기리며』, 고려원, 1992; 최동주,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동기에 관한 재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0(2), 1996 등.

과장은 더욱 심화되었다. 한국의 작가들이 베트남전을 소설화하는 작업을 한 것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은 관련된 몇 명의 작가를 중심으로 한 문학작품의 개황이다.

- ① 1977년 발간된 박영한의 『머나먼 송바강』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것으로, 전쟁 중 삶이 망가지는 인간의 고통을 그린 소설이다. 오늘날의 작가상을 수상하면서 작가의 출세작이 된 이 소설은 베트남 전쟁을 본격적인 소재와 공간으로 도입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② 황석영은 1970년대 베트남전의 상처와 자기반성을 다룬 단편 『탑』을 시작으로, 장편 『무기의 그늘』(1985)을 발표했다. 특히 무기의 그늘은 암시장이라는 독특한 상황 설정을 통해 베트남전쟁의 실상을 객관적 시각으로 조명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이 책의 저자인 황석영은 1967년 다낭 합동수사대의 시장조사원으로 전쟁에 참가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 소설을 썼다.
- ③ 안정효는 장편소설 『하얀전쟁』(1983)을 발표했다. 이 책은 미국에서 번역·출간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져 주목을 받았다. 안씨의 등단작품이기도 한 이 소설은 이후 3권 분량의 장편으로 개작되었다. 정훈병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작가가 당시 전쟁경험을 충실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글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 베트남전쟁을 심각하지 않게 생각했던 주인공 한기주 병장이 동료들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전쟁의 참극을 알게 된다는 이 소설은 전쟁의 후유증에도 주목한다. 귀국한 뒤에도 베트남 전쟁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삶은 전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간의 삶을 괴롭히는지를 고발한다.
- ④ 이원규의 1987년 장편 『훈장과 굴레』는 명분없는 전쟁에 참가한 박성우 소위의 후회와 자각을 그렸다. 동료들이 전쟁의 돈과 명예에 집착하다가 죽어가고, 사랑했던 베트남 여성이 한국 군인과 비밀리에 가깝게 지냈다는 이유로 몰살을 당하는 등 고통을 겪은 그는 자신이 전쟁의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다.
- ⑤ 이상문이 1989년 펴낸 『황색인』은 베트남 전쟁 중 군수품 유출과정에 몸담은 주인공이 역사의 모순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면모 등을 차례차례 알아나가는 소설이다. 특히 베트남 민족의 독립운동, 한국과 베트남의 동질성 등을 조명해 새로운 시각으로 베트남전쟁을 짚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⑥ 이대환은 2001년 장편 『슬로우 불릿』으로 베트남전쟁 후 고엽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베트남전쟁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우리의 상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리는 작품이다.³⁰⁾

30) 이 내용은 필자의 공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해당작품들에 대한 언론의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1) 전쟁의 범주를 고려한 입론으로서의 전쟁공동체(war community)

17세기 이후 세계사가 경험한 16개 혁명의 결과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및 국가 권력의 영역에서 분석한 Zimmermann에 의하면,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국가 권력의 강화 내지 공고화였다.³¹⁾ 이 혁명을 일으킨 정부는 정당성과 정통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치적 자유화나 경제발전 혹은 사회복지의 신장과 같은 유화정책(butter policy)을 구사하기도 하지만 지속성과 효과면에서 일관성이 약했으며, 그 대신 단기적으로 권력의 중앙집중화나 억압적 국가기구의 성장을 통한 강경책(gun policy)이 보다 보편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³²⁾

그런데 이와 같은 국가기구에 의한 강압적인 행위의 편린을 베트남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문화·윤리적 분석이 요구되지만, 그 가치판단이 가장 긴요하게 요구되는 주체는 바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국가의 후손들이다. 이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적어도 향후 이 전쟁에 관련된 나라들간의 호혜적 관계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기억은 고정된 역사적 순간에 대한 재발견이 아니라, 사건 이후 일상생활을 통해 선택되고, 재해석되고, 왜곡된 결과이다.³³⁾ 역사는 연대순으로 정리되면서 그 원인, 과정, 결과의 체계적 분석이 강조되지만, 기억은 특정 경험, 이미지 등도 부각될 수 있고 사회집단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알박스는 기억의 사회성에 대해 연구한 바 있는데, 그에 의하면 기억이 사회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³⁴⁾ 즉 국가 등 사회집단은 과거에 대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해가는

³¹⁾ Ekkart Zimmermann, "On the Outcomes of Revolutions, Some Preliminary Considerations," *Sociological Theory*, vol.8(1), Spring 1990, pp.33~47, 전상인, 『고개숙인 수정주의』, 전통과현대, 2001, p.309 재인용.

³²⁾ 전상인, 위의 책, p.309.

³³⁾ Popular Memory Group, "Popular Memory, Theory, Politics, Method," in Richard Johnson, Gregor McLennan, Bill Schwarz & David Sutton, eds., *Making Histories, Studies in History-writing and Politics*, Hutchinson, University of Birmingham, 1982, pp.205~252; Peter Burke, "History as Social Memory," in Thomas Butler, ed., *Memory, History, Culture and the Mind*, New York, Basil Blackwell, 1989, pp.77~96.

³⁴⁾ Maurice Halbwachs, *The Collective Memory*,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80.

과정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세계관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다.³⁵⁾

일찍이 앤더슨은 탈식민주의 시대를 벗어나면서 이민, 난민, 국가없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공동체는 이들이 원래 고국에서 구축하고 있었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라고 명명했다.³⁶⁾ 한국과 베트남이 ‘베트남전쟁’이라는 전쟁에 연루되게 된 국절을 매우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일종의 상상의 공동체 속에서 연루되었다는 진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양국간의 관계의 해법을 찾기 위한 실마리로서 전쟁공동체의 개념은 그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베트남전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미 종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베트남 사람들과 한국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베트남전쟁을 말하고 있다. ‘사회적 기억’이라는 메타포는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기억 행위의 가능성을 사회적으로 중재된 선택과 조합이라는 메커니즘에 고착시키는 것이다.³⁷⁾ 집단기억에 대한 조작은 반드시 권위주의 시대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감성적 사실주의 속에 포장된 현대판 포퓰리즘도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³⁸⁾

이 전쟁공동체의 개념은 우선 전쟁 당사자인 한국과 베트남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

35) James Fentress & Chris Wichham, *Social Memor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2.

36) Benjamin Anderson,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나남, 2002[1983]; 이후 Cohen은 “상징적으로 구성된 공동체”(symbolic construction of community)라는 용어를 사용했다(Anthony P. Cohen, *The Symbolic Construction of Community*, London & N.Y., Routledge, 1985); 한편 정보 윤리를 위해 사이버 공간을 의미하는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라는 개념도 등장하고 있는데(Rheingold, 1992), 특히 Hagel III와 Armstrong(1997)은 이 가상공동체를 참가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욕구에 근거하여, 거래공동체(communitiy of transaction), 이익공동체(communitiy of interest), 재미공동체(communitiy of fantasy), 그리고 관계공동체(communitiy of relationship)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관계공동체는 힘들었던 삶의 경험을 토대로 깊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본 논문에서의 베트남전쟁공동체의 개념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J. Hagel III & A. Armstrong, *Net Gai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7; H. Rheingold, "A Slice of Life in My Virtual Community," at <http://www.communities.com/paper/settlement.html>., 배상현 외, “이용자의 참여 동기가 가상공동체 의식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경영연구』, 38(2) 통권 제73호, 2001 가을, pp.209~210 재인용.

37) 최문규 외, 『기억과 망각, 문학과 문화학의 교차점』, 책세상, 2003, p.143.

38) 임지현은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굴종하게 만들어 일상생활의 미세한 국면에까지 지배권을 행사하는 보이지 않는 규율, 교묘하게 정신과 일상을 조작하는 고도화되고 숨겨진 권력장치로서의 파시즘을 ‘일상적 파시즘’이라고 불렀다(임지현, 『일상적 파시즘의 코드 읽기,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2000, p.30).

체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국가적 필요성과 개인적 필요성에 의해 전쟁에 참가하게 된 군인, 민간인 등이 모두 포괄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전쟁에 동참했었던 다른 나라들, 그리고 그 군인 및 민간인도 포함될 수 있다. 매우 광의적으로는 인간이 아닌 공동체적 상징이나 문화적 요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전쟁공동체 개념은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의 과거 일정 시기에 경험했었던 전쟁의 기억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상의 토대로서 기능할 것이다.

2) 전쟁에 대한 평가를 위한 정의전쟁론³⁹⁾

가)

평화주의가 전쟁을 부도덕하다고 보는 한 극단이라면, 현실주의는 전쟁을 도덕과 무관하다고 보는 한 극단이다. 이를 수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의전쟁론이 등장했다. 정의전쟁론에서는 일부의 전쟁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만, 일부의 전쟁은 부도덕하다고 말한다. 정의전쟁론이 중간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점은 양측의 장점을 수용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양측의 약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의전쟁론의 전통은 아주 오래전까지 소급된다. 서구에 있어서 가장 친숙한 전통은 기독교인들과 특히 4세기와 5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us)에 이르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⁴⁰⁾ 이후에 기독교화된 로마제국을 유지해야 된다는 현실에 직면

39) 정의전쟁론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다. 여기서는 Fotion(2004, pp.68~70)과 Valls(2004, pp.143~160)를 토대로 언급하고 뒤에서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자 한다. (Nicholas Fotion, “전쟁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평화주의, 현실주의, 정의전쟁론”, Andrew Valls 편, 박균열 외역, 『국제정치에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철학과현실사, 2004, pp.55~86; Andrew Valls, “테러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Andrew Valls 편, 위의 책, pp.137~163); 한편 공산주의에서도 정의전쟁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쟁에 있어서, 특히나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대결의 전쟁에 대해 정의전쟁론의 시각으로 조명한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마르크스(K. Marx), 레닌(Lenin) 등 초기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계급주의적 전쟁 개념 자체의 허구성은 그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국가파멸에 가까운 정도의 결말에 이르렀음은 그러한 국가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전쟁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함을 직접 대변해 주고 있다. 다만 계급적 시각이 아닌 초기 마르크스가 천착했었던 인간 자체의 소외(alienation) 문제, 그리고 이와 맥을 같이 하는 M.Merleau-Ponty와 E. Levinas 등의 소위 ‘몸’ 또는 ‘신체’를 강조하는 현대 철학자들의 노력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0)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De civitate Dei contra paganos libri viginti duo) 제19권이 참고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라틴어와 대본으로 3권이 번역 출간되었다(아우구스티누스, 성염 역,

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전쟁과 타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다. 그는 초기의 힘없는 기독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에 대한 평화주의적인 입장을 쉽게 채택할 수 없었다. 당시 로마제국이 각종 이교도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전쟁에 참전하도록 재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정의전쟁론의 원칙 중 일부를 명료하게 표현해 냈다. 그는 그 중에서도 특히 정당한 명분의 원칙(principle of just cause), 적절한 권한의 원칙(principle of proper authorization)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13세기에는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가 정의전쟁론을 더욱 발전시켰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이 전통을 더욱 세속적으로 구체화시켰다.

정의전쟁의 전통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전통인 기독교 전쟁론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 암브로스(St. Ambrose)는 이 주제에 대한 글을 남기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로마인들과 심지어 그리스인들에게까지 정의전쟁론의 전통은 소급된다. 로마인들 중에는 키케로(Cicero)와 그리스인들 중에는 플라톤(Plato)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s) 등은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전쟁에 임할 때, 당면하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동양에서도 정의전쟁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맹자(孟子)와 묵자(墨子)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부정부패에 대해 때로는 무기를 들고 이러한 것들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인도의 『마누법전』(The Laws of Manu)과 『바가바드 기타』(Bhagavad Gita)에서는 전쟁과 전쟁윤리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

이상의 정의전쟁의 전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체적인 구조는 전쟁 자체와 전쟁을 실제 행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전쟁의 정의(Jus ad Bellum)’라고 하고, 후자는 ‘전쟁수행상의 정의(Jus in Bello)’라고 한다. 정의전쟁주의자는 국가가 전쟁을 개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언제 정당화되는지”를 “전쟁의 정의” 문제로 보고, 그러한 전쟁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싸워져야 하는지”를 “전쟁수행상의 정의” 문제로 주장하고 있다.

『신국론, 1~10; 11~18; 19~22』, 분도출판사, 2004).

) (Jus ad Bellum)

이 원칙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 일곱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당한 명분(just cause)’의 원칙이다. 이 기준은 ‘공정한 명분(righteous cause)’, ‘정당화(justification)’ 또는 ‘매우 충분한 이유(very good reasons)’라고도 일컬어진다. 언제 전쟁이 정당하고, 언제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서의 정당한 명분은 장단점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전쟁이 도덕적인 선택사항으로서 심각하게 고려되기 전에 어떠한 조건들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말해 주면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들이 적용되면 안 되는지를 말해 주기도 한다.⁴¹⁾

대체로 이 전쟁을 위한 정당한 명분의 기준은 방어적이다. 즉 한 국가가 적의 공격에 대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때, 그것은 정당한 명분을 가진다고 간주된다. 그 공격에 대응한 공격은 자국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위해(危害)하려고 하는 것에 반한 대응이거나 즉각적인 대응위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⁴²⁾ 따라서 정의전쟁론의 정당한 명분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특정 국가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공격에 대항하여 자기방어의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둘째, ‘좋은 의도(good intentions)’의 원칙이다. 과거에 이 기준은 한 국가가 가슴에 증오심을 품고서 전쟁을 개시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오늘날 좋은 의도는 대체로 측정하기가 좀더 쉽고 더 적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전쟁이 원만히 진행된 후 당사국의 의도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말할 수 있다.⁴³⁾

⁴¹⁾ Vitoria는 “무력을 물리치기 위한 무력은 (항상) 정당하다” (vim vi repellere licit)고 말하면서, 이 경우에는 제반 원칙이 없이 전쟁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주장한다(Francisco de Vitoria, Relection on the Law of War [Relectio de Iure Belli], In *Vitoria-Political Writings*, eds., Anthony Pagden and Jeremy Lawr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1539], p.297). 왜냐하면 방어적 공격은 그 자체가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유사한 입장의 연구는 다음 참조, John Finnis, “The Ethics of War and Peace in the Catholic Natural Law Tradition”, In *the Ethics of War and Peace, Religious and Secular Perspective*, ed., Terry Nardi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pp.19, 21; Francisco Suarez, “A Work on the Three Theological Virtues Faith, Hope and Charity” [De Triplici Virtute Theologicae Fede, Spe et Charitate], In *Selections from Three Works of Francisco Suarez*, vol.2, ed., John B. Scott, Oxford, Clarendon Press, 1944[1621], pp.815~816.

⁴²⁾ Michael Walzer, *Just and Unjust Wars, A Moral Argument with Historical illustrations*, 2nd edition, N.Y., Basic Books, 1992[1979].

⁴³⁾ 이러한 차원에서, 추후에 그 의도가 거짓으로 판명났을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도

셋째, ‘비례성(proportionality)’이다. 이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예상되는 비용이 그 이득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쉬운 해석은 예상되는 비용이 이득보다 두드러지게 압도적으로 클 때 전쟁을 개시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의 이득인가에 따라 해석의 주관적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성공가능성(likelihood of success)’의 원칙이다. 이 기준과 이전의 비례성의 기준은 둘 다 결과를 다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이 기준은 전쟁 개시를 고려하고 있는 국가가 전쟁을 개시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최후의 수단(last resort)’의 원칙이다. 혹자는 이 기준이 온갖 수단을 강구한 이후에만 전쟁으로 나아가기를 재촉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모든 선택사항을 들여다보는 과정은 말 그대로 끝이 없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을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마도 과장된 면이 있다. 최후의 수단은 최후의 합리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섯째, ‘적법한 권위(legitimate authority)’의 원칙이다. 이 기준은 임박한 전쟁을 어떻게 다룰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기준과 조금 다르다. 대신에 특정한 사람들만이 전쟁을 개시할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요건은 종종 국가들만이 전쟁을 정당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것은 사실 단체가 전쟁을 벌이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를 배제하고 있다. 국가는 무력의 적법한 사용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부여받은 실체에 의해서만 전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재고되어야 할 소지가 있다.⁴⁴⁾ 예컨대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치기구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가 적법한 방어전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편향적 사고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구라고 하는 대원칙에는 동의할 수는 있지만, 그

고려해 연구해볼만하다.

44) 이와 같은 필자의 견해를 지지해 주는 연구가 있다, Anthony J. Coates, "The New World Order and the Ethics of War," In *The Ethical Dimensions of Global Change*, ed., Barry Holden, London, Macmillan, 1997, p.128.

것이 반인륜적인 도발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러한 것을 표방하지 않는 한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칙이 수용되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원칙이 국내적으로 적용될 경우, 특정 국가내의 제반 법·제도적인 절차에 근거하여 전쟁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일곱째, ‘일관성(coherence)’의 원칙이다.⁴⁵⁾ 전쟁의 발발 순간은 한 순간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쟁의 최종 책임자 또는 야전군 사령관이 바뀔 수 있고, 전쟁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 또한 중간에 잠시 동안의 정전상태가 유지되다가 다시 전쟁이 계속될 경우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관성이란 바로 일단 발발한 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각 ‘단위전쟁’⁴⁶⁾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그럴 경우 서로 성격이 다른 전쟁을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같은 부류에 넣을 수는 없을 것이다.

) (Jus in Bello)

앞의 전쟁자체의 정당성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내용을 다루는 기준이라면, 전쟁수행상의 정당성은 실제 전투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다루는 기준이다. 실제로 오늘날의 전쟁은 무기체계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피해가 매우 폭이 넓으며, 전장상황이 거의 동시에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앞선 전쟁자체의 정당성보다는 전쟁수행상의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한다.

일찍이 Grotius는 선행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다음 세 가지의 기준에 의해 Jus in Bello의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즉 첫째, 누가 정당하게 공격받을 수 있는가, 둘째, 그들에 대한 공격을 위해 어떠한 수단이 사용될 것인가, 셋째, 전쟁포로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기준이다.⁴⁷⁾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보완되었는데, 교회의 전통에 호소함으로써 정의전쟁론의 어떤 부분의 한 이론을 정당화하기도 하

45) 여기서 제기된 ‘일관성’이라는 개념은 기존 학계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 필자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인데, 향후 충분한 검증이 요구된다.

46) 여기서 말하는 단위전쟁이란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될 수 있는 전쟁을 말한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하나의 성격으로 묶이는 부분적인 전쟁을 말한다.

47) Paul Christopher, *The Ethics of War and Peace, An Introduction to Legal and Moral Issues*, third edition, N.J., Pearson Education, Inc., 2004[1994], p.91.

고,⁴⁸⁾ 권리에 기반을 두고 접근하기도 하고,⁴⁹⁾ 어떠한 중간단계의 ‘직관적인 원칙(intuitive principles)’에 호소하기도 하고,⁵⁰⁾ 계약이론의 한 변형에 호소하기도 하였으며,⁵¹⁾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⁵²⁾

여기서는 O'Brien과 Johnson의 연구를 토대로 전쟁수행상의 정당성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³⁾ 첫째,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전쟁 수행 시 사용되는 군사수단이 전쟁의 목적과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군사목표와 군사수단과의 관계로 어떠한 군사수단도 정의로운 군사목표와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군사수단은 군사목표에 비례해야 하고,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인 정당한 이유와 비례해야 한다.⁵⁴⁾

둘째, ‘분별성(discrimination)’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비전투원과 비군사목표에 대한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공격을 금지하는 원칙으로서 승전의 필요성에 관계없이 군사수단의 선택을 제한한다고 할 수 있다. 비전투원을 공격대상으로 삼지 않는 분별의 원칙의 기본입장은 17세기 이후 실증적 국제법의 발달과 함께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현대적 전면전의 출현과 함께 분별의 원칙은 변화되어 비전투원에 대한 면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의미하게 되었다.

셋째, ‘이중효과(double effect)’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앞의 수단과 목적에 있어

48) U.S. Catholic Bishops, "The Just War and Non-Violent Positions," In *War, Morality and the Military Profession*, 2nd edition, ed., Malham Wakin, Boulder, Westview Press, 1986.

49) Michael Walzer, 앞의 책.

50) James Childress, "Just War Theories, The Bases, Interrelations, Priorities and Functions of their Criteria", In *War Morality and the Military Profession*, 2nd edition, ed., Malham Wakin, Boulder, Westview Press, 1986.

51)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 In *On Human Rights, The Oxford Amnesty Lectures 1993*, eds., Stephen Shute and Susan Hurley, N.Y., Basic Books, 1993.

52) Richard Brandt, "Utilitarianism and the Rules of War," In *War, Morality and the Military Profession*, 1st edition, ed., Malham Wakin, Boulder, Westview Press, 1979; Nick Fotion, "A Utilitarian Defense of Just War Theory," *Synthesis Philosophica* 23, 1997, pp.209~225; R. M. Hare, "Can I be Blamed for Obeying Orders?" In *War, Morality and the Military Profession*, 1st edition, ed., Malham Wakin, Boulder, Westview Press, 1979.

53) William V. O'Brien, *The Conduct of Just and Limited War*, N.Y., Praeger, 1981; James Turner Johnson, *Just War Tradition and the Restraint of War, A Moral and Historical Inqui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54) Johnson, 앞의 책 pp.61~62; Suarez, 앞의 책 pp.805~806; Vitoria, 앞의 책 p.304.

서의 비례성의 원칙과 공격목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전투원과 비전투원 사이에 분별성의 원칙을 동시에 고려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⁵⁵⁾

넷째, ‘금지된 수단(prohibited means)’ 사용금지의 원칙이다. 먼저 본질적 위반으로서 금지된 수단이란 고유의 부정의로서 결코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종족학살(genocide)을 통해서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범죄를 경계하는 것이다. 한편 실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금지된 약품이나 기법을 동원하여 상대측에 공격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있다.

역사적으로 전쟁수행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많았다. 1907년의 『헤이그협약』(Hague Convention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과 이후 보완규칙, 1925년의 『제네바의정서』(Geneva Protocol)와 이후 보완규칙, 1968년의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그리고 1972년의 『생물학무기협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등 각종 전쟁 관련 규칙 등이 그 예이다.

) (corelated justice)⁵⁶⁾

전쟁이 장기화·광폭화(廣幅化)되면서, 전쟁 자체가 갖는 특성은 시·공간적으로 길고, 넓은 장 속에서 평가되기에 이른다. 우선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단기전일 경우 대부분 전쟁 자체의 정당성과 전투행위에서의 정당성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거의 정비례하게 된다. 한편 그 범위면에서 볼 때, 산업문명의 발달과 국가 사이 또는 국가간의 동맹에 의한 전쟁이 발생하면서부터 이 양자간의 정당성은 보다 사려깊은 척도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그 예로 연계성의 원칙과 상황성의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연계성(connection)’의 원칙이다. 이는 ‘전쟁 자체의 정당성’과 ‘전쟁 수행상의 정당성’ 간의 상관성을 말하는 것이다. 즉 전쟁 자체가 갖는 정당성과 전투 행위

55) 여기에 관해서는 Harbour의 베트남전과 연계한 연구를 참고할 것, Frances V. Harbour, “제4장. 정의전쟁의 전통과 베트남전에서의 ‘비치명적 화학무기’의 사용”, Andrew Valls 편, 앞의 책 pp.113~134.

56) 여기서 제기된 ‘상관적 정당성’이라는 개념은 기존 학계에서 거론된 적이 없다. 필자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인데, 향후 충분한 검증이 요구된다.

를 함에 있어서의 정당성이 얼마나 잘 연계되어 있느냐의 문제이다.

1:	(○) *	(○)
2:	(○) *	(×)
3:	(×) *	(○)
4:	(×) *	(×)

가장 이상적인 전쟁 형태는 유형1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는 유형4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전쟁 자체와 전쟁 수행상의 정당성을 묻는 ‘연계성’ 측면에서 볼 때, 유형2와 유형3은 같은 평가를 얻는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둘 다 상호 연계성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상황성(situation)’의 원칙이다. 이는 앞선 연계성의 원칙을 보완해 주는 개념이다. 즉 유형2와 유형3에 대한 변별력을 높여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유형2는 초기에 전쟁 자체의 정당성은 확보되었지만, 전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서 심정적으로 많은 동정을 얻지 못한다.⁵⁷⁾ 반면 유형3은 처음에는 전쟁 자체가 갖는 정당성을 얻지 못했지만, 실제 전투를 행함에 있어서는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서 앞선 유형2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⁵⁸⁾

유형2와 유형3에 대한 변별력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에도 그 적정선을 명확히 가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즉 상대주의의 비판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러한 유형적 척도는 앞선 ‘전쟁 자체의 정당성’과 ‘전쟁 수행중의 정당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변수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때 효용성이 더 잘 드러난다.

57) 유형2의 경우, 주로 그 전쟁을 개시한 최고책임자는 추앙받고, 전투를 행한 군인들은 비난받게 된다.

58) 유형3의 경우, 최고정책결정자에 대한 최초의 신뢰도는 낮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신뢰수준이 높아진다. 하지만 실제 전투를 행하는 군인들에 대한 평가는 별개일 수가 있다. 즉 비윤리적 행동을 자행함으로써 획득한 승리일 경우, 전쟁법 미준수의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3.

가.

한국은 1956년 남베트남 사이공 정부와 공사관계를 수립했고, 1958년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가진 바 있으나 1975년 4월 말 베트남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한국 대사관의 철수와 함께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 1983년 이후 소규모 간접교역이 이루어졌고, 1988년에 이르러 직교역이 이루어지면서 1990년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이 1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민간차원에서 양국간의 경제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대베트남 경제제재조치 완화 및 경협확대 추진방침을 발표했고, 1992년 4월 양국이 상호연락대표부 설치를 합의하였다. 1992년 12월 22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되었다.⁵⁹⁾

한국은 최근 베트남의 주요 투자국가 중의 하나이며(<표 5> 참조), 한국과 베트남은 베트남전쟁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한국의 우수한 기술자본이 투입되어, 특히 베트남의 남부 해상유전에서는 하루 생산량이 2007년에는 14만 배럴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양국간의 공동 이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시이기도 하다.⁶⁰⁾

< 5> 가 (: 1998~2004.5.20, :)

가		
싱가포르	298	3234.57
대만	1136	2642.54
일본	440	4061.32
한국	729	2770.97
홍콩	304	1809.32

59) 대한민국주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사관/대한민국주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명예 총영사관, 『베트남: 베트남~한국 수교 10주년 기념(1992~2002)』, 2002, p.114.

60)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2004. 10. 26.

가		
프랑스	139	1049.28
B.V. Island	195	1076.88
네델란드	52	1954.55
태국	119	648.01
미국	190	709.08

자료: Bo ke hoack va dau tu[베트남 투자기획부] at <http://www.Mpi.Gov.vn>
(검색, 2004. 6. 25)

이와 같이 한국과 베트남의 양국관계는 가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또한 상당히 높은 공동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기대치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역사적 사실은 과거의 특정 시점과 공간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베트남전쟁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이 양국 최고 정상간의 선언적 술사에 의해 한 순간 묻혀질 수는 있겠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제반 재화 및 기회가 충돌될 경우 양국간의 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양국은 어떠한 전략으로 이 아픈 과거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이 베트남과 이념적으로 동일한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북한과 현실적인 대치관계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한국과 베트남간의 과거사문제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제로 다가오는 듯하다.

베트남은 자국의 여러 가지 자존심까지도 버려가면서 국익제고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은 “과거는 접어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khep lai qua khu, huong toi tuong lai*)”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으며, 제8차 공산당 전당 대회

에서는 “지역 및 세계의 경제에 빠르게 화합해 나가야 한다.(*Day nhanh qua trình hoi nhap kinh te khu vuc va the gioi*)”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⁶¹⁾ 과거에 얽매 이기보다는 미래의 발전적인 관계정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⁶²⁾

한편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시에 가장 많은 양국관계의 진전이 있었는데, 1998년 3월 10일 베트남 국회의장단 일행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과 우리나라와 베트남 사이에 불행한 관계가 있었으나 베트남은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화해·협력의 길로 나가겠다는 용단을 내려 미래지향적 자세를 취했다. 베트남이 보여준 중요한 변화와 결단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⁶³⁾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12월 15일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양국이 과거 한때 불행했던 일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자”고 했다. 그리고 2001년 8월 23일 방한한 베트남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인들에게 고통을 준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과거사에 대한 사과의 뜻을 거듭 표시했다.⁶⁴⁾

이와 같이 양국 정부차원에서 베트남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세부적인 언급을 회피하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⁶⁵⁾ 그런데 민간차원에서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61) *Van kien Dai Hoi VIII Dang cong san Viet Nam*[베트남공산당 제8기 대회문서], NXB su that Ha Noi[하노이 사실출판사], 1996.

62) *Chinh sach ngoai giao cua Viet Nam*[베트남 외교정책], Bo Ngoai giao[외교부], 1992~1996.

63) 『한겨레신문』, 1998. 3. 11, 4면.

64) 『문화일보』, 2001. 8. 24, 5면: 여기서 ‘불행한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정의전쟁에 있어서 정당하지 못한 전쟁으로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한국이 베트남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전쟁 중에 일어난 일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이 취한 전략과 전술(예, 게릴라전, 전국민 동원 등)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만약 과거의 중국 침략 등이 현대적 문명의 이기(미디어의 발달 등)에 노출된다면 더 많은 잔인상이 빚어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하나의 측면에서 볼 수는 없는 일이다.

65) 베트남 외무장관인 응웬지니엔이 2000년 7월과 8월에 이 문제를 처음으로 보도한 『한겨레21』과 베트남 통신원인 구수정씨 앞으로 보낸 친서를 통해 베트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베트남 외무장관의 서한 중 일부이다: “... .. 베트남 인민에 대항하는 침략전쟁에 참여했던 일부 국가들 속에 한국이 존재했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물론, 현재 베트남이 관용과 인도주의, 우호의 전통에 따라 미래를 위하여 잠시 과거를 접어두자고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각 관련국가들은 그 전쟁의 후유증의 극복을 위하여 베트남과 함께 진정하고도 효과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도의적으로 합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열등감을 지우는 일이며, 베트남과 각 관련국가들

인식에서 정부의 입장표명과는 달리 향후 문제시될 수도 있는 양금이 아직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북베트남군 제5사단 20연대장이었던 한 예비역 준장은 “한국군 양민 학살 지역의 일부 주민들도 ‘과거를 닫자’ 라는 정부시책을 그대로 따라서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그 가슴의 한과 고통이 어떻게 접어지겠는가” 라고 지적하고 있다.⁶⁶⁾ 시인 이니는 “과거를 닫자는 말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고 단언한다.⁶⁷⁾ 푸옌성의 당서기장인 응웬탄꾸앙은 ‘과거를 닫고 미래를 보자’ 는 말은 진실을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과거를 접어두자는 말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트남의 잘못은 없으며 한국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⁶⁸⁾

이에 반해 한국의 민간인의 의견은 매우 다양하다. 대체로 반전평화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 첫째, 한국내 반독재운동과 연계하는 입장, 둘째, 참전용사이면서 과거를 반성하는 입장, 셋째, 참전용사이면서 과거의 공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입장으로 요약된다.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마을에는 위령비 혹은 증오비들이 서 있다. 주로 사람들이 집단으로 죽은 현장에 서 있는 이 비들은 지방정부가 세운 것이 대부분이다. 1980년 이전에 세워진 비들은 ‘증오비’라 이름 붙여졌고, 사건이 일어난 연도와 날짜, 죽은 사람의 이름과 나이가 적혀 있다. 그러나 1980년 이후에 세워진 비들에는 ‘위령비’라고 적혀 있다. 과거를 접고 미래를 보자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⁶⁹⁾

이와 같이 베트남측과 한국측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재해석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문제는 베트남과 한국 양측의 자체적인 대립과 갈등이다. 피해를 입은 베트남측은 문제가 간단하게 보여지지만, 한국은 상당히 많은 사회

간에 좀더 아름다운 새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데 기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http://www.hani.co.kr>, 2005. 3. 6. 검색)” (강조: 필자)

66) 김현아,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책갈피, 2002, p.149.

67) 위의 책, p.150.

68) 위의 책, p.151.

69) 위의 책, p.79.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현재 한국내에서는 베트남전쟁을 소위 ‘명분없는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참전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적을 모두 과소평가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 이에 반해 실제 참전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사회적인 반응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불만을 표시하며 여기에 대한 적절한 국가적 보상과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갈등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 한국은 베트남 사람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양국간의 군사적 양금을 해소하고, 우리는 동남아 시장개척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베트남은 선진경제 경험을 배우고, 또한 양국은 한반도의 통일에도 어느 정도 공통된 교감을 갖게 될 것으로 가정해 본다.

4.

베트남전쟁에 대한 기억은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베트남 내부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베트남전쟁에 대한 기억은 각 국가의 내부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한국과 베트남간의 주요한 이슈로 부각된 주요한 기억 유형을 중심으로 그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다만 연구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언급할 것이다.

가.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용병문제이다. 용병에 관한 법리적 근거는 1977년 6월 8일에 채택된 제네바협약추가 제1의정서 제47조의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제네바협약추가 제1의정서 제47조 용병>

1. 가 .
2. .
- 가.
- . 가
- . 가 ,
- . 가
- . 가
- . 가가 가

70)

이 용병론이 한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파병 당시 야당이었던 신한당(新韓黨)의 윤보선 총재가 1966년 5월 26일 남원에서 한국군의 남베트남파병을 ‘청부전쟁’이라고 언급한데서 비롯된다.⁷¹⁾ 이후 베트남전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말 중의 하나가 되었다.⁷²⁾

이에 대해 국방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이 용병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해외근무수당과 용병과의 관계 측면에서 용병이 아님을 주장한다. 관련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근무수당은 전투지역에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특별수당으로 1964년 9월 11일, 파병된 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 교관단의 경우는 미국의 지원과 관계없이 정부가 특별예산을 편성해 지급했다. 그러나 건설지원단을 파병하면서부터 많은 인원이 장기간 파병될 경우, 한국정부의 지불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병 1.25달러~중장 10

70) 김찬규, “전쟁법상의 새로운 개념”, 『경희법학』, 19(1), 경희대학교, 1984, p.13.

71) 허의도, “남베트남 전쟁 실종자를 찾아서”, 『월간 중앙』, 6월호, 1994, pp.207~209, 신중호, 앞의 책 p.109 재인용.

72) 베트남전쟁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말은 ‘명분없는 전쟁’과 ‘용병’으로 요약된다. 이중 용병은 ‘반미’(反美)를 주장하기 위한 구호로 이용되고, 국내의 다른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나 등장하는 용어가 되었다. 이러한 시각의 가장 전형적인 자료는 다음이 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2000. p.8.

달러까지 계급별로 차등 편성된 금액을 미국정부가 한국 정부를 대신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해외근무수당이 가난했던 나라의 장병들을 파병지원서에 서명하게 했던 하나의 유인책이었던 것은 틀림없지만 해외근무수당만으로 파병되었던 것은 아니었다.⁷³⁾

둘째, 한국에 대한 미국이 대규모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한국군이 용병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응이다. 관련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파병에 따라 미국의 직·간접지원과 전쟁특수 등을 통해 50억 달러 정도의 외화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국내경기 활성화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경험 획득 등 파병의 간접적인 효과를 감안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국방을 주한미군에 의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2개 사단을 베트남으로 전환할 경우 국가의 존망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따라서 어차피 전투부대를 파병해야 한다면 최대한 경제적 실리를 획득한다는 것이 정부의 대미협상 방침이었으며, 또한 당연한 결론이었던 것이다.⁷⁴⁾

셋째, 작전지휘권으로 인해 한국군이 용병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입장이다. 채명신 당시 한국군사령관은 주월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을 구사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미군과 협조를 했으며, 한국군의 단독 작전을 수행했다.⁷⁵⁾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볼 때,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에 대해 일부 학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용병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법리적으로(de jure) 볼 때는 명백히 용병이라고는 할 수 없다.

.

고엽제(枯葉劑)는 식물의 잎을 고사시키는 기능을 가진 약품인데, 인체에도 매우 유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⁶⁾ 베트남전에서의 고엽제 살포는 미군의 작전 목적을

73) 최용호(2004), 앞의 책 pp.437~438.

74) 위의 책, pp.439~440.

75) 위의 책, pp.219~220.

76) 고엽제 환자 문제에 천착한 선행연구로는 다음이 많은 참고가 됨: 문송희, “남베트남참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한 합리적 처리 방안”,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논문, 1999.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졌다.⁷⁷⁾ 맹독성의 고엽제는 이후 많은 피해자를 낳았으며, 국제적으로도 매우 많은 피해보상 요구가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78년 7월에 한 참전자가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를 계기로 이후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83년 12월 16일에는 약 2만명의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참전군인과 가족들이 원고가 되어 7개의 고엽제 제조회사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서, 이 기금은 고엽제 참전용사, 고엽제 단체, 호주 참전자 기금조성, 뉴질랜드 참전자 기금조성, 변호사 기금 등에 사용되었다. 국가별 참전군인에 대한 분배는 참전군인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되었다.⁷⁸⁾

이와 같이 베트남전에서 고엽제 사용문제와 그 심각성은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호주 등 서구에서는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가 1991년 6월 호주에 정착한 한 교민을 통하여 ‘남베트남전 참전자’ 중에는 고엽제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국내에 최초로 알려지게 되었다.⁷⁹⁾ 한국의 경우, 고엽제 피해자가 10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표 6> 참조).

< 6>

(: 2004.6.30)

		가 /					
대상	보훈대상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비대상	
112,997	76,724	108,730	21,189	55,489	46	32,006	4,267

자료 : 『국가보훈처 자료』, 최용호(2004:429) 재인용.

77) 고엽제 살포를 통한 미군의 작전 목적은 첫째, 시야확보, 둘째, 적의 농작물 파괴, 셋째, 아군의 화력지원 용이, 넷째, 적의 군사기지와 보급로 차단, 다섯째, 미군의 군사위력파시와 적의 심리적 제압 등이다(신중호, 앞의 책 p.77).

78) 전우신문사, 『남베트남전과 고엽제 上』, 1997, pp.400~402.

79) 위의 책, pp.393~394.

이 문제는 이후 1992년부터 참전용사와 국내 인권단체, 그리고 종교단체 등에 의해 사회적인 문제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참전군인으로서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그들의 질병이 고엽제 노출에 의한 후유증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1992년 9월 26일 독립기념관에서 파월의 날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전 파월용사 5천여명 가운데 4백여명이 경부고속도로를 막고 정부의 고엽제 피해자 보상대책을 요구하여 농성을 벌임으로써 여론이 집중된 바 있다. 또한 1994년 6월 6일 낮 12시 참전용사들의 모임인 ‘대한해외참전전우회’ 부산시회 소속 회원 1천여명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에서 순국전우추모행사를 갖고 고엽제 및 전쟁후유증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며 1시간여 동안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유사한 참전용사들의 고엽제 관련 보도는 계속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표 7> 참조).

< 7>

1991년	7	1998년	73
1992년	233	1999년	412
1993년	111	2000년	364
1994년	126	2001년	151
1995년	110	2002년	175
1996년	84	2003년	183
1997년	141	2004년	310

주 : KINDS 정보는 국내 언론매체(181개 매체, 2005년 3월 3일 기준)의 기사내용을 망라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시된 건수도 망라된 수치임.

자료 : 한국언론재단 KINDS 정보(<http://www.kinds.or.kr>)

한국 내부에서의 고엽제 문제는 처음에는 환자 및 그 가족에 의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보상문제로 시작되었다가, 참전자 모두의 보상 및 기념을 위한 상징물로 변화해 갔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국내의 인권운동의 조류와 함께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켜 법제화되게 된다.

정부는 관련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1992년 10월 29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1993년 2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 동년 3월 10일 법률로 공포, 동년 5월 1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5년 1월과 12월에 다시 개정되었으며, 1997년 12월 24일 전문개정, 1999년 1월과 2000년 2월에 일부 개정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03년 5월 29일부터는 2007년 연말까지 법적 시효가 제한되게 되었다.⁸⁰⁾

고엽제 피해 보상면에서 볼 때, 한국은 1992년부터 ‘대한해외참전자전우회’와 ‘과월유공자전우회’ 그리고 ‘베트남고엽제피해자전우회’ 등이 중심이 되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왔으나, 막대한 소송비용과 소송에 필요한 역학조사 자료 등의 부족으로 인해 1994년에 이르러 ‘대한해외참전자전우회’의 이름으로 미국의 다우 케미컬사 등 7개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⁸¹⁾ 그 결과 미국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의 고엽제 피해

8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 5. 29 법률 6919호] <한시법:2003. 5. 29~2007. 12. 3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 2. 3>

1. "고엽제"라 함은 남베트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남베트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이하 "남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 함은 남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라 함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남베트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중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81) 『국민일보』, 1999. 5. 20.

자들은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의 법원에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1996년 4월, 1997년 5월에 각기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당시 법원은 베트남전에서 한국 정부는 고엽제 살포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으며, 국가를 상대로 한 금전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모든 사건을 기각했다. 또한 미국을 대상으로 1993년 5월과 8월에 ‘베트남고엽제피해자전우회’가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1994년 3월과 1997년 7월에는 ‘대한해외참전전우회’가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그런데 다우 케미칼사 등 미국의 3개 고엽제 제조회사는 1993년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베트남고엽제피해자전우회’ 측에 3천만 달러를 제시했으나 전우회측이 거절한 바 있다.⁸²⁾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베트남전쟁에서의 고엽제는 전쟁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심지어는 고엽제를 살포한 미군측에도 피해를 가져다줬다. 고엽제로 인한 애환은 많은 문학작품과 영화 등을 통해 베트남전쟁 자체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에서 ‘라이파이한(Lai Daihan)’이라는 단어는 경멸적인 “혼혈잡종”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들은 베트남전쟁에 ‘참가’ 했거나 전쟁이후 교류기간 동안 ‘한국인’들과 ‘베트남인’ 사이에 태어난 ‘후손’을 가리킨다.⁸³⁾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라이파이한은 최소 5천명에서 많게는 3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30~40세 사이의

82) 『국민일보』, 1994. 1. 6.

83)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네 가지인데, 그 범주는 세 가지이다. 범주별로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 첫째, 라이파이한을 생성하게 한 주체가 민간인이나 군인이냐의 문제이다. 둘째, 라이파이한을 생성하게 한 한국측의 주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가 문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가치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 ‘참전’이라는 용어보다는 ‘참가’가 더 어울리고, ‘한국군인’보다는 ‘한국인’이 더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김현아(2004)의 연구는 전쟁 자체를 남자들의 전유물인양 전제하고,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쟁 등을 같은 맥락에서 살피면서 여성들의 피해상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후손’이다. 초기에는 ‘2세’만을 지칭했다. 하지만 1992년 한국과 베트남 수교이후 급격한 교류로 인해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베트남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전쟁으로 인한 긴 단절 후에 도래한 급격한 교류의 기회라는 점에서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서는 ‘후손’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김현아, 『전쟁과 여성』, 여름언덕, 2004.

연령층에 속해 있는 그들은 지난 30년간 베트남 사회에서 ‘적군의 자식’으로 따돌림을 받으며 살아왔다. 가난하게 살면서 교육의 기회가 충분하지 못해 대개 힘든 노동이 요구되거나 멸시받는 직업에 종사해왔다. 외모도 베트남인들과 구별되어 더욱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⁸⁴⁾ 이러던 것이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이후 양국간 교류가 증대되면서 ‘신(新) 라이파이한’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상 베트남에 장기적으로 가 있는 한국인들과 현지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2세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정상적인 가정을 갖지 못함으로 인한 아픔과 인종적 차이에 의한 아픔, 그리고 경제적 빈곤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베트남전쟁과 결부한 라이파이한 문제를 좀더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베트남전쟁 이전 시기까지 소급해서 올라가야 한다. 한국교포가 베트남에 첫발을 디디게 된 것은 1939년경, 일본군학병에 입대를 강요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중국을 거쳐 베트남에 간 사람도 있고, 상인으로서 중국을 거쳐 베트남에 가서 정착한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한국 사람이 상당한 규모로 정착하게 된 것은 1941년부터 인도차이나 반도에 일본의 통치가 시작되면서부터이고, 이들은 일본군에 징병되거나 징용되어 군인이나 군속으로 근무하다가 해방과 더불어 이곳에 영구히 정착한 사람들로 초기에는 대략 50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가하게 되자 한국과 베트남양국간의 관계증진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한다. 1973년 휴전당시, 장기체제 한국인교포는 42세대 170명에 달했으며, 그중 교포 1세는 30명, 2세와 1세의 부인들이 140여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대부분 1975년 베트남 공산화이후 베트남정부의 출국허가를 받아 상당수가 한국으로 귀국하였다.⁸⁵⁾

일상의 문화 현상 속에서 라이파이한의 문제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영화 『라이파이한』이 있다. 이 영화는 1994년에 개봉되었는데, 남자주인공은 한국인이고 여자주인공은 베트남인이었다([그림 1]; [그림 2] 참조).

남자주인공(상우)이 베트남 격전지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여자주인공(수잔)이 안내를 맡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둘은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약속

84) 조흥국, “‘적군의 자식’ 멸시 속 성장, 베트남전 당시 현지 여인 출산 한국계 혼혈아”, 『부산일보』, 2004. 9. 18.

85) 『동아일보』, 1975. 5. 14, 김기태, 『전환기의 베트남』, 조명문화사, 2002, pp.189~190 재인용.

하게 된다. 그 후 남자주인공이 여자주인공의 어머니를 만난 자리에서 애인의 아버지 사진을 보게 되는데, 그 사진 속의 인물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

$$[1] \quad , \quad 1 \quad [2] \quad , \quad 2$$


영화에 이어, 문학작품 속에서도 라이파이한 문제는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관련 문학작품으로는 시가 2편이 있다. 우선 시인 최승호에 의한 ‘라이파이한의 노래’라는 시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엄마는 예 있는데
아빠는 어디 있나
얼굴도 못 본 나,
새똥처럼 던져놓고
아빠는 어디 갔나 어디로 갔나
<메콩강> 즐기 따라 핏줄 이리 흐르건만

모르겠네 모르겠네 뿌리를 모르겠네
 내 나이 스물 넘고 서른 넘어도
 모르겠네 모르겠네 아빠 나라 <파이한>
 궁금치도 앓다던가 뿌려놓은 씨앗들
 야자수 뒤흔든 <스콜> 바람에
 행여나 오시려나 아빠의 소식
 그러나 바람만.....
 무심한 바람만.....
 무정한 아빠처럼
 그저 그냥
 그렇게 지나네요.⁸⁶⁾

시작품 중 두 번째는 학위논문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야자나무 숲 그림자에

검은 빌로오드처럼
 출렁이던 기인 머리칼
 싹둑 싹둑 잘라내던
 후예의 회푸른 달빛
 마지막 밤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분홍빛 아오자이는
 밤물결 바람소리에 젖어
 머나먼 포성을 반주 삼아 이별의 노래를 불렀지요
 - 메콩강 델타에서 맺은 사랑아
 떠난 님은 산이 되어 돌아온다네
 메콩강 우기에 돌아온다네

포연에 젖어 잎새에
 쏟아지는 푸른 별빛
 그대 품속에 안긴 나른한 잠 속에서

86) 최승호, “라이파이한의 노래”, 김우영, 『라이파이한』, 푸른사상, 2002, pp.132~133 재인용.

결박을 풀고 해방되는 꿈을 꾸었던가요
 고향이 동두천 어디라며
 꼭 돌아오겠다며
 신 새벽 하이반고개를 넘어
 다낭으로 달려가던 바람같은 타이한
 검광처럼 스쳐간 이십년
 세월의 소매끝을 끌어 안으며
 그대가 뿌린 씨앗은
 어느덧 키 큰 야자나무가 되었지요

2. 동두천 미군 막사 지붕 위로

철새가 날아 오르고
 새의 날개를 겨누는 엽전 한뼘의 총구
 희한하게 눈이 내린다
 수상스럽게 얼굴도 모르는 한 사내를
 꼭 만나려고 바다 건너 온 것은 아니다
 한 줌의 흙
 한 줄기 바람에도
 흑 내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빈들에 내리는 저 눈발에도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
 뿌려져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물결처럼 스쳐간
 외로운 소문을 붙들고
 낫선⁸⁷⁾ 한 사내의 초상을 얼마나 그려 왔던가
 희끗 희끗 흰머리도 보이는 슬픔을
 가슴 속 골편을 꺼내 적은 어머니의 편지를 이제 태우려 한다
 철조망 너머 씹어 빨는
 노랑머리 키 큰 사내의 껌딱지를 보며
 품어온 칼바람을 잠재우려다
 빈 들에 내리는 눈발 속에 흘날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제 낫설지 않은 사내여
 돌아 가련다

87) 원래는 '낫선'으로 표기되었으나 오기로 보고 바로 잡음.

저무는 들판에 이십년 아픈
세월의 잔해를 뿌리나니
안녕 파이한⁸⁸⁾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라이파이한 문제는 매우 복잡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라이파이한 문제가 소위 말하는 ‘명분없는 전쟁’의 하나의 증거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베트남 내부에서보다는 국내의 일부 급진적 인권운동가들에 의해 제기되었고, 한국내의 다른 인권문제와 결부해서 연계되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 라이파이한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베트남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 속에서 조망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국가의 부(富)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는 언제나 일어날 수도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최근의 소위 말하는 ‘신라이파이한’의 문제는 전쟁과 관련된 양국민의 혼혈아 문제보다는 일종의 국가간의 사회문제의 현안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89)

베트남전쟁 기간 중 한국군에 의해 빚어진 베트남 민간인 사망자 수는 아직 권위있게 조사·발표된 바는 없다.⁹⁰⁾ 대개의 경우 몇 천 단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베트남 군인 사살자 수가 4만1400여명이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매우 많은 숫자이기 는 하지만 전투상황의 복잡성과 자연환경 등을 고려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88) 임익문, “임익문의 시와 시론: 함성과 존재의 이중주”,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11~ 12.

89) ‘민간인 피해’의 문제는 국내에서 ‘주민 또는 양민(대량)학살’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용어라기보다는 매우 주관적인 편견을 전제하고 사용된 것이다. 군이 전쟁법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군인이 작전수행중이거나 평상시 재미삼아 민간인을 살해하도록 명령을 부여받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그러하지도 않는다. 즉 설령 부당하게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라도,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술해보면, “전투수행중 부당한 절차에 의해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자행했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90)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사망자수는 5천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이 있다(구수정, “베트남의 원혼을 기억하라”, 『한겨레21』, 제273호, 1999. 9. 2). 현재까지 한국군의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정상적인 작전수행 중 민간인 피해가 일부 있을 수 있었겠지만(얼마인지는 공식적으로 밝힌 자료가 없음), 순수한 민간인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발포를 했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지 않다.

제기될 수 있다. 한겨레신문의 통신원이었던 구수정의 취재를 토대로 한 베트남전쟁 기간 중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 현황은 다음 <표 8>과 같다.

< 8>

		가 /
푸이엔성 푸이호아	1965 1966.1.1 1966.6.18(음력) 1966.12.26	· 맹호부대 · 백마부대에 의해 45명 · 35명 · 42명
꽝아이성 빈선현	1966.10.3(음, 10.22)~10.6	· 청룡부대에 의해 430명
꽝남성	1968	*
빈딘성 파이선현	1966. 2. 15(음,1.23) ~2. 26(음)	· 맹호부대에 의해 실종자 포함 1,200여명 · 신원확인자 728명, 어린이 166명, 여성 231명, 노인 88명
빈딘성 끼년시	1966.12.22	· 어린이, 임산부 포함 50여명
중남부 판랑시	1969.10.14	· 승려 4명

주 : ‘*’의 꽝남성의 중부 각성의 전쟁범죄 조사회의(1966.3.19~20)는 한국군이 1966.1.23~2.26까지 베트남인 1,200명 사살, 1,535채의 가옥파괴, 양곡 850톤 소각, 물소 649마리를 도살했다고 함.
자료 : 김기태(2002, pp.439~440).

이와 같은 민간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베트남 내부의 전장환경이다. 베트남의 지형은 경사가 심한 산악이 국토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북부의 홍강 삼각주와 남부의 메콩강 삼각주, 그리고 동쪽의 해안선을 따라 20% 정도의 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베트남의 기후는 국토가 길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열대몬순 기후로부터 아열대 기후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낸다. 열대몬순 기후에 속하는 남부지역의 계절은 우기(5~10월)와 건기(11월~익년4월)로 구분되며, 기온은 평균 21~35 °C의 분포를 보인다. 습도는 월평균 83%, 연평균 강우량은 2,151mm이다.⁹¹⁾ 이와 같은 조건은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과 아군을 구분함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환경요인이 되었다.

둘째, 북베트남측의 ‘인민전쟁’ 개념이다. 호찌민은 오랜 기간 중국의 침략에 대항하면서 베트남 민족이 터득한 전쟁수행방법을 ‘인민전쟁(people's war)’이라고 이름

91) 대한민국주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사관/대한민국주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명예 총영사관, 앞의 책 p.9; 최용호(2004), 앞의 책 p.5

붙이고, 이를 사상적·이론적으로 체계화해서 프랑스와 미국에 대한 베트남 민족의 항쟁의식을 불러일으켜서 대항하기 위한 전쟁이론으로 삼았다. 호찌민의 인민전쟁 사상을 군사적으로 발전시킨 보응웬지압(Vo Ngyuen Giap) 장군은 호찌민의 인민전쟁 개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베트남이 디엔비엔푸 전투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인민전쟁 전략 때문이었다. 흔히 인민전쟁 전략과 게릴라 전술을 혼동하기도 하는데, 인민전쟁 전략의 개념과 게릴라 전술의 개념은 서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에서 게릴라 전술은 인민전쟁 전략의 한 가지 수행방식에 불과하다. 게릴라 전술이 단순히 전투방식만을 일컫는다면 인민전쟁 전략의 개념은 한마디로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인민전쟁 전략의 개념은 보다 복잡적이고 종합적인 것으로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영역 모두를 포함한다. 여기서 ‘인민에 의한’이란 뜻은 단순히 군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한다는 뜻이며, ‘인민을 위한’이란 독립과 통일 또는 인민의 행복 등 인민이 목표로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뜻이다. 인민전쟁 전략의 개념은 물질 자원보다는 인적 자원을 더 중요시한다. 그래서 호찌민 주석에 의해 지도된 인민전쟁 전략은 모든 인구를 동원하는 광범위한 것이다.⁹²⁾

이와 같이 호찌민은 자국의 제한된 군사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인을 군사작전에 동원해야 했다. 이는 전시에 적국의 정규군이 자국민의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민간인에 대한 오인사살의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북베트남의 군사전략가들의 전시 민간인 활용계획에 대응하여, 남베트남과 우방들의 군사전략가들에 의해 동원된 소위 ‘전략촌 계획(Strategic Hamlet Program)’의 집행에 따른 민간인 피해이다. 이 계획은 한 마디로 농촌지역에서 물(대중)과 물고기(VC)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농촌 마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남베트남의 Diem 정부는 이미 1957년 전략촌 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실시해 본 바 있다. 농촌개발센터라고 명명된 집단 이주촌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취약지역에 산재한 마을

92) CNN 인터뷰, 1998. 11. 23., 김중수, “호찌민과 보응웬지압의 전략전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 연구 총서』 2, 2003, p.241. 재인용.

들을 폐쇄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문화적이고 근대화된 농촌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논란은 위치와 규모가 표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필요한 외양간은 없고 잔디로 단장된 공원은 있는 실태라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다고 한다.⁹³⁾ 이 전략촌 계획은 1961년부터 입안하기 시작하여 1962년 2월초 공식 발표되었다. 약 1,000여명의 주민을 단위로 하는 11,000개의 전략촌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마을 주변에 철조망이나 목책, 선인장 같은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조성하고 주민들은 그 마을의 자체 경계를 담당하고 VC가 공격시에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무기도 지급되었다. 남베트남군도 이 계획에 맞춰 전략촌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에 배치되었고 헬기도 가용한 대로 대기시켰다. 1962년 9월까지 3,200여개, 1963년 8월까지 8,100여개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⁹⁴⁾

이러한 전략촌 계획은 최초의 의도와는 달리, 시간이 경과하면서 단순히 공격 대상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의무의 범주(university of obligation)’를 구체화하게 된다. 의무의 범주란 도덕적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경계를 말하는데, 우리편에게만 이 의무를 지키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편이 아닌 다른편에 대해서는 특정한 도덕적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⁹⁵⁾ 이러한 현상은 전쟁이 지속되면서 점차 관성적인 힘에 의해 심지어 민간인에 대한 학살마저도 전과로서 기록하는 사례를 보이기도 한다.⁹⁶⁾ 더 나아가서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잔학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제하고 양심의 가책은커녕 국가를 위해 공헌했다고 믿게 된다는 것이다.⁹⁷⁾ 이와 같은 경계짓기를 합리화시키고 당연시하는 사례는 베트남전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지휘자는 특정 마을을 ‘적성지역’, ‘의심지역’, ‘후원지역’ 등으로 나누어 우

93) 이에 대해 김기태 교수는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인들이 베트남인들의 “마을공동체” 개념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베트남사회의 요람인 마을은 커다란 대나무로 둘러 쌓인 울타리 속에 하나의 독립된 단일조직체를 이루고 있다. 마을은 그들자신의 인구와 풍습과 심지어는 공회당에 그들 자신의 수호신을 모시고 있으면서 베트남이라고 하는 우주 속의 소우주를 만들었다.” 김기태, 앞의 책 pp.196~197.

94) 류제현, 『남베트남전쟁』, 한원, 1992, pp.126~128.

95) William Gamson, "Hiroshima, the Holocaust, and the Politics of Exclu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0, 1995, p.3.

96) Herbert Kelman and Lee Hamilton, *Crimes of Obedienc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9, p.17.

97) 위의 책, p.18.

리와 적의 경계를 만들었던 것이다.⁹⁸⁾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당시 베트남전쟁의 특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베트남전쟁은 전형적인 비정규전 형태의 전쟁으로,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 이론을 기초로 북베트남이 발전시킨 3단계 전법을 베트남이 현지에 맞게 적용한 게릴라전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북베트남이 마오쩌둥 유격전 이론을 기초로 발전시킨 3단계 전법은 제1단계, 산악요새로 도피, 전력강화, 제2단계, 적의 노출된 시설 기습, 제3단계, 전면공세로 전환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즉 베트남은 열세한 병력과 장비로 월등히 우세한 연합군을 상대하기 위해 전형적인 유격전술로 자신들이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전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습격과 기습, 테러 및 파괴전술을 시도했다. 그들의 무장세력은 조직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개인으로부터, 사단급 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편제를 가지고 있었다. 즉 마을이나 읍·면 단위로 분대 및 소대규모의 민병대를 편성하고, 성 및 군 단위로 중대 및 대대 규모의 지방군을 편성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단급 규모의 정규군을 편성했다. 결국 “베트남은 있는 곳도 없고, 없는 곳도 없다”고 할 수 있었다.⁹⁹⁾

한국군은 이러한 상황판단 아래, 6·25전쟁시 유격대인 ‘백골병단’을 지휘해 북한군 후방지역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었던 한국군사령관 채명신 장군은, 1965년 10월 전투부대의 파병 당시 현지에서 미군이 사용했었던 ‘수색 및 격멸(search & destroy)’의 개념을 한국군 독자적인 작전개념으로 바꾸어나갔다. 즉 미군의 작전개념을 발전시킨, ‘분리(separation)–차단(interception)–격멸(destroy)’의 3단계 개념이었다.¹⁰⁰⁾ 그같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개념은 주민과 유격대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水魚之)’와 같은 관계로 규정했었던 마오쩌둥의 유격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던 베트남 전술을 역이용하는 것이었다.¹⁰¹⁾

98) Herbert Hirsh, *Genocide and the Politics of Memory*,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pp.106~107.

99) 최용호(2004), 앞의 책 pp.216~218.

100) 한국군의 3단계 작전개념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 수어지 관계인 베트남과 주민을 분리시킨다. 제2단계, 주민과 베트남의 상호관계를 차단해 베트남을 고립시킨다. 제3단계, 고립화 또는 무력화된 베트남을 압도적으로 우세한 병력과 화력을 집중하고, 신속한 기동으로 포위 및 포착 섬멸한다. (최용호, 2004, p.220)

101) 위의 책, pp.219~220.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베트남전쟁 기간 동안 민간인의 피해는 전장환경과 당시의 전쟁당사자들의 군사전략적인 특징 등을 통해 볼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정황은 민간인의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이 문제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유연하면서도, 포용적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일을 지금에 와서 거론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과거를 접어두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전쟁과 관련하여 책임을 따진다 하더라도 전쟁의 주체였던 미국 정부와 따질 것이다. 따라서 그와 관련해 한국정부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오히려 베트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한국군이 주둔했던 중부지역에 학교와 병원을 건설해 주는 등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¹⁰²⁾

한편 베트남전쟁 참전용사단체는 “양민학살은 있을 수 없으며, 베트남전쟁의 특성상 상당수의 ‘민간인 피해’가 있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베트남전쟁 기간 중 발생한 민간인 피해는 이 전쟁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복잡한 현상 중의 하나이다.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망, 실종 사건은 해당지역내 작전에 참여했었던 군대의 소행으로 간주될 개연성까지도 안고 있다. 더욱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게 하는 일은 이 문제가 베트남에서보다는 한국내, 그것도 한국의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념적 성향을 가진 학자, 단체, 그리고 언론매체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

베트남전쟁에 있어서 난민의 문제는 새로운 쟁점이다.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한 인도차이나 전반의 난민문제는 현재까지 베트남전쟁을 연구함에 있어서 소홀히 다루어

102) 베트남 인문사회과학원장(Nguyen Duy Quy) 한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방문시 인터뷰(2002. 5. 7), 최용호(2004), 앞의 책 pp.431~433 재인용.

졌다. 1979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렸던 인도차이나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에서 난민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유엔난민판무관실(UNHCR)의 보고에 따르면, 1975년 인도차이나 반도가 공산화된 이후, 약 100만 명 이상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벗어난 제3국으로 떠났다고 한다.¹⁰³⁾ 즉 235,000명이 중국으로 탈출했으며, 1975년에는 13만 명이 미국에 정착했다. 55만 명이 동남아제국, 특히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그리고 필리핀 등지에서 제3국에 정착했다.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인도차이나 반도로부터 난민의 물결은 그치지 않고 1980년 중반까지 5만 명의 베트남인, 5만 명의 라오스인, 그리고 3만 명 내지 4만 명 정도의 캄보디아인들이 그들의 고국을 떠났다. 1980년 중반까지 35만 명의 ‘보트피플’을 포함하여 약 75만 명이 베트남으로부터, 약 50만 명이 캄보디아로부터, 그리고 약 30만 명이 라오스로부터 떠나 난민생활로 방황했다.¹⁰⁴⁾

인도차이나 전체의 난민 중에서도 베트남 난민들의 경우, 한국에 입국한 난민은 총 1,341명이었으며, 이중 순수 베트남인과 한국인과의 혼혈인은 총 988명이었으며(<표 9> 참조), 이중 941명이 제3국으로 이주했으며(<표 10> 참조), 이후 베트남계의 난민은 50명 미만이 한국 내에 살고 있다. 이후 여러 가지 곡절에 의해 총 72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3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재입국하거나 추가로 입국한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표 11> 참조).

< 9>

<단위: 명>

309	659	329	33	1	1,341

자료: 『동아일보』, 1975. 5. 13, 김기태, 앞의 책 p.191 재인용.

¹⁰³⁾ 1975년 4월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남베트남이 점령된 이후, 남·북 베트남으로부터 피난민들이 그들의 고국을 떠나는 수가 점점 증가하였는데, 그 배후에는 하노이 당국이 난민들의 국외탈출을 사주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베트남측은 이들 난민들이 비생산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소비풍조에 물든 자들로서 사회주의 체제내의 새로운 경제에 적응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했다(*Asian Survey*, XIX(1), Jan. 1979, 김기태, 앞의 책 p.185 재인용).

¹⁰⁴⁾ *Asian Thought & Society*, V(14), Sept. 1980, 김기태, 앞의 책 p.183 재인용.

< 10>

3

<단위: 명>

668	164	51	43	1
				: 941
4	1	5	4	

주: 『이산가족백서』, 대한적십자사, 1976, p.237, 김기태, 앞의 책 p.191 재인용.

< 11>

(: , : 1979. 10)

		가					
72	45,743	1,956	64,754	3,447	1,205	174,671	6,567
599 (355)	15,365 (12,304)	28,903 (5,346)	3,013 (2,837)	98,313 (65,317)	32,800	250,000	20,212* (16,809)

주: ‘*’ 는 1978~1979. 9. 30 동안의 정착자에 한함. ()안의 숫자는 보트피플임.

자료: *Asia Year Book*, 1980, p.110, 김기태, 앞의 책 p.183 재인용.

이와 같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난민 문제는 1970년대말부터 1980년대까지도 계속 해서 이어졌다. 특히 이 문제가 한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례가 있다. 다음은 관련 기사내용이다.

/85 ‘ 96 ’

1985년 11월 침몰 직전의 목선에서 사투를 벌이던 보트 피플 96명을 구한 참치잡이 어선 선장 전제용(64·양식업·경남 통영시 당동)씨가 유엔 난센상 후보에 올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캡틴 전’ 난센상 추천위원회는 최근 스위스 난센상 심사위원회로부터 전씨가 수상후보 가운데 1명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난센상 심사위는 2005년 3월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인데 전씨는 소말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출신 후보 10여명과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년 전 베트남 난민을 구한 이름없는 ‘영웅’ 전씨는 지난 8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 기반을 둔 베트남계 커뮤니티

니티의 초청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난센상은 국제적인 난민구호·원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유엔의 최고상이다.¹⁰⁵⁾

이 기사의 내용은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 우선 1980년까지도 인도차이나 반도의 난민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참전한 나라의 적대국의 민간인이었다는 점, 도움을 준 사람이 국제적인 인권상 후보로 선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현재의 베트남정권과 같은 계열이 아니라는 점이다.¹⁰⁶⁾

이와 같이 베트남난민을 포함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난민 문제는 베트남전쟁을 재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며, 향후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내에서의 베트남전쟁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전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참전유공자들과 전사적 맥락에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측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 스스로 자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전쟁을 기억하기 위한 법률적인 근거는 다음 법령에서 찾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03. 5. 29 법률 6922호]

제4조 (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 1. 26>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¹⁰⁵⁾ 『세계일보』, 2004. 12. 27.

¹⁰⁶⁾ 이 중에서 마지막의 내용은 향후 베트남정부가 세계 보편적 입장에서 한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포함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난민의 문제는 현재의 북한의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반인륜적 행위(만약 그것이 고의로 자행된 바가 있다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며, 향후 관계개선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일부개정 2004. 1. 17 대통령령 제18226호]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2.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참전유공자증서의 교부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5. 참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6.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7.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이와 같이 베트남전쟁 참전자에 대한 예우를 위한 법률적 근거(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예외조항 없이 다른 전쟁의 참전자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법률적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전용사들은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베트남전참전 국군 파병의 날 제정”에 관한 여론이다.¹⁰⁷⁾ 6·25한국전쟁의 경우,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는 기념물들은 출신별, 병과별, 지역별 등 다양하게 추모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전 참전자를 위한 별도의 국가주도적 기념물이나 의례의 날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강원도에 건설중인 ‘파월용사 만남의 장’에 세워지는 참전기념물에 국가보훈처에서 5억원을 지원했다고 하지만,¹⁰⁸⁾ 이것도 지원사업이지 주관사업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가 적에게 붙잡혔던 한국군 포로가 3명뿐이라는 국방

107) 국가보훈처 홈페이지(국민참여 코너)에 베트남참전전우회의 회원이 2002년 7월 19일부터 동년 8월 18일까지 1개월간 전국의 네티즌에게 호소하는 글이 실렸다.

108) 심주형,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기억의 정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75.

부 공식발표와는 달리 20명 이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불만요인으로 작용했다.¹⁰⁹⁾

이와 같이 베트남전쟁에 대한 국가적 추념사업의 미온적 실태는 다음 몇 가지 사례에서 더 찾을 수 있다. 첫째, 국립묘지 안장실태이다.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경우, 베트남전 참전이 지속되면서 전사자가 늘어나자 1971년도부터 1973년도까지 묘역증설을 하게 되는데,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묘역과 관리체계는 그나마 전사자들을 사건사적으로 한데 모일 수 있게 하는 것보다는 뿔뿔이 흩어지게 했다([그림 3] 참조).

[3] ()



주: 초기 파월자는 26번 묘역에 많고, 1970년 이후는 2번, 3번 묘역에 많이 묻혀있음. 파월 전사자는 총 4,646위로 주로 제 2, 3, 8, 19, 21, 26, 48, 51묘역에 안장되어 있으며, 묘역별로는

¹⁰⁹⁾ 이러한 주장은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선행연구자료(경북대 허만호 교수, “북한 인권문제의 다자간 협의”, 구체적인 출처가 불분명하여 표기하지 못함)를 토대로 밝힌 내용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직시되고 있는데, 조준분, 김홍삼, 김수근, 김성모, 이창훈, 이길영, 이윤동, 민경윤, 박양정, 신창화 등은 한국정부가 1994년 4월 22일과 2000년 7월 27일에 발표한 베트남전쟁 한국군 실종자 명단에서 누락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http://bbs.yonhapnews.co.kr>, 2005.2.13.); 국방부 발표에서 3명이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최용호 선임연구관(2001, p.18)에 의하면, 총 실종자는 육군 6명, 해군 3명으로 9명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추가해서 밝혀진 것은 추후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사병이 총4,341기로, 2번묘역: 971기 (7104~7303), 3번묘역: 565기(7103~7301), 8번묘역: 67기 (6903~7005), 19번묘역: 284기 (6904~6910), 21번묘역: 407기 (6803~6903), 26번묘역: 1,482기 (6611~6804), 48번묘역: 231기 (6604~6611), 51번묘역: 334기(6511~6605) 등이며, 장교는 총305기로, 장교3 묘역: 57기, 장교51묘역: 248기로서, 전체과월장병 안장은 총 4,646기임.

자료: 국립현충원, <http://www.vietvet.co.kr> 재인용(2005. 3. 6 검색)

한편 대전국립현충원의 사진전시실의 규모를 살펴보면(<표 12> 참조), 베트남전관련 사항은 전무하다. 제5부에 이어서 베트남전 및 PKO활동을 통해 전사했거나 순직한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12>

제1부 민족의성역 국립묘지소개	35M	1개	8개	33매/3점
제2부 민족사관(우리민족의기원)	27M	-	11개	52매/19점
제3부 국권피탈과 항일투쟁	47M	1개	35개	189매/12점
제4부 국권회복 (조국광복과 대한민국수립)	13.5M	1개	6개	23매
제5부 6.25전쟁과 동족상잔의 비극	32M	1개	17개	87매
제6부 휴전이후 북한의 도발 및 북한의 실상	12M	1개	15개	70매/167점
제7부 통일로 가는 길	5M	-	3개	11매/1점
제8부 우리의 나아갈 길 (자랑스런 한국인)	28.5M	1개	1개	40매/1점

자료: 국립현충원(대전)

홈페이지(http://www.mnd.go.kr:8088/html/memorial_html/memorial.html, 2005. 2. 15 검색)

둘째, 국립현충원에서 관리하는 ‘현충시설물’의 경우이다. 이 현충시설물은 ‘독립운동시설’과 ‘국가수호시설’로 나뉘는데, 국가수호시설은 총 852개소로, 지역별로는 강원 125, 경기 118, 경남 93, 경북 86, 광주 6, 대구 12, 대전 6, 부산 18, 서울 26, 울산 6, 인천 16, 전남 79, 전북 84, 제주 63, 충남 48, 충북 66로 편제되어 있

다. 지역적으로 상당히 편차가 심한데, 특히 강원도에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수호시설물이 건립되어 있다.¹¹⁰⁾ 이중에서 베트남전과 관련하여 인터넷에 탑재하여 공식적으로 관리대상에 포함된 것은 5개소에 지나지 않는다(<표 13> 참조).

그런데 다소 이전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에서 주관이 된 베트남전 참전 기념물은 총 42건으로(<표 14> 참조), 이중 9건이 명칭에서 ‘베트남전’ 관련 기념물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기념물들은 1996년 이후 현재까지 건립된 것이다. 이중 5건이 참전 영웅관련 기념물인데, 이 기념물들은 한때 교과서에까지 실렸던 장재구, 이인호, 지덕철에 관한 것이다. 나머지 28건은 충훈탑, 위령탑 등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기념물의 추모 또는 기념대상이 한국전쟁 등 다른 전쟁들까지 포괄하고 있다. 베트남전이 종료되기 이전에 건설된 9건 중에서 참전영웅관련 기념물 4건을 제외한 5건은 본래 한국전쟁관련 기념물이었다가 그 의미가 후에 덧붙여진 것이다.¹¹¹⁾

< 13> 가 () 가

	· :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통일공원내) · : 강릉시 · : 베트남참전기념사업회 강릉시지회 · : 2001. 11. 6 · : 베트남참전기념탑 · : 베트남에 파병되어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던 영동지역출신 베트남참전용사들의 위국헌신 정신을 기리기 위함
	· :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58 공설운동장 입구 · : 대한해외참전전우회진안군지부(문중운) · : 베트남참전유공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문중운) · : 2003. 3. 21 · : 베트남참전유공 기념비 · :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1963~1973년 까지 자유의 십자군으로 베트남에 참전하여 우리민족의 용맹성을 세계만방에 떨친 불굴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함.

110) 국가보훈처(민족정기선양센터) 홈페이지(<http://narasarang.mpva.go.kr>, 2005.2.14 검색)

111) 심주형, 앞의 책 p.74.

	- 충남 논산시 공설운동장 내 - 논산시 2002 - 참전 공적비(논산) - 국가와 민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참전용사와 무공수훈자의 나라사랑에 대한 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정신으로 승화시키고자 건립
	-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지남공원 내 - 무주군수 - 베트남 참전 전우회 무주지회 2002. 11. 11 - 해외(남베트남)참전기념비 -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1963~1973년 까지 자유의 십자군 베트남에 참전하여 우리민족의 용맹성과 전쟁의 신화를 세계만방에 떨친 불굴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함
	- 강원 동해시 천곡동 45-1 - 동해시 - 동해시 무공수훈자회 2000. 12. 21 - 호국유공자명비(동해) 6.25전쟁 50주년을 기하여 6.25전쟁, 베트남전쟁 및 침투작전 참전용사인 전사자, 전상자 및 무공수훈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을 높이 기리고 이들의 명예를 선양함으로서 참전용사 및 유가족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나아가 전국민의 호국정신을 함양하며 또한 전쟁 미경험 세대들에게 6.25전쟁의 역사적의미와 안보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동해 시민의 뜻을 모아 건립

자료: 국가보훈처(민족정기선양센터)

홈페이지(<http://www.narasarang.mpva.go.kr>, 2005.2.14 검색)

< 14>

(: 2002)

1	충훈비(삼기면)	1961.11.11	삼기면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원동리	현충일 추모행사
2	충령탑/충령사	1963.6.6	금산군	충남 금산군 금산읍 하옥리 남산중턱	현충일
3	충훈탑(양양군)	1966.6.6	양양군	강원 양양군 양양읍 군행리	현충일 추념식

4	육군소령 강재구상	1966.5.6	창영초등학교 총동창회	인천 동구 창영동 창영초등학교내	
5	고 이인호 소령 동상	1967	해군 교육사령부	경남 진해시 경화동	현충일 추념식
6	고 이인호 소령 동상	1967	해군사관학교	경남 진해시 앵곡동	인호제(8.11)
7	고 지덕칠 중사 동상	1967	해군 작전사령부	경남 진해시 현동	지덕일체(2.1)
8	충령사(예산군)	1967.6.6	예산군	충남 예산군 대술면 서산리	현충일
9	충훈탑(양구군)	1967.5.23	양구군	강원 양구군 양구읍 중리	현충일 추념식
10	충훈탑(횡성군)	1968.6.6	횡성군	강원 횡성군 읍하리	현충일 추념식
11	충훈탑	1973	무안군수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현충일 추모행사
12	보국충령비/충령사	1974	부여군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현충일 추념식
13	충용탑	1976	육군종합학교 전우회	서울 송파구 신천(향군회관 광장)	충용탑 건립 기념식(10.22)
14	위령탑(통영시)	1981.6.6	내향마을	경남 통영시 한산면 비진리	위령제(현충일)
15	충훈비(강정동)	1982	강정동민일동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16	충렬탑(은천동)	1982.12.31	아산군청	충남 아산시 은천	현충일
17	강재구 소령 추모비	1986.11.30	육사16기 화랑동기생	강원 통천군 북방면 성동2리	매년10월9일
18	국가유공자 무훈탑	1990.6.25	국가유공자 무훈탑 건립 추진위원회	충남 서산시 읍내	현충일

19	우리고장 국가유공자 기념비	1992	남이면	충남 금산군 남이면 하금리	
20	우리고장 국가유공자 기념비(금성면)	1992	금성면	충남 금산군 금성면 상가리(금성면사무소)	
21	우리고장 국가유공자 기념비(남일면)	1992	남일면	충남 금산군 남일면 초현리	
22	우리고장 유공자 기념비(부리면)	1992	부리면	충남 금산군 부리면 현내리	
23	우리학교출신 국가유공자 기념비	1992.9.28	남이면	충남 금산군 남이면 하금리 (남이초등학교내)	
24	남베트남참전기념비 (청산면)	1992.5.5	참전전우회 옥천군지회	충북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25	전몰호국용사충혼비	1992.5	전몰호국용사 충혼비건립 추진위원회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응산리	전몰호국용사 추모제
26	호국전몰동문추모비 (합포구)	1992	마산고등학교 총동창회	경남 마산시 합포구 완월동	
27	남베트남참전기념비	1996.9.6	대한해외참전 전우회 진천군지부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 갓고개 현충공원	현충일 기념행사
28	충혼의 횃불	1996	중도면 지역사회개발 위원회	전남 신안군 중도면 중동리	현충일 추모행사
29	충혼탑(암태면)	1996	신안군수	전남 신안군 암태면 단고리	현충일 추모행사
30	현충탑(여수시)	1996	여수시	전남 여수시 중화동 자산공원내	
31	해외(남베트남) 참전기념일	1997.11.3	해외참전 전우회 영동군지부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난계로 공원내	
32	현충탑(영광군)	1997	영광군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현충일 추모행사

33	남베트남참전기념탑	1997.11.10	참전기념탑 건설추진위원회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추모제향(11.10)
3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기념비	1998	무공수훈자회 창녕군지회	경남 창녕군 창녕읍	
35	무공수훈자전공비 (강구)	1998	영덕군 무공수훈자회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해상공원내	
36	남베트남참전기념비	1998.10.31	남베트남참 전전우회	전북 남원시 산곡 교통산성 공원내	추모행사(6.25)
37	남베트남참전기념탑	1998.4.16	남베트남참전 전우회 파주시지부	경기 파주시 조리면 장곡리 체육공원내	현충일 기념식(6.6)
38	남베트남참전기념탑 (포천군)	1998.6.10	남베트남참전 전우회천군지부	경기 포천군 포천읍 청성문화체육공원내	
39	남베트남참전기념탑 (음성)	1999.12.18	남베트남참전전 우회 성군지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40	참전용사탑	1999	참전용사탑 건설추진위원회	강원 강릉시 옥계 천남리	
41	무공수훈자전공비 (경주)	2001	경주시 무공수훈자회	경북 경주시 황성동	
42	남베트남참전기념탑 (청주 봉명동)	2001.11.17	남베트남참전 전우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솔밭공원내	

주: 참전관련 기념물은 그 명칭 혹은 비문에서 ‘남베트남참전’을 언급하고 있거나 추모 및 기념 내용에 관련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함.

자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pvaa.go.kr>) (2002년 기준), 심주형, 앞의 책 pp.72~74 재인용.

5. 가

가. 가

1) 재평가 도구 개요

아무리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특정 시점의 상황을 현재의 시점에서 재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순식간에 진행되었던 전쟁이 아니고 몇 년간이나 지속된 전쟁상황을 하나의 척도로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그 주관적 척도가 갖는 한계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전제하고, 또한 상정한 바 있는 베트남전쟁에 대한 재평가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베트남전쟁의 주요한 기억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평가의 기준은 앞선 제3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세 가지 범주, 총13개 원칙으로 요약된다(<표 15> 참조).

< 15> 가

전쟁자체의 정당성	① 정당한 명분	· 공정한 명분, 정당화, 충분한 이유 · 특정국가의 자기방어적 권리를 전제
	② 좋은 의도	· 좋은 의도로 전쟁 개시 · 전쟁이 원만히 진행된 후 당사국의 의도에 대한 평가 가능
	③ 비례성	· 전쟁수행 비용이 예상되는 이득과 조화되어야 함. · 전쟁해석의 주관적 한계점
	④ 성공 가능성	· 제반 요건이 갖추어진 전쟁일지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때 개시해야 함.
	⑤ 최후의 수단	· 합리적인 제반 수단을 동원한 후에도 문제 해결안될 시 전쟁개시

전쟁자체의 정당성	⑥ 적법한 권위	·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제반기구(국가 등)에 의해 전쟁개시 · 국가내부적으로는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서 전쟁개시
	⑦ 일관성	· 장기전일 경우, 제반 요건을 갖춘 최초 전쟁의 의도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함.
전쟁수행상의 정당성	① 비례성	· 전쟁수행의 군사적 수단이 전쟁목적과 비례해야 함
	② 분별성	· 승전의 필요성에 무관한 군사적 수단의 사용제한 (예, 비전투원과 비군사적 목표 구분)
	③ 이중효과	· 비례성의 원칙과 분별성의 원칙 동시 고려
	④ 금지된 수단사용금지	· 금지된 제반 수단을 활용한 군사작전 제한
전쟁자체와 전쟁수행상의 상관적 정당성	① 연계성	· ‘전쟁자체의 정당성’ 과 ‘전쟁수행상의 정당성’ 간의 상관성
	② 상황성	· ‘전쟁자체의 정당성’ 과 ‘전쟁수행상의 정당성’ 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전쟁 개시자의 정당성에 대한 상쇄적 보완

2) 주요 기억 유형별 재평가

첫째, 용병 문제에 대한 재평가이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용병시비’는 법리적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한국군을 용병으로 평가하는 측은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참전을 통해 전쟁경험을 체득할 수 있었고,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논리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최초 국가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고자 했던 의도 자체가 국가이익 도모, 전쟁경험 체득 등을 포함하고 있었고, 그 결과 이를 달성했다는 주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순서를 거꾸로 주장함으로써 마치 전쟁 자체를 특정 목표 달성

만을 위한 수단으로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다는 것이 용병이나 아니냐의 문제는 결국 베트남전쟁 자체가 어떠한 전쟁이며, 그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가라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베트남전쟁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전쟁은 이념전쟁의 성격이 강하다.¹¹²⁾ 베트남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당시 프랑스 상황은 세계적인 공산주의 운동의 시험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49년 5월부터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은 “인도차이나 전쟁에 한 명의 사람도 (보내지 말고), 한 푼의 비용도 (사용하지 말자)”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한다. 1949년 12월 공산당 지도부는 평화를 위한 투쟁을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소집되는데, 공산당 언론 사무국장 Etienne Fajon에 의해 소개된 보고서 서문은 “현 시점에서 가장 본질적인 과업인 평화를 위한 투쟁은 모든 민주 세력들의 의무이다”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¹¹³⁾ 이 모임에서 처음으로 베트남에서의 전쟁에 사용될 전쟁물자의 제조와 운송과 적재에 반대하는 투쟁이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임무처럼 소개되었던 것이다. 결국 1949년 이후부터 공산주의자들은 ‘더러운 전쟁(sale guerre)’에 반대하며,¹¹⁴⁾ ‘인도차이나의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선전활동을 진행해 나간다. 프랑스의 일반국민들도 점차 인도차이나에서의 전쟁수행에 대해 비판하는 경향이 높아갔다(<표 16> 참조).

112) 베트남의 입장에서 볼 때, 베트남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는 평가도 정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족해방전쟁과 이념전쟁에 대한 평가의 준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고, 후자는 대치하고 있는 양상 자체가 어떠하냐를 객관적으로 볼 때의 진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전형적으로 소위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전쟁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로 미국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념전쟁’은 아니다. 필자는 여기서 베트남전쟁을 이념전쟁으로 진단하게 된 것은 프랑스의 공산주의 운동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113) *L'Humanité*, 1949. 12. 10., 이재원, “문화적 행위를 통한 반전운동”, 한국문화사학회, 『역사와 문화 9』, 푸른 역사, 2004, p.60 재인용.

114) 인도차이나 전쟁 당시 종종 사용되었던 ‘더러운 전쟁’이라는 용어는 프랑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처음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미국의 순화대사였던 William Bullitt는 이 용어를 *Life*(1947.12.29)에서 처음으로 사용했으며, 프랑스에서는 *Le Monde* 편집장인 Hubert Beuve-Méry가 *Une semaine dans le monde*라는 주간지에서 처음으로 인용하였다. 공산당이 이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원로 국회의원인 Marcel Cachin가 작성한 *L'Humanité*(1947.1.21) 기사를 통해서였다. (이재원, 위의 책, p.78.)

< 16>

(1947~1954)(%)

	1947.7.	1949.7.	1950.10.	1953.5.	1954.2.
질서를 회복하고 증원군을 보낼 것	37	19	27	15	7
베트남과 협상을 할 것	15	—	24	35	42
인도차이나를 포기하고 군대를 소환할 것	—	11	18	15	18
좀 더 단호해지던가, 아니면 포기할 것	—	2	3	4	2
UN이나 미국에 도움을 요청할 것	—	—	8	6	1
다른 방안 강구	5	5	—	2	1
무응답	21	25	20	23	29

자료: Sondages: Revue française de l'opinion publique, 1947~1954, 이재원, “문화적 행위를 통한 반전운동”, 한국문화사학회, 앞의 책 p.77 재인용.

전쟁 초기에 본질적으로 ‘식민지 전쟁’의 성격을 띠었던 인도차이나 전쟁은 1949년 말 중국에서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중국과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에 의해 북부 베트남 지역을 장악한 호찌민의 베트남 정부가 승인되며, 미국 등의 서방세계에 의해 남부 베트남의 ‘바오다이(BaoDai)’ 체제가 인정되면서 반공산주의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 시기부터 1954년 7월 종전까지, 인도차이나 지역은 서구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의 냉전의 전초기지로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이 베트남전쟁은 적어도 발단 단계에서부터 그 성격이 점차 변화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새롭게 재편되어지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전쟁이라고 하는 변화기제 속에 담아내려고 했던 당시의 열강들의 염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베트남전쟁 자체가 갖는 성격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그 정체성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흔히 비난받고 있는 미국의 전쟁 개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초기에 미국이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절대적 강자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베트남전쟁에 대한 개입은 대체로 정당했다고 본다.¹¹⁵⁾ 다만 사태의 진행단계별로 중요한 국면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미

115) 그 구체적인 예로, 호찌민은 미국의 적대감을 사지 않기 위해 1945년 9월 2일 ‘베트남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할 당시, ‘사회주의 국가’임을 선언하지 않았으며, 독립선언문 첫머리에 미국의 독립선언서

국의 외교업무를 총괄하는 국무부의 정보사장 또는 왜곡과 프랑스와의 외교적 관계,¹¹⁶⁾ 인도차이나 반도내의 공산주의운동,¹¹⁷⁾ 그리고 미국 최고 정치지도자의 판단 착오¹¹⁸⁾ 등으로 인해 전쟁의 전략적 기초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지 못하였으며, 결국에는 일정 수준의 매듭도 짓지 못하고 중간단계에서 허무하게 빠져나감으로 인해 전체 전쟁의 원성을 모두 안게 되었다.¹¹⁹⁾ 이것이 오늘날 미국이 비난받고 있는 바의 요체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처음부터 베트남을 지배속국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어떤 형태로든 국제적인 유대를 가진 패권국가 동남아에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개입하려고 할 당시의 상황은 반패권적 동남아시아

의 문구를 사용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인민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러한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도서출판 이산, 2003, p.363.). 또한 추후에 해지된 비밀문서인 *Pentagon Papers*(제2차세계대전부터 1968년 5월까지 인도차이나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기록한 보고서)에는 호찌민의 대미외교활동에 대한 기록이 있다: “1945년 말부터 1946년 말까지, 호찌민은 백악관에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요청하는 전문을 계속해서 보냈고, 편지를 쓰기도 했다. 처음에는 대서양헌장에서 천명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으며, 얼마 뒤에는 민족자결주의에 관한 유엔헌장을 발췌하기도 했다. 하지만 호찌민은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Michael Maclear, 유정찬 역, 베트남: 10,000일의 전쟁, 을유문화사, 2003, p.43)

116) 이와 관련된 내용은 1945년 경 일본 점령군에 대항하여 싸우던 연합군(영국군, 미군, 중국군, 프랑스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지역에 파견된 미국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 소속의 A. Patti라는 소령에 관한 취재형식의 책자에 상세히 나타나 있음(Maclear, 2003, pp.19~50); 트루먼 대통령 재임시 국무부 정세분석가로 일했던 W. Bundy는 “만약 미국이 프랑스에게 ‘돕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효과적인 조직화와 재무장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다(Maclear, 2003, p.61). 또한 W. Fulbright 상원의원도 “동맹국 프랑스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기만한 것이다”라고 프랑스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Maclear, 2003, pp.47~48).

117) 당시에 베트남 뿐만 아니라 인도차이나 전반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내용은 다음 참조: 위의 책, pp.345~353.

118) 미국의 정치지도자가 베트남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오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 John G. Stoessinger, 앞의 책 pp.111~148; 유인선, 위의 책, pp.404~426.

119) 프랑스의 철수와 베트남공화국의 수립 외중에서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세계적 수준에서 유럽에서의 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주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남베트남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신뢰도였다. 실제로 1955년 10월 23일 남부의 정치체제를 군주제로 할 것인지 공화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에서 당시 사이공 유권자는 45만명이었는데 실제 투표자는 이보다 3분의 1이나 많은 60만5천명이나 되었다고 한다(유인선, 위의 책, p.396). 미국은 당시 구시대의 황제가 있던 곳을 자연스러운 정치적 거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남부를 베트남에서 더 정통성이 있는 것으로 구시대의 황제가 있던 곳을 자연스러운 정치적 거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남부를 베트남에서의 정통성이 더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보인다.

질서회복과 유지라는 분명한 목표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남베트남 정부의 한국군 참전요청, 그리고 6·25전쟁의 공유경험과 한·미 안보동맹을 근거로 한 미국의 파병 협조요청 등은 적어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병이라고 폄하될 만큼의 종속적 관계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¹²⁰⁾

이렇게 하여 개시된 베트남전쟁에 한국군이 참전하게 된 것이 과연 용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군의 참전은 우선 먼저 한국측이 외교적으로 의사표명을 국제적으로(미국 등) 한 뒤, 남베트남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오히려 미국은 한국측의 파병제의 초기 단계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본다.¹²¹⁾ 그리하여 초기 파병은 비전투병과 위주로 이루어졌고, 이후 전쟁 양상이 계속해서 확대되어짐에 따라 미국은 전투를 위한 새로운 우군이 필요했는데, 외교적으로 새로운 나라를 섭외할 만큼의 여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측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전투병의 파병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이 미국의 용병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가 없다.

결국 한국군이 용병이라는 문제제기는 “어떤 결과적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 원인은 정당하다”고 하는 결과주의적으로 베트남전쟁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빚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한국군이 미국의 용병이었느냐 아니냐의 논의는 그 자체로 가치없는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이 최초 의도했던 바가 정당했으며, 그 의도대로 진행되었는가이다.

베트남 파병은 1964년 9월 의무요원과 태권도 교관 파견, 1965년 3월 공병대인 비둘기부대 파견, 1965년 10월 전투부대인 해병 청룡부대와 육군 맹호부대 파견, 1966년 9월 백마부대 파견 등으로 이어졌다. 8년 8개월 동안 모두 합쳐 325,517명의 국군이 베트남 땅을 밟았으며, 그 결과 전사망자 5,066명, 부상자 11,232명, 미상의 실종자, 그리고 전후 고엽제에 의한 고통을 호소하는 수 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한국군의 파병은 절차상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었다. 특히 최초파병안에 대해서

120) 이와 관련된 미국, 베트남, 한국, 그리고 한국내에서 이루어진 공식적인 문건을 망라한 총48건에 대한 문헌자료는 다음 참조: 최용호(2003), 앞의 책 pp.909~972.

121) 이승만 정부의 해외파병 시도에 대해서는 최용호(2004:pp.135~137) 참조.

는 국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 “자유베트남의 지원, 공산위협에 공동대응, 당시 헌법 정신에 입각한 국제평화유지와 침략전쟁 부인”의 명분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파병된 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 교관의 파견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그 국내법적인 모든 절차를 거쳤다.

이후의 추가파병에서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소위 “베트남전쟁이 명분이 없고 미국의 용병이었다”고 주장하는 측의 주장은 당시 야당에서 극렬하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를 강행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하지만 당시의 모든 추가파병은 국내법적인 절차와 국제적 관례를 잘 따르고 있다.

제2차 파병과정에서 공병 및 수송부대 등 비전투요원 2,000명의 추가파병이 있었을 경우에도, 국민의 민의를 직접적으로 대변했던 제47회 국회 제7차 본회의(1965. 1. 26)는 정부의 원안대로 동의하였다. 당시 소수의견으로 “현단계로서는 국토방위에 차질을 가져온다”는 입장이 있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도 큰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다.¹²²⁾

하지만 실질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것은 전투부대의 파병이 이루어졌던 제3, 4차 파병의 경우이다. 이 경우 파병의도(=명분)와 결과는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정치인 등은 편견없이 지지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국내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이 작동하고 있었다. 물론 야당인사들 중에는 극렬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찬성하는 자들도 있었다.¹²³⁾ 심지어 여당 인사 중에서도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당시 파병반대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었지, 야당이 일색으로 반대하고 여당이 일색으로 찬성하는 파벌적 국면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¹²⁴⁾ 즉 박정희 대통령

122) 이때 이 제2차 파병(비둘기부대) 안건이 야당측이 빠진 상태에서 가106 부11 기권8표로 본회의를 통과되었고, 제3차 파병(맹호부대·청룡부대) 안건은 1965년 8월 13일 본회의에서 가101 부1 기권2표로 통과되었으며, 제4차 파병(백마부대)의 안건은 1966년 3월 20일 대부분의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123) 후에 한국의 대통령이 된 김대중 당시 민중당 대변인은 1966년 맹호부대가 주둔한 궤년을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한 바 있으며(『서울신문』, 1998. 12. 14), 또한 민중당의 박순천 총재도 9월 3일, 주월 한국군부대를 방문하여 참전장병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귀국후 박순천 총재는 『동아일보』 기고문을 통해, “결과적으로 파병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많은 우리 장병을 베트남에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박총재는 “비행기 위에서 풍요의 대지를 내려다본 뒤 너무도 황홀한 나머지 베트남 땅에 입을 맞추며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남의 나라에 군대를 보내고 민족의 위력을 발휘한 이 감격, 이 비옥하고 광활한 땅이 우리의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소회를 남겼다.

124) 하나의 예시로 당시 야당의원 조윤희 의원(민중당)은 “38선의 연장이 남베트남이고 동남아이므로 파병

이 전횡하여 파병을 주도했다고 하는 세간의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당시 국회 동의안 상정시 야당위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결된 것은 당시 한일협정비준안이 동시에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어 같이 계류되었기 때문에 파병반대의 명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후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¹²⁵⁾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볼 때,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용병으로 참전하게 되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소위 “용병론”이 지향하고자 했던 “명분없는 전쟁”이라는 평가에 대한 진단을 하고자 한다. 제3, 4차 파병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은 이미 전제되어 있음을 앞서 밝혔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의도(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965년 7월 14일 전투부대(맹호부대와 청룡부대)를 파병하기 위한 ‘동의요청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1965 6 21 , 1
 2. 6 · 25
 3. 1
- .126)

을 찬성한다”고 했고, 여당측에선 박종태 의원이 “미국과 한국의 입장은 본질적으로 다른 만큼 파병을 반대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종각, “「파월 ... 뜨거웠던 국회공방/「폐만파병」 계기 되 돌아 본 「그때」”, 『동아일보』, 1991. 1. 9.).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당시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차지철 의원이 베트남 파병을 반대했던 것은 박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전투부대 파병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실리를 얻어 내려했던 박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파병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박대통령은 차지철에게 파병을 반대하는 여론을 일으키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고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파병반대를 주장하는 바람에 박대통령이 “그만 끝내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는 것이다(최용호, 2004:pp167~168).

125) 『동아일보』, 1991. 1. 9.

126) 최용호(2003), 앞의 책 p.950.

1966년 3월 2일 정부가 국회에 추가 전투부대(백마부대)를 파병하기 위한 ‘동의 요청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

3.

이상의 제 3, 4차 추가파병의 경우에 있어서 그 파병의 의도는 이후 실제 전쟁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다만 제4차 추가파병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브라운 각서(Brown Memorandum, 1966. 3. 4)’의 성격은 ‘용병’ 의혹과 ‘명분없는 전쟁’ 등의 경우 일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당시 미국내의 반전운동 등으로 인해 전쟁수행을 위한 국민적 지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방국을 상대로 한 협력요청의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전쟁의 정당성이 낮게 평가되는 제3, 4차 추가파병의 경우도 절차적 정당성은 전제되고 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은 베트남참전에 있어서, 한국의 1~2차, 3차, 4차 파병의 경우는 성격이 다소 다르며, 미국의 경우, 대통령별로 전쟁수행 방식 및 철학이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한 전쟁자체의 정당성 진단이 요구된다.

둘째, 고엽제 피해 문제에 대한 재평가이다. 이 문제는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 심지어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베트남의 민간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의 군인이

127) 국방부, “남베트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증파에 관한 동의요청”, 『베트남관련 사료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66, 최용호(2004:pp188~189) 재인용.

외의 상사원이나 기술자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다. 물론 그들이 모두 고엽제와 관련된 법령에 수혜자가 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당시 미군은 1962년부터 1971년 1월 사이에 오렌지제(Agent Orange)와 같은 고엽제를 사용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약품은 ‘신경작용제’(nerve agents), 포스겐(phosgene) 등과 같은 ‘치명적인 화학무기’(lethal chemical weapons)로 알려지지 않았다.¹²⁸⁾ 이것이 화학무기금지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의 금지무기에 포함된 것은 1993년의 일이다.¹²⁹⁾

고엽제 문제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 문제는 전쟁수행상의 범주에 속한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에 의한 고엽제의 살포는 전쟁수행상의 정당성 측면에서 평가가 혼재되어 있다. 우선 전쟁수행의 군사적 수단이 전쟁목적에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 볼 때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 전장상황 속에서 적정의 불명확, 민간인과 정규군의 혼재, 그리고 소위 ‘호찌민 루트’를 통한 예상치 못한 중간 침투 등은 어느 정도 이 원칙을 충족해 준다고 사료된다. 또한 금지된 수단 사용금지 원칙에 의한 비난은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¹³⁰⁾ 왜냐하면 당시 기준에 의하면 고엽제가 국제적인 금지화학무기 목록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전투원과 비군사적 목표물을 고려하는 분별성의 원칙 측면에서 볼 때,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의도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베트남의 민간인 희생이 객관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분석을 지지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¹²⁸⁾ Harbour는 여기에 대한 선행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Frances V. Harbour, “정의전쟁의 전통과 베트남 전에서의 ‘비치명적 화학무기’의 사용”, Andrew Valls, 앞의 책 p.113.; David Ballingrud, "It didn't happen ... like that," *New York Times*, 18 June 1998; Clay Bowen & Robert Gard, "Poison Gas Use by U.S.? Not Likely," *New York Newsday*, 22 June, 1998; Dana Priest, "Pentagon Debunks Poison Gas Report: Probe Finds 'No Hint' of Mission to Kill Defectors," *Washington Post*, 22 July 1998; Frances V. Harbour, *Thinking about International Ethics: Moral Theory and American Foreign Policy*, Boulder: Westview Press, 1999, pp.47~45.

¹²⁹⁾ Andrew Valls 편, 앞의 책 p.113.

¹³⁰⁾ 호찌민 루트는 북위 17도선 북쪽의 팡빈(Quang Binh)성에서 시작해 베트남 중부의 험준한 라오스와 캄보디아 국경선의 쯔엉선(Truong Son, 長山) 산맥을 따라 라오스와 캄보디아 지역 내에 설치된 북베트남군의 보급로를 말한다. ...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북베트남이 자신들의 영토에 군사도로를 건설하고, 이 통로를 통해 수많은 군대가 투입되는 사실에 대해 하등의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했다. ... (최용호, 2004, p95)

비례성과 분별성의 원칙에 있어서 평가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중효과의 원칙 또한 명확한 평가가 어렵다.

전반적으로 베트남전쟁에서의 고엽제 사용은 전투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당성은 있었지만, 그 사용대상 및 지속시간 등에 있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여 전반적인 정당성 확보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라이파이한 문제에 대한 재평가이다.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이 전장에서 자신의 임무이외의 활동을 통해 빚어진 불상사는 불법적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베트남전쟁에 있어서 한국군에 빚어진 혼혈의 문제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보도에 의하면, 현재까지 알려진 라이파이한은 최소 5천명에서 최대 3만 명까지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베트남전쟁 당시의 한국군에 의해 빚어졌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럴만한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동시에 상존하고 있다. 설령 당시의 한국군인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한국인에 의해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증거도 있다(<표 17> 참조). 반면에 한국군인의 책임을 더 세차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군인이 어떻게 동반 귀국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군인이 어떻게 전장상황에서”라고 하는 재반박을 방어해야 할 과제가 또 남아 있다.

< 17>

응답자	51명	89명
응답자 직업분포	전기기사 9, 회사원 8, 정비공 6, 상업 6, 기술직 5, 교직 5, 운전기사 4, 용접공 3, 건축기사 3, 기계공 2, 화학기사 1, 인쇄공 1, 군인 1*	주부31, 산업 22 회사원 12, 학생 6 공무원 6, 군인 4*
비고	여자 1명 포함	

주: 베트남 난민의 한국인 배우자 중 군인의 경우는 ‘*’ 표시 1명에 지나지 않음. 확률적으로 단 2%도 되지 않음.

자료: 김기태(2002, pp.201~206) 참조.

더욱이 이 라이파이한 문제는 1945년 이전시기의 한국인들, 베트남전쟁 기간중 군인이외의 많은 한국인들, 소위 ‘한류열풍’으로 인한 한국과 베트남의 국가간 부의 균형으로 인해 빚어진 ‘신라이파이한’ 문제 등과 함께 매우 복합적으로 심층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가 모두 해소되고 난 뒤, 전쟁중에 한국군인이 ‘라이파이한’의 탄생을 위한 원인제공을 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전쟁수행상의 정당성 중에서 비례성의 원칙, 분별성의 원칙을 동시에 파기하고 있다. 이는 군법으로 엄중히 다스려져야 할 것이다.

넷째, 민간인 피해 문제에 대한 재평가이다. 웨스트모랜드(W. Westmoreland) 장군은 다음과 같이 베트남전쟁 중 민간인 피해에 대해, “지난 3년간 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나는 베트남전쟁만큼 민간인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던 전쟁은 유사 이래의 전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¹³¹⁾ 그만큼 베트남전쟁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야전군인으로서 전쟁수칙을 준수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전쟁중 베트남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전쟁수행상의 분별성의 원칙에 엄격히 반하는 행동이다. 또한 전장상황의 혼란스러움과 자연환경 등을 충분히 알면서도, 북부 호찌민이 민간인을 전투원으로 활용했던 점, 남베트남에서의 공산주의운동 지원, 그리고 국경을 넘는 호찌민루트의 건설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게 되었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하여 연합군 측에서 ‘전략존계획’의 추진은 그 계획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와는 별개로 전쟁수행상의 비례성의 원칙과 분별성의 원칙, 이중효과의 원칙, 그리고 금지된 수단사용금지의 원칙 등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다만 그 시행상의 강압성, 신속성 등은 단점으로 평가되며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점도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다섯째, 난민 문제에 대한 재평가이다. 베트남전쟁과 그 이후 이로 인해 베트남을 비롯한 주변국으로부터 탈출한 난민들의 문제는 국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고, 현재도 그 영향의 편린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¹³¹⁾ Michael Maclear, 앞의 책 p.286.

다른 사안과는 달리 쌍방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베트남측의 노력은 보다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차치하고 “과거를 덮고 미래를 향하자”고 하는 슬로건하에 한국과 베트남 양국간의 상호국익을 추구하려는 것은 이전시기에 “국익을 위해 또는 민족을 위해 전쟁을 수행한다”고 했던 논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가 진실로 “과거를 덮고자” 한다면, 자신들의 사회주의 운동과정에서 탄압을 못 이겨 이탈한 국제난민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물론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모든 주체들의 책임있는 대안 마련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베트남으로서는 자신들이 이미 쟁취한 승리의 전쟁 속에서 전쟁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쟁자체와 전쟁수행상의 상관적 정당성도 매우 낮게 평가될 것이다.

여섯째, 참전용사 추모 및 기념문제에 대한 재평가이다. 현재까지 참전용사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대부분의 참전자들이 견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거기 있을 때, 너희들은 뭘했느냐”는 입장이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 또는 인권운동을 주장하고 있는 학자들에 의한 “명분없는 전쟁에 동원된 용병들의 잔혹한 민간인 학살행위”라고 하는 입장이다. 양자 모두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를 국가와의 숭고한 계약에 의해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자신의 ‘공적’이 얼마인가를 기초로 하여 스스로를 정당화하고자 한다. 이는 설령 비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전공(戰功)’을 달성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행동은 합법적이라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 행위는 오히려 국가의 의지를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데 반하는 것으로서, 결국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본원적인 의도와 이율배반적인 관계에 놓이게 만든다.

한편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소위 “명분없는 전쟁”의 주장도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 또는 전후 베트남정부가 조사하여 밝혔다고 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베트남의 민간인이 전쟁수행 중에 부당하게 사망한 경우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베트남전쟁의 “수행상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는 될 수 있겠지만, “전쟁자체의 정당성”을 모두 평가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근거가 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참전자들의 행위에 대한 기념사업은 객관적인 선상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위의 양자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참전자들의 행위는 숭고한 군인정신에 근거한 것이다. 설령 권위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에 근거한 명령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추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박효중 교수는 국가의 권위가 갖는 근거를 의무론, 결과론, 그리고 철학적 무정부주의에서 찾고 있다. 특히 그는 현실세계가 갖는 한계점을 상정하면서 국가의 모습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불완전한 국가’에 대한 공동체 성원들의 복종 의무는 언제나 지향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¹³²⁾

현재 베트남전쟁 참전자를 위한 기념시설이 전국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실정이지만, 그것도 대다수가 공공기관(국가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별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점은 국가가 스스로 행한 ‘전쟁’에 대해,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높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적 현양시설물 중에서도 거의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3) 베트남전쟁에 대한 종합 재평가

한국에서 국가에 의한 기억독점의 위기는 1987년 소위 ‘6월 항쟁’ 이후 시민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된다. 그 대표적인 유형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5·18 참여자들은 국가에 의해 ‘폭도’로 인식되었다. 베트남전쟁에 대한 국가의 기억독점도 바로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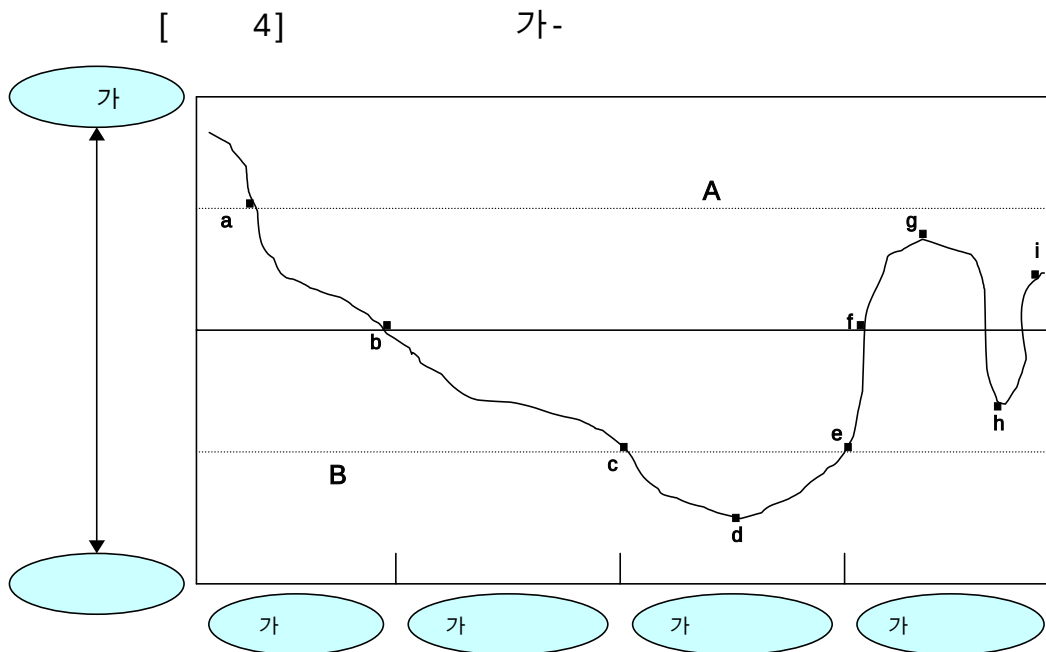
현재까지 베트남전쟁에 대한 선행연구는 특정 부분 하나만을 가지고 전부를 해석하려고 하는 ‘범주의 오류(fallacy of category)’를 범한 경우가 많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베트남전쟁 수행은 전쟁의 명분이 가장 낮았다고 평가되어지는 전투부대의 파병(3·4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명하고도 국내법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향후 전쟁이 종결된 이후 이를 대비해 본다고 하더라도 의도한 명분에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룬 것이

¹³²⁾ 박효중, 『국가와 권위』, 박영사, 2001, 제2장, p.39.

었다. 다만 여기서 성공한 결과를 도출해 냈기 때문에 그 의도가 정당했다고 하는 역논리는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선호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것이 이후 소위 ‘문민화’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화’ 또는 ‘인권’ 등의 개념과 부합되면서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와전되기에 이른다. 즉 한국사회에서의 베트남전쟁은 파병 당시의 법 논리 또는 정서 논리와는 전혀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쟁기억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해설 권위가 도전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다음 [그림 4]에서 a-b 구간에서 일어났다. 현 상태는 적어도 전쟁기억 측면에서 보면, c-d-e의 ‘국가권위실추기’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국가 권위의 내구성을 회복하는 e지점이후의 단계에서는 전쟁기억에 대한 국가 권위가 안정적 범위내에서 논의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 A/B는 각분야의 임계선을 의미함. a~i는 추이과정에서의 중대한 변환점을 말하는 것으로, a는 국가중심적 경향을 다소 벗어남을 의미하며(이 지점이전에는 시민사회에 의한 시민혁명 일어남), b는 국가중심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는 지점이며, c는 국가중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시민사회중심의 사회를 의미하며, d는 시민사회중심의 최고조를 의미하며(이때, 국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집단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음), e는 시민사회가 국가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며, f는 시민사회가 국가의 권위를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하는 수준이며, g는 국가중심적 경향으로 경도되지 않는 한에서의 시

민사회와의 조화상태이며, h는 시민사회중심적 경향으로 경도되지 않는 한에서의 국가와의 조화상태이며,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조화와 균형의 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임. 여기서 대체로 e~i사이의 일련의 추이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원만한 조화상태로 볼 수 있음.

한편 베트남의 베트남전쟁 수행도 전쟁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베트남의 경우 전쟁자체의 정당성 하위 원칙 중 몇 개(적법한 권위 등)는 완전하게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베트남과 같은 편에 서서 전쟁을 치른 남베트남 내부의 VC는 적법한 권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북베트남측에 대한 정당성 평가에 있어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전투참여문제 등도 흠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한국과 북베트남측(VC포함)이 치른 전쟁은 전쟁자체의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한국측은 전쟁수행상의 정당성 측면에서 약점이 많고, 북베트남측은 전쟁자체의 정당성 확보에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133)

1) 공유문화적 모델

한국과 베트남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기억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은 양국(민)의 공유문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일상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경험이 같거나 비슷할 경우 의사소통이 훨씬 잘 됨을 알 수 있다. 국가간의 관계도 공유하고 있는 문화에 근거할 때 훨씬 교류·협력이 잘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과거 좋지 않은 공동기억을 치유해 나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 구체적인 예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언어문화에 근거한 접근이다. 양국은 고래로부터 한자를 사용해 왔다. 베트남에서 현재의 베트남어 표기방식이 있기 이

133)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동남아시아(태국)와의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다음 참조: 김한식, 앞의 책 pp.519~534. ①대학 수준의 학술교류의 폭 증대, ②근대화 및 국가발전 모색을 위한 공동협약, ③인류학·고고학 분야에서의 공동학술조사, ④동·식물 및 산림·해양자원에 대한 공동조사, ⑤관광 증대를 통한 문화교류(문화관광도시간 자매결연, 관광·문화 협력위원회 구성, 관광지의 연계사업 추진), ⑥문화원 상호 개설, ⑦청소년 지도자회의 창설을 통한 청소년 교류 확대, ⑧태국내 새마을 운동 확산을 위한 공동노력, ⑨한국 태권도와 타이 복싱의 상호 교류, ⑩스포츠 전지훈련장 대여 및 합동훈련, ⑪마약퇴치를 위한 협조 등.

전에는 한자가 통용되었다. 현전하는 베트남의 시골마을 공동체에서 겨우 도이(cau doi, 句對)는 쉽게 발견된다. 이는 대립되는 한자로 된 한쌍의 긴 나무판의 글귀로서, 유적과 관련된 역사 또는 전설의 내용이나 후대에 전하는 교훈의 글귀로 이루어져 있다. 베트남 대부분의 마을에서 전설상의 시조로 알려진 옥화(Ngoc Hoa, 玉花)라는 인물이 마을 수호신으로 모셔지고 있는데,¹³⁴⁾ 그 비명과 비문에는 한자로 내용이 새겨져 있다.¹³⁵⁾ 베트남의 지도자였던 호찌민의 한시 작품도 그 한 예이다.¹³⁶⁾ 일상의 언어적 편린 중에서도 한국 전통의 음력 명절 때 입는 어린이의 옷인 ‘떼떼옷’을 예로 들 수 있다. 즉 베트남어로 ‘떼뜨(Tet)’가 명절을 의미하는 ‘절(節)’이기 때문이다.¹³⁷⁾ 그리고 베트남전쟁 기간 중에 통역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자로 필담을 나누기도 했다.¹³⁸⁾

둘째, 음력을 바탕으로 하면서 양력 사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이다.¹³⁹⁾ 한국의 경우 현재 24절기의 편성 자체가 그 대표적이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음력중심의 전통적 문화양식이 심지어 공산주의식이 국가의 기본 개념에까지 영

134) 지역 거주 베트남 사람들은 덕성(duc thanh, 德聖) 또는 성황(thanh hoang, 城隍)이라고 부른다(최호림, “베트남의 의례활성화와 국가-사회관계: 하노이의 한 프엉(坊)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p.185). 특히 후자는 한국 전통의 ‘성황당’과 자구의 음과 훈이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다.

135) 비명은 ‘玉花公主之墓’이며, 비문은 “一陣還軍殿安宇宙 九玲破賊扶李江山 婦界出英雄微趙而後 國朝隆布誥生死非凡”이다(최호림, 2003, p.185 p.190). 이 비문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한번의 진지전으로 적군을 물리치고 땅을 안전하게 지키고 우주를 빛나게 하였네. 아홉 살의 어린 나이로 적을 평정하고 리왕조의 강산을 지키도록 하였네. 여자 영웅이 탄생하니 쯡 자매의 뒤를 잇고, 조정이 칙령을 내려 그 삶과 죽음의 모범됨을 기리나니”로 풀이된다. 여기서 말하는 쯡 자매는 쯡썩(Trung Trac, 徵側)·쯡니(Trung Nhi, 徵貳) 자매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AD40~43 기간 동안 한(漢)나라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켜, 이후 베트남의 외침항쟁의 상징적 인물로 존경받게 된 인물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의 한 민화에서도 두 자매의 이름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최용호, 2004, p.10). 그 밖에 현지 주민들의 한국군부대 환영을 위한 각종 플래카드에서도 한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최용호, 2004, p.375).

136) 호찌민은 유려한 붓글씨로 1961년 5월 23일자의 한시 한편을 남긴 바 있다(김용옥, 『앙코르 와트·남 베트남 가다(上)』, 통나무, 2005, p.56).

137) 이러한 추측에 대해 청운대학교 베트남학과 김종욱 교수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2005. 3. 9. 전화인터뷰).

138) 『한겨레21』, 제273호, 1999. 9. 2.

139)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즉 한국에서의 양력은 기독교의 유래와 서구화와 관련이 있으며, 베트남에서의 양력은 공산주의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도 결국은 양국가에 있어서 양력은 외생문화의 도입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사회저변의 압력을 통해 국가가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¹⁴⁰⁾ 현재의 베트남 국경일 중에서 이와 같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표 18> 참조).

< 18> 가

1.1	양력설(Tet duong lich) *	양력
12.29~1.3	음력설(Tet am lich) *	음력
1.2	람선 의거(Khoi Nghia Lam Son)(1418년)	음력
1.5	동 다 승전일(Le Dong Da)(1789년) -꽝쑹(Quang Trung) 장군이 청군을 대파한 기념일	음력
1.6	베트남민주공화국 제1기 초대 국회 총선거일(1946)	양력
1.29	원(몽고)군에 대한 최초 승전일(1258)	양력
2.3	베트남공산당창립일(Ngay Thanh Lap Dang Cong San VN)	양력
2월	하이바쑹(Hai Ba Trung) 의거(40년 3월)	음력
3.8	국제여성의 날(Ngay Quoc Te Phu Nu)	양력
3.8	바익 당(Dach Dang)의 제3차 승전일(1288년)	음력
3.10	홍브엉(Gio To Hung Vuong)의 제사일	음력
3.26	호찌민공산청년단(Doan Than nien Cong san HCM) 창립일(1931년)	양력
4.25	통일베트남 국회 총선거일(1976년)	양력

¹⁴⁰⁾ Benedict Kerkvliet, "Village-State relations in Vietnam: the Effect of Everyday Politics on De-collectivizatio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54(2), 1995, pp.346~418; Gareth Porter, *Vietnam: The Politics of Bureaucratic Soci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p.118~126; 공산당 및 국가가 제제하는 조직 외부에 있는 일반 인민들로부터의 압력이 국가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연구는 다음 참조: Christine Pelzer White, "Agricultural Planning, Pricing Policy and Cooperative in Vietnam," *World Development*, vol.13(1), 1985, pp.97~114; Adam Fforde, *The Agrarian Question in North Vietnam: 1974~1979*, Armonk, NY: An East Gate Book, 1989; Ngo Vinh Long, "Reform and Rural Development: Impact on Class, Sectoral, and Regional Inequalities," William S. Turley and Mark Selden, eds., *Reinventing Vietnamese Socialism*, Boulder: Westview Press, 1993, pp.165~207; Melanie Beresford, *Vietnam: Politics, Economic Development in Vietnam*, London: Macmillan, 1988.

4.30	승전 및 남부해방일 (Ngay Chien Thang, Giai Phong Mien Nam) (1975년) *	양력
5.1	국제노동절(Quoc Te Lao Dong) *	양력
5.7	디엔 비엔 푸 승전일 (Ngay Chien Thang Dien Bien Phu) (1954년)	양력
5.19	북베트남전선(Mat Tran Viet Minh) 창립일(1941년)	양력
6.11	호찌민 주석의 애국의 경쟁 호소일(1948년)	양력
7.2	제6기 국회에서 국호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결정(1976년)	양력
7.20	인도차이나전쟁 종결에 관한 ‘제네바협정’ 체결일(1954년)	양력
7.27	상병 열사의 날(Ngay Thuong Binh Liet Si) (1947년)	양력
7.28	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 (Tong Cong Doan Lao Dong VN) (1929년)	양력
8.19	8월혁명성공기념일 (Ngay Cach Mang Thang 8 Thanh Cong) (1945년)	양력
9.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경일(Quoc Khanh) (1945년) *	양력
9.10	베트남조국전선(Mat Tran To Quoc) 창립일(1955년)	양력
9.12	응에 평 소비에트 기념일(Ngay Xo viet Nghe-Tinh) (1930년)	양력
9.23	남부 항전의 날(Ngay Nam Bo Khang chien) (1945년)	양력
10.10	수도 하노이 해방 기념일 (Ngay Giai Phong Thu Do HN) (1954년)	양력
10.14	베트남 농민회(Hoi Nong Dan VN) (1930년)	양력
10.15	인민대중동원(Dan Van, 民運)의 날(1949년)	양력
10.20	베트남 부녀연합회 (Hoi Lien Hiep Phu Nu VN) 창립일(1930년)	양력
12.19	전국 승전기념일(Ngay Toan Quoc Khang Chien) (1946년)	양력
12.20	민족해방전선 (Mat Tran Giai Phong Dan Toc Viet Nam) 창립일(1960년)	양력
12.22	베트남인민군(Quan Doi Nhan Dan VN) 창립일(1944년) *	양력

주 : ‘*’ 표시는 공휴일로 지정된 날짜임.

자료 : 최호림, 앞의 책 pp.146~148 토대로 정리.

셋째, 지역공동체 단위의 유대를 통한 접근이다. 한국에서는 지역별로, 문화적 양식(유교학풍 등) 등에 따라 지역별 전통이 현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자치체가 도입되어 정착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도 전통적인 지역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존속되어오고 있다. 그 예가 종호(dong ho)제도이다.¹⁴¹⁾

2) 보편문화적 모델

한국과 베트남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기억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하기 위한 두 번째 출발점은 세계보편적인 문화에 근거하는 방안이다. 평화, 인권, 자비 등은 보편문화의 상징적 이념들이다. 과거의 어떠한 공과(功過)를 떠나서 현재 양국가가 인간적인 고통을 안고 있는 점이 있다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접근인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질병퇴치를 위한 상호 협력이다. 그 대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고엽제 환자치료를 위한 의료정보의 교환과 한국의 대베트남의료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축의 경우, 현재 베트남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조류의 바이러스성 질병인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문제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여기에 한국이 조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서울대 연구팀이 김치 유산균(乳酸菌)을 활용하여 그 치유방안을 개발했다고 한다.¹⁴²⁾ 여기에 대한 정보를 베트남에 지원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베트남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전통적으로 제례의식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2001년 12월 11일, 베트남 팜남성 디엔 반현 즈엉읍 하미마을에서는 베트남팜남성인민위원회와 팜남성재향군인회의 후

141) 쩌후엔로안(Tran Huu Yen Loan), “베트남 홍강델타 지역의 ‘종호’ 제도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10: “종호(dong ho)라는 명칭은 독립적인 두 단어 ‘종’과 ‘호’로 구성된다. ‘종’은 혈통(descent)에 ‘호’는 성(surname)에 해당된다. 종호는 부계 혈통규정에 의해 형성된 혈연집단으로 영어의 리니지(lineage)에 해당된다. 종호는 혈통의 선을 따라 계보적으로 연결된 사람들로 구성되며, 이 구성원들이 계보적 연속성과 공동의 관계를 따질 수 있는 근거이다. 전통적 베트남 사회에서 종호는 한국의 종족과 거의 흡사하다. 즉 부계제 확대가족의 핵을 형성하는 남성들과 이 남성들과 계보로 연계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다른 곳에 거주하는 여성구성원(딸, 자매, 고모)은 종호의 성원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배우자나 자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종호구성원은 성(姓)의 부계적 계승을 바탕으로 동성집단(name group)을 형성한다.”

142)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2005. 3. 7.

원아래 한국의 (사)남베트남참전전우복지회가 주최하는 베트남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기념비 제막식을 가진 바 있다.¹⁴³⁾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형식에 있어서 국가단위의 대형 프로젝트식으로 추도하는 것은 국립묘지급에서 지원·현양하는 것이 더 좋고, 이와 같이 지역단위나 특정 단체에 의한 것은 기금형식으로 “여러 곳에(=포괄성), 계속해서(=지속성)”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였고, 현재는 부의 평등을 중시하는 공산주의 사회이다. 따라서 조금씩 나누어서 거출하는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기부를 한다면 우선 당장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으며, 더욱이 추후에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지 않으면 더 많은 실망감을 안겨다 줄 수 있을 것이다.

3) 실용문화적 모델

체제와 이념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생존문제는 언제나 선행한다. 때로는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 체제와 이념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이 그 역의 논리에 의해 희생되어지는 피동적 조치가 아니라면 이 또한 같은 범주에서 논의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존은 사상이나 체제와 같은 상징문화와는 달리 항상 실용적인 생활세계(Lebenswelt)의 문제이다. 따라서 베트남전쟁의 성격에 대한 이념적 평가와 그 성격과는 별개로 현재 베트남 국민과 한국 국민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세부실천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접근법에 입각한 몇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활동을 통한 교류의 활성화이다. 한국의 교육서비스 수지 적자가 OECD국 중에서 최악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즉 한국인이 해외로 가서 유학 및 연수를 하는데 지출한 금액이 해외의 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지출한 금액보다 월등히 많다는 얘기이다.¹⁴⁴⁾ 그것도 미국 등 몇 개 국가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양

143) 사단법인 남베트남참전전우복지회 홈페이지(<http://kosvet.price.co.kr>, 2005.2.16 검색)

144) 『동아일보』, 2005. 2. 7.

성이 증시되는 국제화시대에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최근 들어 정부는 한국을 잘 알면서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해외 인력을 개발하는 동시에 유학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국내 대학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¹⁴⁵⁾ 이는 매우 고무적인 노력이다. 교육부(국제교육진흥원)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해외유학박람회”를 개최하여, 중국, 인도, 러시아, 캐나다, 베트남, 태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⁴⁶⁾ 이 사업에 대상국가로서 베트남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위 베트남에서의 ‘한류’ 열풍으로 인해 개별적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또한 양국관계의 긍정적 관계변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산업연수 프로그램의 활성화이다. 학술적인 활동 이외에 산업연수를 위해, 베트남의 연수생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들은 향후 양국간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다양한 메타적 접근(meta approach)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의료 봉사의 기능도 하면서 수익성 있는 사업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⁴⁷⁾

1) 한국의 과제

첫째, 국가의 권위를 확보해야 한다. 전쟁에 대한 기억과 그에 대한 추념사업 등에 있어서도 권위를 가진 국가의 권력 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가의 개

¹⁴⁵⁾ 『중앙일보』, 2004. 12. 6.

¹⁴⁶⁾ 현재까지 베트남 학생의 장학생 선발은, 1990이전까지 2명, 1994년 2명, 1995년 6명, 1996년 6명, 1997년 5명, 1998년 1명, 1999년 5명, 2000년 4명, 2001년 3명, 2002년 2명, 2003년 3명, 2004년 4명이었으며, 2005년에도 4명이 계획되어 있다고 함[국제교육진흥원 정미례 연구사(02~3668~1380)와의 전화인터뷰, 2005. 2. 18].

¹⁴⁷⁾ 베트남 호찌민시에 성모안과병원(원장:이경현)이 개설된 바 있다.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2005. 1. 31.

념은 과거 군국주의, 전제주의 시대의 것과는 전혀 상이하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제도상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그 권력의 위임절차와 권력행사 과정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 시민은 국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된다. 이제 한국사회는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권위를 가진 국가 개념을 창출해야 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일부 우익세력에 의한 과거 국가에 의한 모든 권력의 행사는 정당하다는 논리도 지양되어야겠지만, 일부 좌익세력에 의한 과거 모든 국가의 권력행사는 부당하며 오늘날의 국가 권력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하는 행태 또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건전한 평화의식을 정착시켜야 하겠다. 전쟁은 평화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전쟁을 수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면죄부를 얻으려는 사고는 문제이다. 동시에 평화를 확보하는 길은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이른바 반전평화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시각도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한 요건, 정당한 절차에 입각한 전쟁은 정당화되어야 하는 것이다.¹⁴⁸⁾

셋째, 전쟁의 정당성을 고려함에 있어서, 전쟁의 주요국면별로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책결정자별 또는 전쟁의 성격이 바뀌는 단위별 또는 주요 전투 국면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전쟁은 한국의 경우, 4차 파병단계별로 약간의 성격이 바뀌어졌으며, 미국의 경우, 대통령별로 성격이 다르다. 물론 베트남의 경우도 호지명의 생전시기와 사후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전쟁기록 채집과 해석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다. 현재 전쟁에 대한 역사는 국방부의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역사적 일들을 다루어 나감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나라 전체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비교·분석해야 될 필

148)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으로는 Sartre를 꼽을 수 있다: "... ... 작가는 폭력을 선형적으로 비난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것을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그러한 수단의 범주 내에서 비난을 가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폭력을 일반적이고도 추상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폭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폭력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폭력이다. 따라서 문제는 모든 폭력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한 폭력을 비난하는 일이다." (Jean-Paul Sartre, "La Responsabilité de l'écrivain," *Les Conférences de l'UNESCO*, Fontaine, 1947, p.71, 정명환 외, 『프랑스 지식인들과 한국전쟁』, 민음사, 2004, p.114 재인용)

요성이 있다. 이때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연구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현 단계에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군사편찬위원회가 유기적인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쟁해석의 권위 확보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다양한 전쟁해석을 해야 한다. 소위 정치인들의 파병정책이나 군인들의 전투사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이외에 민간영역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베트남전쟁 연구를 다변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쟁수행원칙을 세워야 한다. 최근 이라크 파병때 한국사회는 국론분열의 양상을 보였었다. 군사적 요소를 포함하는 국가전반적인 제반요소를 고려하는 전쟁수행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1984년 11월 28일 Caspar Weinberger 국방장관은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을 통해 해외에서 위협받고 있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때 심사숙고해야 할 다음 여섯 가지의 선행조건, 즉 ‘와인버거 독트린(Weinberger Doctrine)’을 제시한 바 있다.¹⁴⁹⁾

여섯째, 군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이란 재판 등 송사에 계류될 때 확인하는 조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생활 속에서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군법도 마찬가지이다. 설령 정당성이 명확히 확보된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개개의 군인들이 전투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당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전체의 전쟁 자체까지도 매도당할 수 있다. 전투행위와 평시생활 속에서 군인이 행해야 할 규범을 적시해 놓은 것이 군법이므로, 평상시에 군인으로서 행해야 할 규범을 가르치고, 그것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일곱째, 베트남전쟁 자체를 기릴 수 있는 상징적인 기념물을 국가에서 주체가 되어 건립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를 기리기 위한 국가주체의 독자적인 기념물은 전무하다. 이 속에는 참전자 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쟁

¹⁴⁹⁾ Joseph R. Avella, "Evaluating Criteria for Use of Military Force," *Comparative Strategy*, vol.10, 1991, pp.217~240, 손규석, “미국의 대외 군사개입 결정요인 분석”, 『군사』제52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252~254 재인용: ①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 ②최후의 수단(last resort), ③명확한 정치 및 군사목표(clear political and military objective), ④분명한 승리의 의지(clear intention of winning), ⑤의회와 국민의 지지(congressional and public support), 그리고 ⑥임무의 재부여와 재평가(reassessment and revaluation)

으로 인해 발생한 민간인 피해자를 추념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포함하는 등의 이른바 ‘베트남전쟁공동체’ 라고 하는 가상공동체 개념에 따라 기획해야 할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에 이러한 논의를 한다면, 일종의 스스로의 합법성과 정체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곡해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문제가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Gillis는 “기념비는 기억보다는 망각을 유도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베트남전쟁 자체가 정당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실제 베트남참전 용사들에게 있어서 적합한 주제가 아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는 전쟁수행 중에 임무에 충실했느냐의 여부와 임무수행 중에 군법에 따른 행위를 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베트남전쟁 참전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사회문제로 전개되기 전에, 기념공동체를 건립함으로써 적어도 베트남전쟁 자체에 대한 아픈 기억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망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 과거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들이 공간화 되면서, 국가와 정부를 상대로 한 저항적 기억투쟁의 강도와 실천이 현저하게 감소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¹⁵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베트남평화포럼(가칭)”을 만드는 것도 제안해 본다.

여덟째, 베트남전에서 희생된 한국군 유해 발굴 작업을 계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비단 이 문제는 베트남전 뿐만 아니라 이후의 과병을 대비해서도 상설 운영될 필요가 있다. 베트남 한국군 유해 발굴 작업은 2003년에 처음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¹⁵¹⁾ 이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죽은 군인에 대한 예우는 산자의 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외국의 사례 등을 잘 참조하여 기구를 상설화해서 지속적인 유해발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¹⁵²⁾

150) 정호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정치·사회적 과정과 자원 동원”, 『한국사회학』 제38집 2호, 한국사회학회, 2004, p.243.

151) 『KBS 1TV』 (밤9시뉴스), 2003. 9. 26; <http://www.vietvet.co.kr/photo3/youhae01.jpg>

152) 미군에서의 유해발굴 임무는 합동포로및전시행방불명자신원확인사령부(JPAC: The Joint POW/MIA Accounting Command)에서 담당한다. 이 사령부는 2003년 11월 1일부로 창설되었는데, 기존의 미육군중앙신원감식연구소(CILHI: U.S. Army Central Identification Laboratory, Hawaii)와 합동태스크포스(Joint Task Force Full Accounting)가 통폐합되어 만들어진 것인데, 425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http://www.cilhi.army.mil>, 2005. 3. 10 검색).

아홉째,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가 추념될 수 있도록 보훈문화의 개념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 한 예로 현재 국가적 보훈업무를 가장 권위 있게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관리대상 시설물의 명칭 중에 ‘국가수호시설’의 명칭에 국한하여 볼 때, 이는 전쟁 자체가 우리 국토 내에서 일어난 것이어야 한다는 협의적 개념만을 떠올리게 한다. 오늘날의 안보는 한 나라만에 국한된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며, 더욱이 이를 위해 우리의 군대가 여러 가지 자격으로(UN 평화유지군 등) 파병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임무 수행과정에서 순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전 파병은 해외파병의 측면에서 보면 건국이후 처음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보 및 보훈 개념의 범주가 국가내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추념하기 위한 현실적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본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의 ‘국가수호시설’이라는 용어는 “국가와 임무”를 중심으로 다시 그 바탕을 재정립하여 ‘애국충혼시설’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베트남의 과제

베트남전쟁에 대한 베트남의 과제는 상대적으로 그 의무의 수준이 높지 않다. 왜냐하면 일종의 피해자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트남측의 책임이 전혀 없다거나,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베트남전쟁의 기억에 대한 진정한 승화를 위해 다음 몇 가지를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진정하게 과거를 접어두고자 한다면 자유를 찾아 자신의 나라를 떠난 자신들의 동포를 안아야 한다. 베트남전쟁 이후 국가 정비 단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육지로 바다로 자유를 찾아서 베트남을 떠났다. 이들과 화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베트남전쟁의 당사자였던 국가, 특히 한국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슬로건으로서의 “과거를 덮자”라고 하는 제의는 하나의 전략적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둘째, 베트남전쟁과정에서 주변국에 끼친 피해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호찌민루트는 베트남의 국토에서만 건설된 것이 아니었다. 인접국가들의 영토를 넘어서서 구축되었다. 이로 인해 당시 주변국들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감 내지

심리적 위축을 겪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진정한 화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베트남전쟁의 정당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신들만의 정당성을 고집하지 말아야 하며, 전쟁 자체와 전쟁상황 속에서의 정당성을 직결시키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 베트남의 위정자들은 베트남전쟁 당시 ‘민족해방전쟁’을 수행하는 자신들의 전쟁만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민족’이라고 하는 집단을 기준으로 하는 ‘해방전쟁’이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그 전쟁자체가 윤리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와는 별개이다. 더욱이 자신들이 적대시했던 ‘반공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전쟁수행자(미국, 한국 등)’의 입장이 종전 30년이 지난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사회에서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은 전쟁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당시 베트남 위정자들의 편견은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베트남 사람들은 호찌민이라고 하는 개인적 성품(청렴 등)을 기준으로 전쟁자체의 성격을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논리적인 한계가 있다. 물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지도자가 주도하는 전쟁은 도덕성이 높을 개연성이 있으며, 그 휘하 지휘관에 의해 주도되는 전투는 도덕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하나의 요인에 전체 전쟁의 성격을 좌우할 수는 없는 것이다.

6.

역사에 대한 평가는 언제 어디서나 열려져있다. 하지만 지나친 주관적 평가는 현재와 미래의 삶을 방해할 수도 있다. 오늘날 베트남 국민과 한국 국민에게 있어서 베트남전쟁의 역사와 그 기억은 양국의 교류·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해 새롭게 거듭 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한국 내에서는 베트남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보수와 진보의 대립, 참전자에 대한 엇갈린 평가, 참전자 단체 사이에 있어서의 갈등, 이 문제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된 한국내의 다른 역사적 사실(민주화운동 등)과의 관련성 등 매우 복잡한 갈등양상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베트남

내부에서는 비록 공산화에 의한 통일을 이루어냈지만 최근에 와서는 베트남전쟁 당시 전제되었던 이념인 공산주의 대신에 자유시장경제체제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절대적 경제교류의 필요성으로 인해 전쟁의 기억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접어두자”는 식으로 입장을 정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인과 한국 국민(군인 포함) 사이에서 태어난 소위 ‘라이파이한’이라고 하는 혼혈인의 문제는 양국간의 빈번한 교류과정에서 새롭게 부각된 ‘신(新)라이파이한’ 문제와 결부되면서 양국간의 새로운 국제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국가간, 국가내의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향후 양국의 발전과 양국가간의 여러 가지 갈등양상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베트남전쟁을 재평가하려고 했다. 즉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억의 파편들을 중심으로 심층적 논의를 해 보고, 거기에 합당한 재평가를 단행하고자 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전쟁에 대한 ‘문화·윤리적 접근’을 동원했는데, 이는 전쟁을 하나의 전투행위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문화적 양식으로 전제하고, 이러한 문화양식으로서의 전쟁을 윤리적으로 재평가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평가하는 고전적 척도로서의 ‘정의전쟁론’ 개념을 원용하였다.

정의전쟁론의 핵심적 특징은 전쟁자체와 전투수행의 과정을 구분하는 것과 그 각각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베트남전쟁의 기억이 베트남사회와 한국사회에 각기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를 평가했다. 여기서 베트남전쟁의 기억이 투사되는 모든 영향력의 공동체적 범주를 ‘베트남전쟁공동체’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입론으로서의 ‘전쟁자체와 전투수행간의 관련성의 정당성’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해 보았다.

베트남전쟁은 단일 이념으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매듭지어진 다른 전쟁, 예컨대 우리나라의 6·25전쟁과는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베트남전쟁에 대해 베트남인들은 ‘민족해방전쟁’이라고 했고,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연합군측은 ‘공산주의에 대항한 자유주의 수호의 이념전쟁’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각기 다른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의 전쟁에 대한 정의는 모순되기보다는 사실은 상호 공존할 수도 있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민족’이라고 하는 인종이 주된 관심사이고, 후

자는 ‘이념’이 주된 관심사로서 서로 다른 주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존할 수도 있는 성격의 전쟁에 대한 정의가 대치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를 천착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최고통치권자의 전쟁에 대한 기본 시각과 철학에서 그 논의의 출발점을 찾았다. 따라서 베트남전쟁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최초로 기획하고 개시한 최종책임자의 기본적인 입장을 조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논점을 흐리게 할 수 있어서 이 문제에 많은 할애를 하지는 않았다. 이 문제는 ‘전쟁자체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다루었다.

이와 같은 전쟁자체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요한 문제는 ‘전쟁수행과정에 있어서의 정당성’이다. 이는 실제 전투행위를 함에 있어 각종 규범에 얼마나 근거하고 있느냐의 사안이다. 그 전형이 베트남전쟁 기간 중의 ‘민간인 피살’의 문제이다. 특히 고의적이었느냐가 윤리적 쟁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군인은 궁극적으로 싸움꾼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전쟁의 임무를 수행하는 평화의 사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시규칙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베트남전쟁의 기억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한 몇 가지의 접근모델과 그에 의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접근모델로는, ①공유문화적 모델, ②보편문화적 모델, ③실용문화적 모델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세부 실천과제는 한국과 베트남의 역할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의 과제로는, ①국가의 권위 확보노력, ②건전한 평화의식 정착, ③전쟁의 주요 국면별 구분 평가, ④전쟁기록 채집과 전쟁해석에 대한 권위 확보, ⑤전쟁수행원칙 수립, ⑥군법교육 강화, ⑦국가주도의 베트남전쟁 기념물 건립, ⑧베트남전 한국군 유해 발굴 지속, 그리고 ⑨보훈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다. 한편 베트남의 과제로는, ①베트남 난민에 대한 포용, ②베트남전쟁으로 인한 주변국 피해 정리, 그리고 ③베트남전쟁 자체에 대한 정당성 재평가 등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전쟁의 기억은 재조명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반성의 형태이나 추념의 형태이나는 차후의 문제이다. 한국에게 있어서 베트남전쟁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요청을 받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국민들의 여론(=국회)의 수렴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한국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의 베트남 파병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과정의 진행방식은 거의 동일하지만 파병규모와 부대의 특성, 그리고 임무 등이 다소 차이가 있었으므로 베트남전쟁이라고 하는 단일 명제 속에 한꺼번에 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베트남에게 있어서 베트남전쟁도 전쟁자체의 정당성 측면에서 볼 때 정당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양자를 비교해 보면, 국민 개개인의 의견에 기준해 볼 때, 한국의 전쟁개입이 더 정당했다고 본다. 이렇듯 한국내의 소위 ‘명분없는 전쟁’의 주장은 범주를 다르게 설정함으로 해서 빚어진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설령 베트남전쟁이 명분 없는 전쟁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평가에 대한 책임은 국가를 상대로 물을 수 있는 것이지, 전투에 참가한 군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즉 전쟁자체가 정당했는가의 책임은 이를 결정한 최고책임자나 심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물어야 한다. 규정된 교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적국의 민간인을 살해했다거나 무단으로 기물 등을 파손했을 경우 군법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전투행위를 한 군인들의 임무수행 정신과 그들의 고귀한 희생은 국가의 이름으로 추념되어야 마땅하다. 만약 국가가 그들의 희생과 기억을 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전쟁과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 전쟁과 직·간접으로 인연을 맺은 모든 구성원들을 기념할 수 있는 기억의 공동체는 구축되어야 한다. ‘끝’

- 참 고 문 헌 -

1.

『경향신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2』, 대한공론사, 1973.

『부산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연합뉴스』

『월간 조선』

『중앙일보』

『한겨레21』

『한겨레신문』

『KBS 1TV』 (밤9시뉴스), 2003. 9. 26

2.

국방군사연구소, 『남베트남파병과 국가발전』, 19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004. 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 연구 총서1』, 200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파월한국군전사1상』, 1978.

- 국방부, “남베트남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증파에 관한 동의요청”,
『베트남관련 사료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66
- 권귀숙, “기억의 재구성 과정: 후체험 세대의 4·3”,
『한국사회학』 38(1), 한국사회학회, 2004, pp.107~130.
- 권귀숙, “제주 4·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회학』 35(5), 한국사회학회, 2001, pp.199~231.
- 김기태, 『전환기의 베트남』, 조명문화사, 2002, pp.189~190 재인용.
- 김성철, 『베트남 대외경제개방 연구: 북한에 주는 합의』, 통일연구원, 2000
- 김용옥, 『앙코르 와트·남베트남 가다(上)』, 통나무, 2005
- 김종수, “호찌민과 보응웬지압의 전략전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 연구 총서』 2, 2003
- 김진선, 『산 자의 전쟁, 죽은 자의 전쟁』, 중앙 M&B, 2000.
- 김찬규, “전쟁법상의 새로운 개념”, 『경희법학』, 19(1), 경희대학교, 1984
- 김한식, 『동남아 정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모시는 사람들, 2004.
- 김현아, 『전쟁과 여성』, 여름언덕, 2004.
- 김현아,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책갈피, 2002
- 대한민국주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사관
대한민국주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명예 총영사관,
『베트남: 베트남-한국 수교 10주년 기념(1992~2002)』, 2002
- 류제현, 『남베트남전쟁』, 한원, 1992
- 문송희, “남베트남참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한 합리적 처리 방안”,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논문, 1999.
- 박효중, 『국가와 권위』, 박영사, 2001
- 배상현 외, “이용자의 참여 동기가 가상공동체 의식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경영연구』, 38(2) 통권제73호, 2001 가을.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 당신들에게 사과합니다!』, 2000. 8.

- 서경석, 『전장감각』, 샘터, 1999.
- 서경석, 『전투감각』, 샘터, 1991.
- 손규석, “미국의 대외 군사개입 결정요인 분석”,
『군사』 제52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신중호, “한국군의 남베트남참전과 한국에 미친 영향”,
육군제3사관학교 충성대연구소, 2000.
- 심주형,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기억의 정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아우구스티누스, 성염 역, 『신국론:1~10; 11~18; 19~22』, 분도출판사, 2004.
- 오윤호, “한국 영화와 내면화된 전쟁문화”, 한국문화사학회,
『역사와 문화9』, 푸른역사, 2004.
-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도서출판 이산, 2003.
- 이동원, 『대통령을 기리며』, 고려원, 1992.
- 이미숙, “베트남 전쟁시 한국군의 철수결정과정”,
『군사』 제45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이용준, 『베트남, 잊혀진 전쟁의 상흔을 찾아서』, 조선일보사, 2003.
- 이재원, “문화적 행위를 통한 반전운동”, 한국문화사학회,
『역사와 문화9』, 푸른 역사, 2004.
- 이훈섭, 『그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샘터, 1993.
- 임익문, “임익문의 시와 시론: 함성과 존재의 이중주”,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임지현, 『일상적 파시즘의 코드 읽기,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2000.
전후인로안(Tran Huu Yen Loan),
“베트남 홍강델타 지역의 ‘종호’ 제도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전상인, 『고개숙인 수정주의』, 전통과현대, 2001.
- 전우신문사, 『남베트남전과 고엽제 上』, 1997.

- 정명환 외, 『프랑스 지식인들과 한국전쟁』, 민음사, 2004.
- 정영규, 『동남아시아 경제의 이해』, 다해, 2003.
- 정영규, 『동남아시아 사회와 문화』, 을곡출판사, 2003.
- 정호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정치·사회적 과정과 자원 동원”,
『한국사회학』, 제38집 2호, 한국사회학회, 2004.
- 최동주,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동기에 관한 재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0(2), 1996.
- 최문규 외, 『기억과 망각: 문학과 문화학의 교차점』, 책세상, 2003.
- 최승호, “라이파이한의 노래”, 김우영,
『라이파이한』, 푸른사상, 2002, pp.132~133.
- 최용호,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 최용호,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 최용호,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최호림, “베트남의 의례활성화와 국가-사회관계: 하노이의 한 프엉(坊)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허만선, 『베트남 그 머나 먼 전선』, 21세기군사연구소, 2000.
- 허의도, “남베트남 전쟁 실종자를 찾아서”, 『월간 중앙』, 6월호, 1994.

3. ()

- Anderson, Benjamin,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나남, 2002[1983].
- Avella, Joseph R., "Evaluating Criteria for Use of Military Force,"
Comparative Strategy, vol.10, 1991.

- Ballingrud, David, "It didn't happen ... like that,"
New York Times, 18 June 1998.
- Beresford, Melanie, *Vietnam: Politics, Economic Development in Vietnam*,
 London: Macmillan, 1988.
- Bowen, Clay & Robert Gard, "Poison Gas Use by U.S.? Not Likely,"
New York Newsday, 22 June, 1998.
- Brandt, Richard, "Utilitarianism and the Rules of War," In *War, Morality and the Military Profession*, 1st edition, ed., Malham Wakin, Boulder: Westview Press, 1979.
- Burke, Peter, "History as Social Memory," in Thomas Butler, ed.,
Memory: History, Culture and the Mind, New York: Basil Blackwell, 1989, pp.77~96.
- Childress, James, "Just War Theories: The Bases, Interrelations, Priorities and Functions of their Criteria" , In *War Morality and the Military Profession*, 2nd edition, ed., Malham Wakin, Boulder: Westview Press, 1986.
- Christopher, Paul, *The Ethics of War and Peace: An Introduction to Legal and Moral Issues*, third edition, N.J.: Pearson Education, Inc., 2004[1994].
- Coates, Anthony J., "The New World Order and the Ethics of War," In *The Ethical Dimensions of Global Change*, ed., Barry Holden, London: Macmillan, 1997.
- Cohen, Anthony P., *The Symbolic Construction of Community*, London & N.Y.: Routledge, 1985.
- Fentress, James & Chris Wichham, *Social Memor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2.
- Fforde, Adam, *The Agrarian Question in North Vietnam:*

- 1974~1979, Armonk, NY: An East Gate Book, 1989.
- Finnis, John, "The Ethics of War and Peace in the Catholic Natural Law Tradition" , In *the Ethics of War and Peace: Religious and Secular Perspective*, ed., Terry Nardi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 Fotion, Nicholas, "전쟁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평화주의, 현실주의, 정의전쟁론" , Andrew Valls 편, 박균열 외역, 『국제정치에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 철학과현실사, 2004.
- Fotion, Nick, "A Utilitarian Defense of Just War Theory," *Synthesis Philosophica* 23, 1997, pp.209~225.
- Frances V. Harbour, "제4장. 정의전쟁의 전통과 베트남전에서의 '비치명적 화학무기' 의 사용" , Andrew Valls 편, 박균열 외역, 『국제정치에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 철학과현실사, 2004.
- Gamson, William, "Hiroshima, the Holocaust, and the Politics of Exclu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0, 1995, pp.1~20.
- Hagel III, J. & A. Armstrong, *Net Gai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7.
- Halbwachs, Maurice, *The Collective Memory*,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80.
- Harbour, Frances V., "정의전쟁의 전통과 베트남전에서의 '비치명적 화학무기' 의 사용" , Andrew Valls 편, 박균열 외역, 『국제정치에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 철학과현실사, 2004.
- Harbour, Frances V., *Thinking about International Ethics: Moral Theory and American Foreign Policy*, Boulder: Westview Press, 1999.
- Hare, R. M., "Can I be Blamed for Obeying Orders?" In *War, Morality and the Military Profession*, 1st edition, ed.,

- Malham Wakin, Boulder: Westview Press, 1979.
- Hirsh, Herbert, *Genocide and the Politics of Memory*,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 Johnson, James Turner, *Just War Tradition and the Restraint of War:
A Moral and Historical Inqui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 Keegan, John, 유병진 역, 『세계전쟁사』 [A History of Warfare], 까치, 1996.
- Kelman, Herbert and Lee Hamilton, *Crimes of Obedienc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9.
- Kerkvliet, Benedict, "Village-State relations in Vietnam: the Effect of
Everyday Politics on De-collectivizatio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54(2), 1995.
- Maclear, Michael, 유경찬 역, 베트남: 10,000일의 전쟁, 을유문화사, 2003.
- Neale, Jonathan, 정병선 역, 『미국의 베트남 전쟁: 미국은 어떻게 베트남에서
패배했는가』, 책갈피, 2004.
- Ngo Vinh Long, "Reform and Rural Development: Impact on Class, Sectoral,
and Regional Inequalities," William S. Turley and Mark
Selden, eds., *Reinventing Vietnamese Socialism*, Boulder:
Westview Press, 1993.
- O'Brien, William V., *The Conduct of Just and Limited War*,
N.Y.: Praeger, 1981.
- Pagden, Anthony and Jeremy Lawrance, eds., *Vitoria-Political Writings*,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1539].
- Popular Memory Group, "Popular Memory: Theory, Politics, Method," in
Richard Johnson, Gregor McLennan, Bill Schwarz & David
Sutton, eds., *Making Histories: Studies in History-writing
and Politics*, Hutchinson: University of Birmingham, 1982,

pp.205~252.

Porter, Gareth, *Vietnam: The Politics of Bureaucratic Soci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riest, Dana, "Pentagon Debunks Poison Gas Report: Probe Finds 'No Hint' of Mission to Kill Defectors," *Washington Post*, 22 July 1998.

Rawls, John, "The Law of Peoples" , In *On Human Rights: The Oxford Amnesty Lectures 1993*, eds., Stephen Shute and Susan Hurley, N.Y.: Basic Books, 1993.

Rheingold, H., "A Slice of Life in My Virtual Community," at <http://www.communities.com/paper/settlement.html>.

Sartre, Jean-Paul, "La Responsabilité de l'écrivain," *Les Conférences de l'UNESCO*, Fontaine, 1947.

Stoessinger, John G., 김종구 · 채한국 역, 『전쟁의 원인』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8.

Suarez, Francisco, "A Work on the Three Theological Virtues Faith, Hope and Charity" [De Triplici Virtute Theologicae Fede, Speet Charitate], In *Selections from Three Works of Francisco Suarez*, vol.2, ed., John B. Scott, Oxford: Clarendon Press, 1944[1621].

Summers, Harry G. Jr., 민평식 역, 『미국의 남베트남전 전략』 [On Strategy: The Vietnam War in Context], 병학사, 1983[1982].

U.S. Catholic Bishops, "The Just War and Non-Violent Positions," In *War, Morality and the Military Profession*, 2nd edition, ed., Malham Wakin, Boulder: Westview Press, 1986.

Valls, Andrew, "테러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Andrew Valls 편, 박균열 외역,

- 『국제정치에 윤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철학과현실사, 2004.
- van Peurson, C.A., 강영안 역,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
[Cultuur in Stroomversnelling], 서광사, 1994.
- Walzer, Michael, *Just and Unjust Wars: A Moral Argument with Historical illustrations*, 2nd edition, N.Y.: Basic Books, 1992[1979].
- White, Christine Pelzer, "Agricultural Planning, Pricing Policy and Cooperative in Vietnam," *World Development*, vol.13(1), 1985.
- Zimmermann, Ekkart, "On the Outcomes of Revolutions: Some Preliminary Considerations," *Sociological Theory*, vol.8(1), Spring 1990.

4.

- Chinh sach ngoai giao cua Viet Nam*[베트남 외교정책],
Bo Ngoai giao[외교부], 1992~1996.
- Van kien Dai Hoi VIII Dang cong san Viet Nam*[베트남공산당 제8기 대회문서],
NXB su that Ha Noi[하노이사실출판사], 1996.

5.

- <http://bbs.yonhapnews.co.kr>
<http://narasarang.mpva.go.kr>
<http://www.cilhi.army.mil>
<http://www.kinds.or.kr>

http://www.mnd.go.kr:8088/html/memorial_html/memorial.html,

<http://www.Mpi.Gov.vn>

<http://www.vietvet.co.kr>

<http://www.vietvet.co.kr/photo3/youhae01.jpg>

<http://kosvet.price.co.kr>

<http://narasarang.mpva.go.kr>

<http://www.hani.co.kr>

<http://www.pvaa.go.kr>

베트남전쟁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

신 은 영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동아시아여성정치연구소 소장

1. 서 론
2. 여성동원의 이유와 과정
3. 베트남전쟁에서 여성의 역할과 영향
4. 여성의 전쟁참여가 전후 여성의 지위에 미친 영향 연구
5. 결 론

1.

가.

100 가 , 1000
가 가 . 가 가

,

1965

1975

.

,

.

.

가

. 가 2

가

가

‘ ,

2

.

.

가

. 2

()

.

.

?

.

가 2

3

4

5

.

·

· ·

·

·

가 가

가

·

·

가 가

가

가 가

·

1993

가

가

1990

가

(Sandra C. Taylo

r) *Vietnamese Women at War*

(Karen Gottschang Turn

er) *Even the Women Must Fight* ·

·

·

·

·

· 가

가

‘ (volunteer) ’

가

50

60

·

가.

1) 전면전

(Pham Van Dong)

가

가

2,000

가

‘ ! ’
2002, p.434).

(,

가

1954

(Ngo Dinh Diem)

1954

10

1965

가 .

가 .

1966 ‘ 가 ’

2~3

1965 1968 가 7

1969 1971

가 1972

10

(, 2002, p.549)

1972 2 8

가 4,000 , 8,350 , 4,550

1

가

200 가 80%

가 100%

2,195km

가 70%가 (Tur

ner, 1998, pp.34~35).

2) 호찌민 루트

가 가

가

(Phan Trong Tue) 1965

559

가

1965 가 가 (Hong Gai) (Vinh) 3
(Da Nang) 가 .

1965 10 30 가
(Turner, 1998, p.102). 가

1965 3 6,000
, 1966 9 .

. 가 (Ha Van Lau)

가 1 3 km . ,

. 13 . 1959 가 .(
, 2002, p.314).

가 . 1965 (Quang Binh)

(Tay Ninh) km .

가

7

17

11

. km
 9 2 가 가
 1m
 , ,
 (, 2002, pp.315~316).
 1965 4 1966 10 가 가
 가 .
 . 1965
 . 128 80%가
 (Turner, 1998, p.103).
 . 20 7 , ,
 .
 .
 1968 1 5 7
 (Nguyen Thi Nha) 5
 . 20 85km 20
 (Turner, 2002, pp.106~107).
 1966 ,
 17 20 가 13
 . , AK47 가
 ,
 .
 (Le Trong Tam) .

1965

가
(Turner, 2002, pp.120).

가

가

가 .”

1) 여성동원과정

가)

1930

” . 2

8

8

1945 8 16

“

,
 ,
 .
 .
 .
 가
 : , , 가
 .
 .
 1966 가
 .
 .
 .
 . 가 (Ut Tich) ‘
 ,
 .
 가
 “ 가 ”
 (Turner, 1998, pp.37).

)
 .
 .
 (Hai Ba Trung:)
 가
 .
 (Trieu) 18
 (Tay Son) (Bui Thi Xuan)
 .
 가
 .
 ‘ , ‘ ,
 가
 .
 가 가
 (Ngu yen Thi Minh Khai) (Nguyen Thi Nghia) .
 1941 7 21
 가 5 가
 1944 11 , 34 가 3
 .
 가 (Ha Thi Que)
 (secure zone) 가
 20%가 . 1945 가
 .
 (Taylor, 1999, pp.26~27).
 (Viet Minh) 가

.
 .
 ‘ ,
 1954 5 7 1952
 가 840,000 , 140,0
 00 .
 가 70% .
 100 (Taylor, 1999, p.31).
 60 (Ben Tre) (Dinh
 Thuy)
 . , ,
 .
 ‘ ,
 ,
 .
 가
 (Nguyen Thi Dinh, 1968, pp. 11~2
 5).
 1945 1975
 “
 ”
 .
 (Ut Tich), (Nguyen Thi Binh), (Nguyen
 Thi Dinh)
 (Tra Binh) (Tam Ngay) 가 가
 (Nguyen Thi Ut Tich) 가
 . 1945 8

가 15

7

. 1954

가

6

가

. 1965

가

가 .

30

120kg

(Taylor, 1999, pp.10~12).

1968

(Ngyen Thi Dinh)

가

10

가

1940

6

1943

1945

. 1946

가

가

(Nguyen Thi Dinh,

1968, pp.30~43).

1965 1 21

5

41 337

“

”

1966 1 16

50 , 100

.(Ho Chi Minh, Nha Xuat Ban The Gioi, 2002).

2) 자원동기

“

가

”

가

가

가

가 . 가 .

가 가 가 ().

,

.

가 .

1965 .

.

.

.

.

가 , 가

,

,

.

가

1967 가 '38 ,

.

가 V .

.

가

,

,

가

V (Turner, 1998, pp.85~87).

가 가

.

가

가 가

. 1965 1972

().

가 가

가

가

가 1948

가 4 . 1968

가 가 가 4

가

가

(Turner, 1998, p.16).

가

B - 52 가 1972 4 7

1972 6 22 . 6 가

가

가 가

가 가

(Turner, 1998, p.88).

가

10

가

3.

가

(Huong Khue)
(Nguyen Thi Kim Lai) 17 22 (William
Robinson) 1972 가 (Hoa Lo)

1930

34

3

1944

8km

(Karnow, 1991, p.158).

가. 1954 (Dien Bien Phu) 1953

가

가

가

가

가.

1961 2

가 1965

(Taylor, 1999, p.37).

1930

1930 1936

1939 , 1941 1 11 20

가 . 1975 가
가 . 1950 , 1956 1961 , 1966
, 가
(Taylor, 1999, pp.112~113).
가
, , 가
. , 가
. , 가,
14 가
(,) 6
가 . 30%가
30% . (Yen Bai)
가 50% (Turner, 1998, p.36).
. 10 가 가
가 ,
. (Nguyen Thi Dinh) 10
(Nguyen, 1968, p.10).
가
. 가

(Vo Thi Mo) (An
Giang) (Hue)

(Trullinger, 1980, pp.102~103).

55kg
1,620
(Thua Thien) (Pako)
(Kan Lich)
가
“ ”
1969
1997

(Thua Thien)
(Hue) 2.5km
가 가
가
(Tran Thu Ha) 가 1968
가
(Taylor, 1999, pp.78~79).
가

(LeThi Vit) 1945 8 가 1949 .
 (Viet Minh) 가 .
 .
 “ 가
 ” .
 가 .
 50%, 12%
 3가 . ,
 , , ,
 . 가 가
 , , (Deepe,
 1968).

. 1968 5
 .
 40kg 가
 (Da Lat) 가
 가 3

(Deepe, 1968)
 (Kim Cuc) 1965 1975 10
 .
 . 가
 가 .
 .
 3 . 2~3 가
 가

가 4 30

가 가

가 6 가

10

가 ()

1968

1968

(Hue) 25 5 가

1968 1 31 2 30 100

4,000

가

1 8 가 가 가

(Hue)

5,000

24

7,000 가

13 가

가 , 5 가

가

가

가 .

10 (, 2002, pp.359~363).

1970 가 .

5 3 (Lam Dong)

. 가 (Hoang Thi Khanh)

. (Khanh)

가 1967

. 가

. 가

. 80%가

. “ 가 ”

. 1969 (Con Dao)

. 가 가

. (Khanh) 1995

(Taylor, 1999, pp.84~85).

. (Thieu Thi Tam) (Thieu Thi Tao) 10

. (Tam) 10 1964

. CIA가

가 . 가

(Con Dao) 15

가 10

(Emmerson, 1986, pp.344~346).

. 8km (Cu Chi)
 가
 . 가
 . 가
 . 가
 , , , .
 .
 (Cu Chi) 가 . C-3
 1965 10 (Tran Thi Dung) .
 ,
 . (Vo Thi Mo) 11
 3 가
 15 .
 . (Mo)가
 (Nguyen Thi
 Binh) 가 3
 . 1970 2 5 ‘
 ,
 (Penycate et al, 1986, pp
 .229~236).

反

가

가

가

가 (Nguyen Quoc Dung) , 가 150
 , 가 가 6 , ,
 가 (thanh nien
 xung phong) 1965 1975 14
 가 ,
 ,
 100 (Turner,
 1999, pp.20~21).
 17 .
 (thanh nien xung phong)
 1965 가
 가 17
 (Dong Loc) 17 10
 가
 . 1968 7 24
 “ ” (Mai, 1978, p.270).
 1965 “ 가 (ba dam dang : 三擔
 當) ” . 3가 , , 가 ,
 () .
 가 5 7 .
 , , , .
 (Mai, 1978, p.258).
 가 .

, AK
 (Mai, 1978, p.325; , 2002, p.430).

. 가
 (Thai Binh) (Duong Lieu)
 ‘ ’ 1925 16 1931
 . 가 1951 .
 1952 . 가
 . 1950 1967 17
 가 가 1978
 .
 .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Bui Thi Mit , 2002 12 20).
 1994
 .
 1969
 .
 가
 .
 33%
 . , 60~80%가
 (Turner, 1998, p.117).

3 가 1964 ,
 . CIA가
 T - 28 . 300
 (, 2002, p.318).
 1967 가 9
 .
 가 . 100
 300 1 .
 14 3,000 .
 15 , 가 17 1,000
 . 1 1 (, 2002, pp.321~325).
 가 , ‘ Duan 559’
 2 5,000 .
 B - 52 ,
 . 1
 . 1
 가 .
 .
 . (, 2002, p.322).
 (Thanh Hoa) (Ngo Thi Tuyen) 1965 4 , 1
 98kg . 4 3 4
 가 . 1967 1 1
 “ ” (Turner, 1998, pp.52~55).
 (Nguyen Thuy Mau)

1966 7
가 15 17 15 17
(Thanh Hoa)
(76)
200 가
15 20 15km
가 (Quang Binh)
가
가 가
(AK47) 가
가
(96)
“ , ,
가
가 ”(Turner, 1998, p.103).

(Le Thi
Linh)
1968 가 가
가 가
18 500
(Hue) 3
2 5

가

가

가

(Turner, 1998, pp.120~121).

(Vu Thi

Kiem)

가

가

가 (Le Ming Khue)

가

(Karlin, 1995, pp.98~99).

1966 1 ,

7

7

가

가

가

339

(Nguyen

Thi Mai)

5

12

(Turner, 1998, pp.112~113).

가

軍史 가

(Nguyen Quoc Dung)

가

가 6

(Tran Van Tho)

“

가

”

가

4.

가.

1973 1 23 가
 1 27 0 .
 (, 2002, p.553).
 10 350 30 400
 가 70 ‘ ,
 . 17 18
 .
 가
 .
 10 . , ,
 ‘ , .
 가 1968 20
 (Nguyen Thi Nha) . 1968
 . (Dong Loc)
 가 55 10 1968 10
 (Turner, 1998, p.151).
 50 60
 가 .
 가
 . 가 가
 .
 가
 가 (Nguyen Thi Ha)

1) 30,000 .
3 5 가

가 5 10 3 4가 -가

? 가
가

가
(Nguyen Phu Binh)

1) 가 4가

30 . 가

‘ 가 .

(『 』 1996 5).

가

가 .

가

“ 가 ”

.

,

(Long Thi Phoi)

가 .

가 . 가 .

.

.

가

? 「 」, 「

」, 「 」, 「 가 」

.

. 가

. 가

.

가 .

?(, 2002, pp.149~158).

가

가 .

가 , .

가

. 10 가

가 , ,

.

가 , 가

가 가

가 . (Vinh Phu) T

.

가 1984 가

가

(Nguyen Thanh Tam, p.88).

가

(Thai Binh)

30 85 가 21 .

가

가

가 1986

가

(Turner, 1998,

pp.19~16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Tur

ner, 1998, p.76, p.157).

가

가

가

가

60

가

1

가

.

.

,

?

가 .
가

().

가

. 가

가

1945

가 2

(Taylor, 1999, p.114).

,

.

,

가

가

.

가. 여성해방의 유토피아

1954

.

가

가

- 1945 . 1945
- 1945 가
- 가 가 .
- 가가 2 10
- 가 가 . 10 15
- 가가 가
- 15 (Le So) 가
- (Hong Duc)
- 가 (, 1997, pp.25~50). 가
- 가
- 16 17 (Le Trung Hung)
- 가
- (Dao Mau: Lieu Hanh)가 가
- (Thanh Hoang)

18~19 , (Nguyen) 가 .

(Gia Long) ,

(Hong Duc)

가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Dang Thi Van Chi, 2004, pp.29~33).

가

가

가

1986 12,730 , 1,001 ,

96 48%,

45%, 47% 56%, 27.4% (Tran

Han Giang, 2001, p.22).

가

가

가

(Nguyen Sinh Cuc, 1996).

가

.

가

.

.

(Turner,

1998, pp.19~20).

10

가

. 가

12.7mm

가

.

가

1994

52.5%

1998 50% (Tran Thi Van Anh et al, 2000, p.95).

나. 여성성의 부각

,

가

가

(Turner, 1998, p.36).

가

가

.

.

가

가
(Turner, 1998, p.96).

?

18

24

가
가 (Turner, 1998, p.122).

(Ha Lap)

1968, pp.96~99).

가 가

“
”
(Nguyen Thi Dinh,

가 . (Le Thi Quy)

15

省 , 郡 , 省 , 省 , ,

省, 郡 , , ,

가

가 社() 坊() , ,

.

가 , 가.

가

(Le Thi Quy, 2001, p.20).

(Daniel Goodkind)

가 가 . (Xa)

가 1974 3,000 1976 1,400 , 1979

800 . 1975

.

“3가 ”

가

1965 22.8%,

20.8%, 16.5% 1972 34.8%, 40%,

49% . 가 1980

“ 가 , , ,

”

1993 7 12 , “ ,
 ... 가 ,

 , . 가
 ” .

1994 人民軍隊 .
 .
 ,
 .
 ,
 .
 .
 (Quan Doi Nhan Dan, 02 - 05 - 1994).

1987 17.7% 가 가 1992 18.9%
 가
 가
 1994 TU/CT - 37
 . 가
 ,
 ,
 ,
 . 가 .
 ”
 “
 . ” (, 2004, p.6).

< 1>

	(代)			(%)
1946~1960		403	11	2.7
1960~1964		453	53	11.7
1964~1971		453	66	14.6
1971~1975		420	126	29.8
1975~1976		424	137	32.3
1976~1981		492	132	26.83
1981~1986		496	108	21.77
1986~1992		496	88	17.8
1992~1997		395	73	18.5
1997~2002		450	118	26.22
2002~2007	XI	498	136	27.3

:

< 2> (%)

	1985~1989	1989~1994	1994~1999	1999~2004
,	26.6	11	20.4	22.5
,	20	13	18.1	20.7
(社), (坊)	19.7	13.2	14.4	16.6

:

< 3> (%)

	1986		1991		1996		2001	
가	0	0	1	16.9	1	100	1	100
	3	4.8	4	9.52	5	11.91	5	11.91

가 . 2001 2002
가 “
” 86.7%, 82%가
“ ”

가
.
가 (29.7%, 37.9%)

1 13 , ,
56.8%, 54.1% .
“
가 가” ,
88.2% ,
(3.6%) (8.2%) .
가
가 가 가
가가 . 가
 ,
가 .

< 5> 가 (, %)

	가			
	32(9.8)	21(6.4)	274(83.8)	0(0.0)
	69(22.9)	146(48.5)	81(26.9)	5(1.7)

가 ? ”)

(

, 2004, p.18).

< 7> (, %)

	2(0.6)	12(3.6)	315(95.5)	1(0.3)	25(7.6)	18(5.5)	287(87)	0(0.0)
	29(9.5)	1(6.9)	244(80)	11(3.6)	43(14.1)	35(11.4)	218(71.2)	10(3.3)

가

가 가 가 가

5.

가

10

”

“

,

가 .

가 .

가 .

1954 5 6 1952

가 840,000 , 140,000

1954 가 가

가

가

가

가

50% .

가 3가

가 , ,

가 가

가 .

가 .

가 .

가 .

가 .

- 참 고 문 헌 -

1.

Deepe, Beverly, "Political Spearhead Role? Women build Viet Cong,"
Christian Science Monitor, 4th May 1968.

Emmerson, Gloria(1986),
*Winners and Losers: Battles, Retreats, Gains, Losses, and
Ruins from the Vietnam War* (New York: Penguin).

Goodkind, Daniel(1995), "Rising Gender Inequality in Vietnam since
Reunification" *Pacific Affairs*, pp. 342~359.

Karlin, Wayne, Le Minh Khue and Truong Vu(1995),
*The Other Side of Heaven: Post - War Fiction by Vietnamese
and American Writers* (Willimantic, CT: Curbstone Press).

Karnow, Stanley(1991), *Vietnam: A History* (New York: Penguin Press).
Le Thi Quy, "Domestic Violence in Vietnam and Efforts to
Curb it," Kathleen Barry(ed)(1996), *Vietnam's Women in
Tradi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pp. 263~274.

Mai Thi Tu and Le Thi Nham Tuyet(1978),
Women of Vietnam (Hanoi: Foreign Languages)

Nguyen Sinh Cuc & Nguyen Van Tiem(1996)
Nua The ky Phat trien Nong nghiep Nong thon Viet Nam
1945~1995
(, 1945~1995)
(Hanoi: Nha Xuat Ban Nong Nghiep).

Nguyen Thanh Tam, "Remarks on Women who Live without Husbands,"
Kathleen Barry(ed)(1996), *Vietnam's Women in Tradi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pp. 87~92.

Nhan Dan, ngày 6, tháng 3, 1966.

Penycate, John and Tom Mangold(1986),

The Tunnels of Cu Chi(New York: Berkeley)

Shay, Jonathan(1994), *Achilles in Vietnam: Combat Trauma and the Undoing of Character* (New York: Touchstone).

Taylor, Sandra C.(1999), *Vietnamese Women at War:*

Fighting for Ho Chi Minh and the Revolution,

(Kansas: University Press of Kansas).

Tran Han Giang(2001), "

"

(Khoa Hoc Phu Nu) vol 47, pp. 19~29.

Tran Thi Que(1995), "Gender Issues in Vietnam's Development,"

Irene Norlund, Carolyn L. Gates and Vu Cao Dam, *Vietnam in a Changing World* (London: Curzon Press), pp. 187~206.

Trullinger, James Walker(1980), *Village at War:*

An Account of Revolution in Vietnam(New York: Longman).

Turner, Karen Gottschang(1998), *Even the Women Must Fight: Memories of War from North Vietnam*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2.

(2002), 『 (:) 』.

(Dang Thi Van Chi), “ 가 : ”

, ”

,

2004 1 6 .
 (2002), 『 10,000 』, (:).
 (2000), 『 』, (), (:).
 , “ 가 , ” ,
 2004 1 6 .
 『 』 5 .
 (Nguyen Thi Bich Ha), “ 1996 1945 20 ”
 ,
 2004 1 6 .
 (1996), “ ”
 『 』 150 , pp. 215~248.
 (2002), 『 』 (:).

베트남전쟁시 중국의 북베트남 지원과 양국관계, 1950~1975

이 한 우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책임연구원

- < >
1. 서 론
 2. 제1차 베트남전쟁시(1946~1954) 북베트남·중국관계
 3. 1955~1964년간 북베트남·중국관계
 4. 제2차 베트남전쟁시 중국의 북베트남지원
 5. 결론

1.

가.

“ (唇齒關係) ”

1,000

1949 10 30 200 1950 2 30 가 . , 1946 1954 1 가 , 1954 (Dien Bien Phu) 가 . 17 2 가 “ ” 2 1979

가 , 가

.

.

,

.1)

-

.

(2003)

.2)

.

,

(Qiang Zhai) *China and the Vietnam*

Wars, 1950~1975 朱建榮 『毛澤東のベトナム戦争: 中国外交の大轉換と文化大革命の起源』

.

.

,

.

(1946~1975)

-

,

,

.

(Ang Cheng Guan)

Vietnamese Communists'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Second Indochina

1)

Xiaoming Zhang, "Communist Powers Divided: China, the Soviet, and the Vietnam War," Lloyd C. Gardner & Ted Gittinger (ed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Vietnam*(College Station: Texas A & M University Press, 2000)

2)

, “ - : , ” 『 』 (), 44 (2003).

*Conflict, 1956~1962*가 ,
 1960 .
 1980 1990
 가 .3) (郭明) 『中越
 關係演變四十年』(1992) , 郭明 外 編, 『現代中
 越關係資料選編』(1986) 1949~1978 1
 .
 ,
 (陳賡) 『陳賡日記』 1982, 1984 , 中國軍事顧
 問團歷史編寫組가 『中國軍事顧問團援越抗法鬭爭史實』(1990)
 .
 1960, 70 1980 , 1990
 가 , 王賢根 『援越抗美實錄』(1990)
 , 李可・郝生章 『文化大革命中的人民解放軍』
 (1989) . 曲愛國・
 鮑明榮・肖祖躍 編, 『援越抗美 - 中國支援部隊在越南』(1995)
 .
 ,
 가 -
 , 李丹慧 編, 『中國與印度支那戰爭』
 (2000) . , 肖祖厚・李丹慧 主編, 『雲南與援越抗美(檔案文獻)』
 (2004) (省) (檔案館)

(Hoang Van Hoan)

(Bui Tin)

3) , 朱建榮, “中國における冷戰史研究の動向 - ベトナム戦争を中心に - ,” 『歴史評論』, No.627(2002., p.7) .

가 ,
.
(Le
Duan) 1 1979 7 ,
“越中
戰鬥友誼的事實不容歪曲”(1979) . 1978~1979 ,
1979 『30 』
『滄海一粟』
(1987)
가
『 (Nhan Dan.) 가
, ,
20
가 가 ,
(Ban Chi dao Tong ket Chien tranh Truc thuoc
Bo chinh tri)가 1995 Tong ket Cuoc khang chien chong My, Cuu nuoc: Thang
loi va Bai hoc(:) 2000 Chien tranh Cach
mang Viet Nam 1945~1975: Thang loi va Bai hoc(1945~1975:
) (Bo Quoc phong, Vien Lich su Quan su Viet Nam)가
1996 6 , Lich su Khang chien chong My Cuu
nuoc 1954~1975(1954~1975) 가

(Vo Nguyen Giap)

.

1949

1975

.

1965~1975 , 1946

1975

.4) 1946~1954

1

1965~1975

2

2

.

.

, 1949

,

,

가

.

,

1960

,

가

.

, 1968

“

”

-

,

.

.

,

,

.

4) 1946~1954

가

1965~1975

가

.

1

,

2

.

1

,

2

“

”

가 19

,

,

가 “

”

,

.

“

” , ,

.

“

”

1965~1975

, 1, 2

가

,

(戰場)

1946~1975

“

”

.

가

2. 1 (1946~1954)

가.

(Ho Chi Minh)

1920

(周恩來)

1920

(廣州)

(劉少奇)

1921

1930

가

가

.5)

가 1941

가,

5) 三尾忠志, “「大漢民族大國主義」とベトナムの對應,” 三尾忠志 編, 『インドシナをめぐる國際關係』(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88), p.232.

1945 2 (Viet Minh)⁶⁾ 1945 9
가 1946

1)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전후 양국 관계와 상호 협력

,
1,000 1949 8
1
1947 7 830
,
.7) , 1949
(Vo Nguyen Giap) , 3

.8) 1949 4

6) 가 , (Ho Chi Minh) 1941
(Viet Nam Doc lap Dong minh)
, ‘ (越盟) ’ .

7) Qiang Zhai, *China and the Vietnam Wars, 1950~1975*(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0), pp.11~12.
, 1946 3 26
. Trung tam Khoa hoc Xa hoi va Nhan van Quoc gia, Trung tam
Nghien cuu Trung quoc, *Quan he Viet Nam - Trung Quoc: nhung Su kien 1945~1960*(Ha Noi: Nxb Khoa hoc Xa hoi, 2003), p.20.

8) Vo Nguyen Giap, *Fighting Under Siege*(Hanoi: The Gioi Publishers, 2004), pp.250~251.

1949 6 10 7 5
“十萬大山”(Thap Van Dai Son)
“Yong - Long - Qin”(Ung - Long - Kham) ”
.9) 10 가
.
500
.10)
1948~49
.
1949 8 (Ly Bich Son
Ly Ban) (Tran Duc Thuy) ,11) 1950 1
(Hoang Van Hoan) ,12)
1949 10 1
.
(劉少奇) 가
1950 1 (羅貴波) (
.
1950 1 18 가
1 30 가
.13)

9) “Yong - Long - Qin ”

. Nguyen Thi The Binh. "Nien bieu nhung Su kien chinh cua Quan doi Nhan dan(1944~2000)." Phan Ngoc Lien, Nghiem Dinh Vy & Nguyen Minh Duc. *Quan doi Nhan dan Viet Nam: Truyen thong va Hien dai*(TP. HCM: Nxb Tu dien Bach khoa, 2004), p.779 Vo Nguyen Giap, , p.251.

10) Vo Nguyen Giap, , pp.251~253.

11) Trung tam Khoa hoc Xa hoi va Nhan van Quoc gia, Trung tam Nghien cuu Trung quoc, *Quan he Viet Nam - Trung Quoc: nhung Su kien 1945~1960*(Ha Noi: Nxb Khoa hoc Xa hoi, 2003), p.26.

12) 郭明 主編, 『中越關係演變四十年』(南寧: 廣西人民出版社, 1992), p.21.

1 30

가 (毛澤東)

2

3

.14)

1949~1950

.15)

1950 4

, 4 17 (The Chinese Military Advisory Group) (雲南)

59

281 , 1950 7 (韋國清) (廣西) (南寧)

“ (華南工作團) ” 가 .16) 1950

13) Qiang Zhai, , pp.13~15 2

1950 1 30 가 , Qiang Zhai, , p.16

14) Qiang Zhai, , pp.16~17.

15) Eva-Maria Stolberg, "People's Warfare Versus Peaceful Coexistence: Vietnam and the Sino-Soviet Struggle for Ideological Supremacy." Andreas W. Daum et.al. (eds.), *America, the Vietnam War and the World: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239.

16) Qiang Zhai, , pp.18~20 中國軍事顧問團歷史編寫組, 『中國軍事顧問團援越抗法戰爭史實』(北京: 解放軍出版社, 1990), p.4. , 韋國清, 鄧逸凡, 梅嘉生, 馬西夫, 李文一, 鄧清河 . “ ” 100

(Viet Bac) 1950

8 3 10

4,000 ,

1954 4 .17) , 1951

가

.18)

가 ,

가 .19)

波) (The Chinese Political Advisory Group)

20)

2) 물자 지원과 군사적 자문

가

1950	4	9	14,000
1,700	150	60	300

(political commissar) . Bui Tin. *From Enemy to Friend: A North Vietnamese Perspective on the War*(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2), p.97 中共人名錄編修委員會 編,『中共人名錄』(臺北: 國立政治大學國際關係研究中心, 1989), p.411.

(韋國清), (梅嘉生), (鄧逸凡). Vo Nguyen Giap, *The Road to Dien Bien Phu*(Hanoi: The Gioi Publishers, 2004), p.33.

17) 松岡 完, 『ベトナム戦争：誤算と誤解の戦場』(東京：中央公論新社, 2001), p.119.

18) Qiang Zhai, , pp.33~36.

¹⁹⁾ Bui Tin, *Following Ho Chi Minh*(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5), p.14.

²⁰⁾ Qiang Zhai, , pp.35~36. (La Quy Ba)
(director of the administrative officer) , 1950 1
. Bui Tin, *From Enemy to Friend*, p.97.

, , , 2,800 ,21)

, 11 6 , 4,630 , ,

, , , ,22)

,

1945 가

1950 6 (border campaign)

,23) (廣西)

(李天佑)

,

, ,

(陳賡) 20 ,24)

1920 (黃埔)

, (西南) (雲南)

,25) 1950 7 19

11 1

5,000 10

21) Qiang Zhai, , p.20. 1950 4
가 , , ,
(division) . Bui Tin, , p.97.

22) 曲愛國, “中國支援部隊在越南戰場的軍事行動,” 李丹慧 編, 『中國與印度支那戰爭』(香港: 天地圖書, 2000), p.78. 王賢根 “ ” “ 420 ” . 王賢根, 『援越抗美實錄』(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90), p.42.

23) , Qiang Zhai, , pp.26~33 . 1950 9
. Bui Tin, , p.97.

24) 郭明 主編, , p.28.

25) (Tran Canh) 西南大軍區 副使令員 . 1950 2
西南大軍區 4 兵團 6 軍區가 . 1950 4 雲南軍區가
, 1951 11 西藏軍區가 . 李俊亭・楊金河 主編, 『中國武裝力量通覽 1949~1989』(北
京: 人民出版社, 1990), p.18.
. Qiang Zhai, , p.22. , 80
3 6
1950 6 ,
11 . Bui Tin, , pp.97~98.

, 1950~1975 171

.26)

1950

. 1950

1951~1953

(midland)

(韋國清)

1,000

.27)

“ (東方紅) ”

“ 가(進軍歌) ”

가

.28)

. 1951

2

가

가

『 』(*Nhan Dan*, 人民)

(Bui Tin)

”

.29)

3) 디엔비엔푸 전투

1953 5

(Henry Navarre)

3

18

26) 陳賡, 『陳賡日記』(北京: 解放軍出版社, 2002), pp.293~321.

2000

(p.295).

27) 郭明 主編, , p.59.

28) Bui Tin, *Following Ho Chi Minh*, p.15.

29) Bui Tin, *Following Ho Chi Minh*, p.16.

(Vo Nguyen Giap)

1953 11 (Dien Bien Phu) , 1954 1

. 4 “ ”
 , 5 1 5 7
 .30)

가 ,

.31)

(Hoang Van Hoan) 가

.32)

가 .

가

가

“ ” .33)

30) , Qiang Zhai, , pp.46~49 .

31) 郭明 主編, , p.43.

32) 黃文歡, “ 越中戰鬪友誼的事實不容歪曲, ” 『黃文歡文選 1979~1987』(北京: 人民出版社, 1988), p.15.
 (Bui Tin)

Bui Tin, *From Enemy to Friend*, p.98.

33) 郭明 主編, , pp.53~56.

.

가

.

가

.

가

,

. 1954 5 8

-

가

,

가

.³⁴⁾

.

가

.

3

“

”

,

,

.

(周恩來) 1954 3

가

.

,

가

.³⁵⁾

3

4 1

,

.

34) 1979

가 『30

』

,

, , 가

. 黃文

歡, , pp.16~19.

35)

, William J. Duiker, *Sacred War: Nationalism and Revolution in a Divided Vietnam*(Boston: McGraw Hill, 1995), pp.89~92 Qiang Zhai, , pp.50~63 .

7 3 5 (柳州) ,
 , 16 .
 ,
 .
 ,
 ,
 가
 가 .
 .
 .
 (Pham Van Dong) 14 15
 , 17 가
 , 17 .
 ,
 가
 가
 , 가
 (陳賡)
 , (韋國清)
 , .36)
 ,
 .37)
 3 ‘ , 3 ,

36) 岡部達味, “ 베트남의苦惱・對中關係,” 西原 正/ジエ - ムス・W・モリ編, 『臺頭するベトナム』(東京: 中央公論社, 1996), p.138.

37) , 楊奎松, “ 毛澤東與印度支那戰爭,” 李丹慧 編, 『中國與印度支那戰爭』(香港: 天地圖書, 2000), pp.25~27. (和平共處) 5 .

,
,
17 2
가 , 1970
가
,

3. 1955~1964

1954 -
. 1954 가 ,
- .
가
,
,
,38)
,
. 1963
(劉少奇)가
,
(領袖)가

³⁸⁾ Vo Nhan Tri, *Vietnam's Economic Policy since 1975*(Singapore: ISEAS, 1990), pp.1~13.

.39)
가
, (Nikita Khrushchev)
.
, , ,
가
3 가
.
,
.40)
, 가 가 가
가
가
.
가 (緊要)
.
1956 7 가
,
1959 15
,
, 1960

39) 楊奎松, , p.38.

40) 三尾忠志, “「大漢民族大國主義」とベトナムの對應,” 三尾忠志 編, 『インドシナをめぐる國際關係』(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88), pp.234~236.
, 楊奎松, , p.38.

41) ,
.

.42)

.43) , 가 가
1950

1963 1950

. 1954
가 .44)
가

,
. 1956~1963 3 2
(元) .45) 가 27 , 1 ,
2 , 202 , 1 5 , 5 ,
1 , 15 , 28 , 118 .46) 1962

41) (National Liberation Front) ,
“Mat tran Dan toc Giai phong Mien nam Viet Nam” , “
” .

42) 楊奎松, , pp.34~36.

43) J. , , 『 (: , 2003), p.759.

44) 楊奎松, , pp.40~41.

45) (Vo Nhan Tri) , 1955~1960 9 (元) 가
3 .
. Vo Nhan Tri, , p.42.

46) 李可・郝生章, 『文化大革命中的人民解放軍』(北京: 中共黨史資料出版社, 1989), p.409.

1962~1964
3 , 9 , 446 , 2,103 ,
7 6,400 .⁴⁷⁾ 1965
가 .

4. 2 (1965~75)

가.

1964 8 2 4

1964 8 7 가 , 1965 2
, 1965 3 2 (Da Nang)

1966

(毛澤東)

.⁴⁸⁾

(Leonid I.

Brezhnev)가

47) 李可・郝生章, , p.409.

48) , 李丹慧, “中蘇在援越抗美問題上的分歧和衝突,” 李丹慧 編, 『中國與印度支那戰爭』(香港: 天地圖書, 2000), pp.128~130.

가 , 1969
1968 (Tet Offensive)
“ (Vietnamization of the
Vietnam War) ”

1969
1971 4 , 7 , 1972 2

가

1) 원조 개시 과정

1965
, 1963 (劉少奇) 가
1963 3 (羅瑞卿)
, 1964 7 , 3

49) 曲愛國, (“中國支援部隊在越南戰場的軍事行動,”) 李丹慧 編, 『中國與印度支那戰爭』(香港: 天地圖書, 2000), pp.81~82.

來) “ (周恩
 ” 50)
 1964 8 ,
 (Ho Chi Minh)
 (Pham Van Dong) (Van Tien Dung)
 , 51) 8 6
 “ ,
 ” 52)
 1965 2 7, 8 , 2 10
 1 가 , “
 ” ,
 53)
 , (南寧) 400 .
 2,000 54)
 1965 4 (Le Duan) 1 (Vo Nguyen Giap)
 .
 ,
 19
 20 , ,
 가 55) 가

50) , (陳毅), (楊成武) ,
 . 曲愛國, , pp.84~85.

51) 郭明 主編, , p.74.

52) 郭明・羅方明・李白茵 編, 『現代中越關係資料選編』(北京: 時事出版社, 1986), pp.354~356.

53) 黃文歡, 『滄海一粟 - 黃文歡革命回憶錄』(北京: 解放軍出版社, 1987), p.264.

54) 郭明 主編, , p.74; 楊奎松, , p.42.

55) 李可・郝生章, , p.415. 朱建榮 , 1965 4 (Le

(劉少奇)

(Vo Nguyen Giap) 4 21~22 (羅瑞卿)

(楊成武)

.56) 4 24 (楊成武) (梁必業)

, , (工程兵)

(工程兵) 2

()

.57)

1965 5 “ .

(黨中央・國務院援越工作小組) ” , (楊成武)

, (李天佑) .

“ (援越) ” .

.58)

1965

“ (援越運輸工作領導小組) ” ,

가

. 1965 10 가

63 , (海南島)

.59)

Duan) . 朱建榮, 『毛澤東
のベトナム戦争: 中國外交の大轉換と文化大革命の起源』(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1), p.373.

56) Qiang Zhai, , p.133.

57) 朱建榮, , pp.373~374.

58) Qiang Zhai, , p.134.

1969 4 (省)
 “ (援越小組) ” (雲南)
 (Lao Cai), (Lai Chau), (Ha Giang) 3
 ,
 .60)

2) 지원부대 과병

가
 1979 11 20 『人民日報』가 (評論員) “ ,
 (越南抗法抗美鬭爭時期的中越關係) ”
 . 2 “ , (防空),
 (工程), , (後勤) 32 , 가 17
 ” .61)
 1965 6 , , ,
 “ ” .62)
 “ 中國志願人員參加越南人民軍 ”, “ 中國
 後勤部隊 ” .63) 1 2 가 1965
 6 9 (友誼關) ,
 1965~1970

(Hoan Van Hoan) , 1965~1970
 1,231 km , 476 km , (Yen Bai,

59) 李可・郝生章, , pp.413~414.

60) 肖祖厚・李丹慧 主編, 『雲南與援越抗美(檔案文獻)』(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4), 前言, p.4.

61) 曲愛國・鮑明榮・肖祖躍 編, 『援越抗美 - 中國支援部隊在越南』(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5), p.1.

62) 肖祖厚・李丹慧 主編, , 前言, p.2.

63) 曲愛國, , pp.90~91.

安沛) , 4,000km . , 1967
500 , (Hai Phong)
2,200 5 .⁶⁴⁾
가 .
,
. ⁶⁵⁾
3 9 2 1
(團) 15 . ~ (Bac Ninh)~ (Lang
Son) , ~ (Lao Cai) (Yen Bai)~ ,
(Thai Nguyen) (Thai Binh)
(防空)
, 2,153 1,707 , 1,608
42 .⁶⁶⁾
1 (中國後勤部隊 第1支隊)
3 . (友誼關) (北線)
(Thai Nguyen) (中線)
. 1965 6 1970 6
117km , 362km ,
. ⁶⁷⁾
(築路) 4, 5, 6 (測設總隊)
8 . 7 1,206km
, 305 , 4,441 .⁶⁸⁾

⁶⁴⁾ 黃文歡, , pp.268~269.

⁶⁵⁾ 曲愛國 . 曲愛國, “中國支援部隊在越南戰場的軍事行動,” 李丹慧 編, 『中國與印度支那戰爭』(香港: 天地圖書, 2000), pp.92~100.

⁶⁶⁾ 郭明 主編, , p.70; 王賢根, 『援越抗美實錄』(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90), p.210.

⁶⁷⁾ 郭明 主編, , p.70; 李可・郝生章, , p.421.

⁶⁸⁾ 郭明 主編, , p.71.

(國防工程) 12,000 2 (中國
後勤部隊 第2支隊) , 1965 6 1966 10
가
1,400 가 1965 8
1966 7 , , ,
7 가 1966 12 1969 11
239 (坑道) , 9 , 171km ,
90 km .⁶⁹⁾ 1965
3
(Yen Bai) 1969 5 .⁷⁰⁾
1972 5 6 ,
1972 5 1973 8 ,
(廣州)
8 ~ 5 159km
. ⁷¹⁾
6
3,800 .⁷²⁾ , 1956 9
(空軍) 200 1,112
1965
1965 9 (雲南) (祥雲)
. ⁷³⁾

69) 李可・郝生章, , pp.418~419.

70) 李可・郝生章, , p.420.

71) 曲愛國, , p.101.

72) 李可・郝生章, , p.426.

73) 郭明 主編, , p.72.

1~2
. 1971 2 4 가
가
가
.74)
, 1965 6 1970 7 23
(), 95 (), 83 32 .75)
가
(Bui Tin)
가 1967~1970 12 20 가 ,
1967
.
.
.
3~4
1972
.76)
1973 8 가
1,100 , 4,200 .77)

3) 물질 원조

2

, 가 ,

.

.

74) Le Cao Dai, *The Central Highlands: A Vietnamese Journal of Life on the Ho Chi Minh Trail 1965~1973*(Hanoi: The Gioi Publishers, 2004), pp.368~369.

75) 朱建榮, , p.381. 1 3 .

76) Bui Tin, *From Enemy to Friend*, pp.99~100.

77) 郭明 主編, , p.71.

가 7 ,
3 , 10 ,78)

가 , < 1> 1965
20% 가, 1966 1974 60%

< 1> 가 (%) , 1960~1975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77.6	76.9	74.1	73.5	78.5	57.7	39.0	33.4
()	22.4	23.1	25.9	26.5	21.5	42.3	61.0	66.6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31.1	31.5	32.4	36.0	39.7	40.1	39.4	45.1
()	68.9	68.5	67.6	64.0	60.3	59.9	60.6	54.9

: Cong hoa Xa hoi chu nghia Viet Nam, *Nien giam Thong ke 1979*
(Ha Noi: Tong cuc Thong ke, 1980), p.127.

가 가 가
. < 2>

,
가 ,
가 . 1965~1972 가
. 2 가
가 70 .

78) Vo Nhan Tri, , p.39.

, 1950~1975 187

< 2>

, 1955~1975 (:)

		1955~60	1961~64	1965~68	1969~72	1973~75
	: 2,362,682 ; : 70 ()*					
(: , , 軍裝, 軍醫, 油類, , ...)	1,101,346	4,105	230	105,614	316,130	75,267
(: , , ,)	1,261,336	45,480	70,065	411,879	684,666	49,246

- *
-

1:1

: Ban Chi dao Tong ket Chien tranh Truc thuoc Bo chinh tri, *Chien tranh Cach mang Viet Nam 1945~1975: Thang loi va Bai hoc* (Ha Noi: Nxb Chinh tri Quoc gia, 2000), p.601.

, 1954~197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450

1978	3	339
------	---	-----

1950~1978 2 가

1955~1976

6 .79)

1950~1974	42	6	(元)
-----------	----	---	-----

200

213 8 , 7 , 12 4440 , 1807 ,

176 , 552 , 320 , 170 , 1 6 ,

1 8240 , 6 5 , 3 5 , 111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79) Vo Nhan Tri, , p.42.

80) 李可·郝生章, , p.409. 肖祖厚 李丹慧 가 1965~1976

2
. < 3> 1964~1975
. 1965
가 . 1964 ,
8 22 2.8 가 , 1,205 4,439
3 , 2,500 1 1,400 5 , 33 180
6 가 . 1966~1967
, 1968 . 1971
1973 가 ,
가
.

< 3> , 1964~1975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80,500	220,767	141,531	146,600	219,899	139,900
	1,205	4,439	3,362	3,984	7,087	3,906
()	25,240	14,010	178,120	147,000	247,920	119,170
()	335	1,800	1,066	1,363	2,082	1,357
	426	2,779	1,568	2,464	1,854	2,210
	2,941	9,502	2,235	2,289	3,313	3,453
	16	-	-	26	18	-
	7	14	25	-	-	-
	18	2	-	70	-	-
	25	114	96	435	454	162
()	-	-	400	800	1,000	1,200

< 3> ()
, 李可 郝生章

. 肖祖厚·李丹慧 主編, , 前言, pp.2~3.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01,800	143,100	189,000	233,500	164,500	141,800
	2,212	7,898	9,238	9,912	6,406	4,880
()	29,010	57,190	40,000	40,000	30,000	20,060
()	397	1,899	2,210	2,210	1,390	965
	950	2,464	4,370	4,335	5,148	2,240
	1,600	4,424	5,909	6,447	4,633	2,150
	-	80	220	120	80	-
	-	24	71	5	6	-
	-	4	14	36	-	20
	-	4,011	8,758	1,210	506	-
()	1,200	1,200	1,400	1,400	1,400	-

: 李可・郝生章, 『文化大革命中的人民解放軍』(北京: 中共黨史資料出版社, 1989), p.416.

(Hoang Van Hoan) , 1965~1975

5 , 3 , 3 , 6 ,
1 , 4 , 2 , 7
, 81)

200

. 41% . 82) 가 188
4 , 13 5 .

81) 黃文歡, , pp.265~266.

82) 肖祖厚・李丹慧 主編, , 前言, p.3 Vo Nhan Tri, , p.42. (Vo Nhan Tri)
1975 30 .
1950~1978 가 가 200
. 黃文歡, , p.264. , 曲星
가 人民幣 203 6845 (元) . 100 6,742
, 49 6,679 , 6 3,500 . 가 14
, . 曲星, “中越在印度支那戰爭中的策略差異,” 李丹慧 編, 『中國
與印度支那戰爭』(香港: 天地圖書, 2000), pp.106~123.

93% 6.7% .83)

. -

1960 가 .

가

. 1969 3 .

. 1964 10

1965

가

.

가 .

, 가 가

.84)

1968 5

. 1965

.

.

,

.85) 1968 3 31 20

, 4 3

. 1969

83) 郭明 主編, , p.77.

84) 楊奎松, , p.46.

85) 曲星, , pp.118~121.

1971~1972

3 2 .86)

1971~1973

가

가

.87)

가“

”

가

.88)

1973

.89)

86) 沈志華, “中美和解與中國對越外交,” 李丹慧 編, 『中國與印度支那戰爭』(香港: 天地圖書, 2000), p.231.

87) 郭明 主編, , p.102.

88) 三尾忠志, , p.235; 郭明 主編, , p.103.

89) Ramses Amer, "Sino - Vietnamese Relations and Southeast Asian Securit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14 No. 4(March 1993), p.317.

5.

, 1950~1975 193

,

.

.

, 1978

1979

.

,

“

”

.

,

“

”

.

－ 참 고 문 헌 －

1.

， J. 『 』： ， 2003.
 “ - ； . ”
 『 』()， 44 (2003).

2.

岡部達味, “ 베트남の苦惱・對中關係.” 西原 正/ジエ - ムス・W・モリ 編.
 『臺頭するベトナム』, 東京: 中央公論社, 1996.
 三尾忠志, “ 「大漢民族大國主義」とベトナムの對應.” 三尾忠志 編.
 『インドシナをめぐる國際關係』,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88.
 松岡 完, 『ベトナム戦争: 誤算と誤解の戦場』, 東京: 中央公論新社, 2001.
 朱建榮, 『毛澤東のベトナム戦争: 中國外交の大轉換と文化大革命の起源』,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1.
 朱建榮, “ 中國における冷戦史研究の動向 - ベトナム戦争を中心に - . ”
 『歴史評論』, No.627 (2002. 7).

3.

曲星, “ 中越在印度支那戰爭中的策略差異.” 李丹慧 編,
 『中國與印度支那戰爭』, 香港: 天地圖書, 2000.
 曲愛國, “ 中國支援部隊在越南戰場的軍事行動.” 李丹慧 編,

- 『中國與印度支那戰爭』，香港：天地圖書，2000.
- 曲愛國·鮑明榮·肖祖躍 編，『援越抗美 - 中國支援部隊在越南』，
北京：軍事科學出版社，1995.
- 郭明 主編，『中越關係演變四十年』，南寧：廣西人民出版社，1992.
- 郭明·羅方明·李白茵 編，『現代中越關係資料選編』，北京：時事出版社，1986.
- 本書編輯組，『中國軍事顧問團援越抗法實錄[當事人的回憶]』，
北京：中共黨史出版社，2002.
- 沈志華，“中美和解與中國對越外交。”李丹慧 編，
『中國與印度支那戰爭』，香港：天地圖書，2000.
- 楊奎松，“毛澤東與印度支那戰爭。”李丹慧 編，
『中國與印度支那戰爭』，香港：天地圖書，2000.
- 楊勝群·田松年 主編，『共和國重大決策的來龍去脈(1949~1965)』，
南京：江蘇人民出版社，1995.
- 王賢根，『援越抗美實錄』，北京：國際文化出版公司，1990.
- 李可·郝生章，『文化大革命中的人民解放軍』，北京：中共黨史資料出版社，1989.
- 李丹慧，“中蘇關係與中國的援越抗美。”『當代中國史研究』，1998年 第3期.
- 李丹慧，“中蘇在援越抗美問題上的分枝和衝突。”李丹慧 編，
『中國與印度支那戰爭』，香港：天地圖書，2000.
- 李丹慧 編，『中國與印度支那戰爭』，香港：天地圖書，2000.
- 李俊亭·楊金河 主編，『中國武裝力量通覽 1949~1989』，
北京：人民出版社，1990.
- 中共人名錄編修委員會 編，『中共人名錄』，
臺北：國立政治大學國際關係研究中心，1989.
- 中國軍事顧問團歷史編寫組，『中國軍事顧問團援越抗法鬭爭史實』，
北京：解放軍出版社，1990.
- 陳賡，『陳賡日記』，北京：解放軍出版社，2002.
- 肖祖厚·李丹慧 主編，『雲南與援越抗美(檔案文獻)』，北京：中央文獻出版社，2004.
- 解力夫，『越南戰爭實錄』，上·下卷. 北京：世界知識出版社，1993.

黃文歡, “越中戰鬥友誼的事實不容歪曲。”

『黃文歡文選 1979~1987』, 北京: 人民出版社, 1988.

黃文歡, 『滄海一粟 - 黃文歡革命回憶錄』,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7.

4.

Ban Chi dao Tong ket Chien tranh Truc thuoc Bo chinh tri.

Tong ket Cuoc khang chien chong My, Cuu nuoc: Thang loi va Bai hoc. Ha Noi: Nha xuất bản Chinh tri Quoc gia, 1995.

Ban Chi dao Tong ket Chien tranh Truc thuoc Bo chinh tri.

Chien tranh Cach mang Viet Nam 1945~1975: Thang loi va Bai hoc. Ha Noi: Nha xuất bản Chinh tri Quoc gia, 2000.

Bo Quoc phong, Vien Lich su Quan su Viet Nam.

Lich su Khang chien chong My Cuu nuoc 1954~1975, tap I ~ VI. Ha Noi: Nha xuất bản Chinh tri Quoc gia, 1996 ~ 2001.

Cong hoa Xa hoi chu nghia Viet Nam. *Nien giam Thong ke 1979.*

Ha Noi: Tong cuc Thong ke, 1980.

Nguyen Thi The Binh. "Nien bieu nhung Su kien chinh cua Quan doi Nhan dan(1944~2000)." Phan Ngoc Lien,

Nghiem Dinh Vy & Nguyen Minh Duc. *Quan doi Nhan dan Viet Nam: Truyen thong va Hien dai.* TP. HCM: Nha xuất bản Tu dien Bach khoa, 2004.

Trung tam Khoa hoc Xa hoi va Nhan van Quoc gia,

Trung tam Nghien cuu Trung quoc.

Quan he Viet Nam - Trung Quoc: nhung Su kien 1945~1960. Ha Noi: Nha xuất bản Khoa hoc Xa hoi, 2003.

5.

Amer, Ramses. "Sino - Vietnamese Relations and
Southeast Asian Securit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14 No. 4(March 1993).

Ang Cheng Guan. *Vietnamese Communists'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Second Indochina Conflict, 1956~1962*. Jefferson,
North Carolina: McFarland, 1997.

Bui Tin. *Following Ho Chi Minh*.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5.

Bui Tin. *From Enemy to Friend: A North Vietnamese Perspective on the
War*.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02.

Duiker, William J. *China and Vietnam: The Roots of Conflict*.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6.

Duiker, William J. *The Communist Road to Power in Vietnam*.
2nd ed. Boulder: Westview, 1996.

Duiker, William J. *Sacred War: Nationalism and Revolution in a Divided
Vietnam*. Boston: McGraw - Hill, 1995.

Gardner, Lloyd C. & Ted Gittinger, ed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Vietnam*. College Station: Texas A & M University, 2000.

Le Cao Dai, *The Central Highlands: A Vietnamese Journal of Life on the
Ho Chi Minh Trail 1965~1973*. Hanoi: The Gioi
Publishers, 2004.

Luu Van Loi. *50 Years of Vietnamese Diplomacy 1945~1995*,
Vol. II: 1975~1995. Hanoi: The Gioi Publishers, 2002.

Pike, Douglas. "Vietnam and China." Joyce K. Kallgren, Noordin Sopies,

& Soedjati Djiwandono, eds. *ASEAN and China: An Evolving Relationship*.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8.

Stolberg, Eva - Maria, "People's Warfare Versus Peaceful Coexistence: Vietnam and the Sino - Soviet Struggle for Ideological Supremacy." Andreas W. Daum, Lloyd C. Gardner, & Wilfried Mausbach (eds.). *America, the Vietnam War and the World: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Vo Nguyen Giap. *Dien Bien Phu*. Hanoi: The Gioi Publishers, 2004

Vo Nguyen Giap. *Fighting Under Siege*. Hanoi: The Gioi Publishers, 2004

Vo Nguyen Giap. *People's War People's Army*. Hanoi: The Gioi Publishers, 2004

Vo Nguyen Giap. *The Road to Dien Bien Phu*. Hanoi: The Gioi Publishers, 2004.

Vo Nhan Tri. *Vietnam's Economic Policy since 1975*. Singapore: ISEAS, 1990.

Zhai, Qiang. *China and the Vietnam Wars, 1950~1975*.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0.

Zhang, Xiaoming. "The Vietnam War, 1964~1969: A Chinese Perspectiv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60(1996).

베트남전쟁이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

정 상 화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1. 서 론
2. 베트남전쟁과 지역경제
3. 베트남전쟁기 일본경제의 변화
4. 베트남전쟁의 일본경제에 대한 영향
5. 결 론

1.

(1950~1953) 가
(神武) (1955~1957), (岩戸) (1959~1961), (1963~
1964), (1966~1970) .1)
1) 1952 63%가 . 1953
1958~1959 14% (Havens 1987,
p.93). , 1950 1960 가
(三和 2002, pp.184~185).

1

(2003, p.415).²⁾

2

가 .

가

가

가

1

가

1960

10

\$1,000

(對)

(對)

가

가

가

가

가

1960

, 1971

1973

.3)

2) 1955

1975

1

44.7%

61.0%

44.7%

13.9%

가

(2003, p.415)

3)

3

Sato

1972

Tanaka

· (East Asian model of economic develop
ment) 가 . , 가

,

가

·

·

가 , , ,

가

·

가 .

가

,

가

·

·

,

가

·

2. :

가.

·

·

1962~1965

,

,

1960
가
(Bretton - Woods System)
1971
(1954~1977)
.4) 1961 . 1964 8 2
가
8 7
(Tongking Resolution) . 1965 3
6
1965 2 5 1968~1969 50 가
1970 . 1973 1 27
3
, 1975 4 30
.5) 250
4) 가
(SEATO,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 1954 1977 (UN, United Nations)
52 (反)
8
가 (2003, pp.46~48)
5) Johnson 1968 3 31 11
. Nixon 1969 7 25 Guam Nixon
Doctrine Johnson (Havens 1987,
172). Nixon Doctrine 가가 (VietnamizatI
on)
, 1970

5 8 , \$1,500
(Daniel 1987; 1983, pp.276~278; 1994, pp.310~313
)⁶⁾

1965 \$500 1969 \$800 가 ,
1968 \$230 가 . 1960 1~2%
가 1970 5% 가 , 1964 \$1
1967 1972 \$30 \$100 . < 1>
(가) 2

.⁷⁾

< 1> ()

	가 (\$10)	1990 가 (\$10)	GNP (%)	1 (1990 가 , \$)
1 (1917~1918)	26	197	24	1,911
1 (1941~1945)	288	2,091	130	15,655
(1950~1953)	54	264	15	1,740
(1964~1972)	111	347	12	1,692
1 (1990~1991)	61	61	1	235

: The United States Civil War Center. www.cwc.lsu.edu/cwc. : 2004.10.5.

6)

1991 1 (Gulf War)
Bush
(Krieger 1993, p.959).

7)

1 2 , 1 , ,

.

가 가

. 1965

(Havens 1987, p.93). ,

가 .

가 .

가 , , ,

, , , (1983,

p.276). 가

, .8)

< 2> 가 :

1964	150	-	200	17	30
1965	20,620	16	1,557	72	119
1966	44,566	244	4,525	2,061	155
1967	47,829	2,205	6,818	2,020	534
1968	50,003	6,005	7,661	1,576	516
1969	48,869	11,568	7,672	189	552
1970	48,537	11,568	6,763	77	441
1971	45,700	6,000	2,000	50	100
1972	36,790	40	130	50	50

: Blackburn(1994, p.158).

< 2> 가

. 1964~1972 5

. 가

, AID(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9~10
 1960
 가 .
 (GDP) 1 (1962~1966) 8.3% 가
 2 (1967~1971) 10.03% 가 .
 .9)
 , , ,
 , , 4 30
 , 21,467 , 3,409 1,709
 (< 3>).

< 3>

< : >

가				
	47,378	304,704	2,338	766
	4,407	17,060	n.a.	n.a.
	469	2,940	6	n.a.
	351	1,358	n.a.	n.a.
	55	212	n.a.	n.a.

: www.rjsmith.com/kia_tbl.html(: 2004. 10. 5).

.

. 1940 8

9)

(2003, pp.132~146) .

1 (Vichy)

. 1941 7

. , Ho Chi Minh 1941

1945 3

5

가

1953

1965

\$5,560

(Havens 1987, p.16).

() ,10)

가

가

,11)

1

10)

가

가

1955

1/3

日越貿易會(金曜

1/4

)

. Havens(1987, pp.18~19)

11)

Sagamihara Kanagawa

(Havens 1987, p.86).

. Havens(1987, pp.89~90) , 1967

1,400 .

.

.

가

.

가 가 (Asia Development Bank)

.

,

가 .

가 .¹²⁾

1950 1960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Nakamura 1988, p.56).

.

Ikeda 1964 Sato . 1967 Sato

가

가

Calder(1988) ,

(reaction) . ,

¹²⁾ (2002, pp.409~421)
가

. 1962

가

Bretton - Woods 가 .

가

가

가

1963

(détente)

가

가

가

(ベ平連, Peace for Vietnam)

()

가

가 Sato

55%

(< 4>).

Havens(1987, pp.95~100)

1970

< 4> , 1960~1979 < : (%)>

	(LDP)	(JSP)		
1960	296(63.4)	145(31.1)	26(5.6)	467(100.0)
1963	283(60.6)	146(31.3)	38(8.1)	467(100.0)
1967	277(57.0)	140(28.8)	69(14.2)	486(100.0)
1969	288(59.3)	90(18.5)	108(22.2)	486(100.0)
1972	271(55.2)	118(24.0)	102(20.8)	491(100.0)
1976	249(48.7)	123(24.1)	139(27.2)	511(100.0)
1979	248(48.5)	107(20.9)	156(30.5)	511(100.0)

: *Keesing's Contemporary Archives(Keesing's Record of World Events)* .

가

가

가

(Havens 1987, p.93). 가

가

(, p.97)

.13)

(multiplier effect)

가

가

가

가

3.

1

2 1955

.¹⁴⁾ 가 ‘ ,

(橋本 1999, p.7).

,

(,

) 가

()

.

,

가

.

,

가,

.

가.

1960 Ikeda

10 가

. 1964 Sato 1965

¹⁴⁾ 1948

.

.

.

1949

1950

(橋本 1999, pp.73~101).

1966 5 .
가 10 1 2.8 가
. 20 1970
.15) 2

< 6> (1965~1973)
5.1% 13.4% .
10% 가 (三和
2004, p.185). 2

< 5> (GDP) 1955 8 4 1975
150 17.8 가 , () 1 8
1 5.7 가 가
1955 1965 GDP 가 가 3.9
2.5 . (1965~1975)
GDP 4.5 , 2.2 가

, 1955
6 9 90 9 14
1970
5 가 4
1970

15) Sato 1972 7 가 .
9 1973 10 1
1974 10

< 5> GDP , 1955~1975

			1955	1960	1965	1970	1975
	GDP(10)		8,370	16,010	32,866	73,345	149,327
	(1,000)		69	482	1,876	5,289	6,941
			1	39	194	1,087	2,678
	GDP (10)		181	303	459	675	1,023
	(1,000)		909	2,055	2,976	3,842	3,186
			404	983	1,527	2,104	1,653

: GDP - IMF(1997); - 安藤(1990, p.168).

가 (< 6>). , 1974 1974~1975 가

< 6>

	(%)		1 (1)		가 (%)	가 (%)
1960	19.8	13.3	166.2	272.4	40.9	14.4
1961	23.5	14.5	203.4	309.1	36.8	14.4
1962	10.9	7.0	223.4	327.7	3.4	13.3
1963	15.4	10.5	255.3	358.4	5.3	12.0
1964	18.1	13.1	298.5	401.3	20.0	12.3
1965	10.5	5.1	326.3	417.4	-6.4	10.6
1966	15.2	9.8	372.5	454.1	11.6	11.2
1967	18.3	12.9	436.5	507.8	27.3	12.8

	(%)		1 (1)		가 (%)	가 (%)
1968	18.4	13.4	511.0	569.4	27.5	14.3
1969	15.6	10.7	584.0	623.0	21.1	14.7
1970	18.5	10.9	684.1	683.1	14.7	15.5
1971	12.1	7.4	757.2	724.3	4.5	13.9
1972	14.3	9.1	849.4	755.3	5.6	12.5
1973	22.5	9.8	1,022.6	836.5	18.5	10.2
1974	19.1	-1.3	1,202.1	814.9	-10.8	7.0
1975	10.1	2.5	1,306.2	824.7	-13.1	8.8

: 安藤(1990, p.164).

< 7> 1 ()
가 1960 14.9% 1975 6.6%)
. 1970
30.6% 1975
27.2% . 1960 39.7%
1975 50% 가 .

< 7> < : 10 (%)>

					가 / /	· / /	
1960	1,906 (14.9)	3,953 (30.8)	3,743 (29.2)	701 (5.5)	1,184 (9.2)	5,089 (39.7)	12,833 (100.0)
1965	2,881 (11.3)	7,386 (28.9)	7,165 (28.0)	1,807 (7.1)	2,218 (8.7)	11,379 (44.6)	25,691 (100.0)

					가 / /	/ / /	
1970	4,415 (7.8)	17,759 (31.2)	17,427 (30.6)	4,231 (7.4)	4,556 (8.0)	26,071 (45.8)	57,032 (100.0)
1975	8,301 (6.6)	34,085 (27.2)	33,571 (26.9)	10,795 (8.6)	9,551 (7.6)	62,437 (49.9)	125,169 (100.0)

: 安藤(1990, p.8).

가

가

가

< 8>

, 1970 ~1980

	(1961~70)	(1965~69)	() ⁴⁰ (1967~71)	(1970~75)	(1973~76)	50 (1976~80)
(%)	7.8	8.1	8.2	10.6	9.4	6.0+
(%)	10.0	10.1	9.8	5.1	3.5	4.5
(%)	+2.2	+2.0	+1.6	-5.5	-5.9	-1.5

: 小峰(1997, p.260).

가

(1961~1970),

(1965~1969)

- 40 ()

2.2%, 2.0%

1.6%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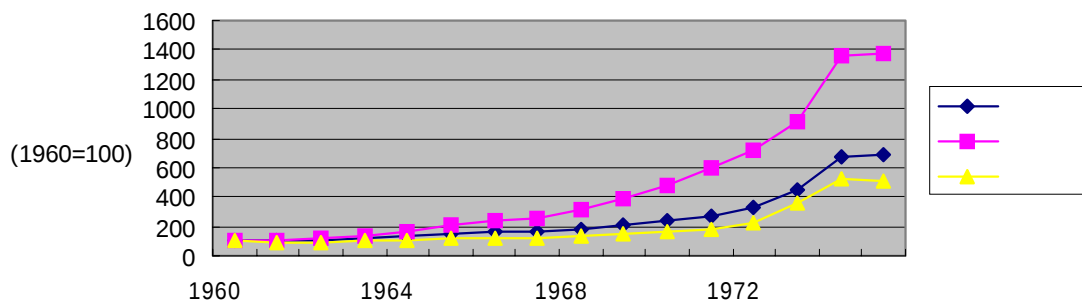
(< 8>).

가 1970 가 가

1960 , 1965 , 1970 1975 40.55 , 84.51 , 193.18
558.19 (IMF 1997).

가 2 (橋本 1999, p.61). 가
가 가 (< 1>).

< 1> , , 1960~1975



1964 OECD
가 1965
가
1960
가 1955 10 77 SDR(IMF Special Drawing Rights)
1965 21 52 SDR 1970 48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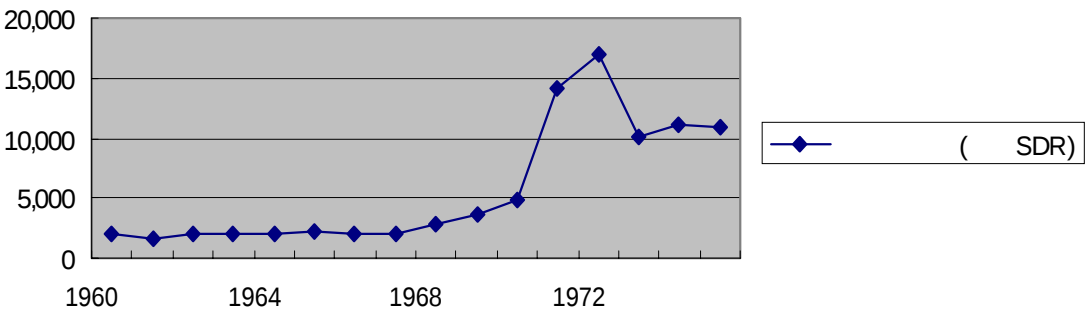
SDR 4 . 가 가 1971 ,
가 가 , 100 SDR
(< 9> < 2>).

< 9> , 1960~1975 < : SDR>

1960	1,949	1964	2,019	1968	2,906	1972	16,916
1961	1,666	1965	2,152	1969	3,654	1973	10,151
1962	2,021	1966	2,119	1970	4,840	1974	11,042
1963	2,058	1967	2,030	1971	14,148	1975	10,947

: IMF(1997).

< 2> , 1960~1975



: IMF(1997)

. 1965
, 1970
가 (Ozaki 1988, p.157).
1960

. 가

(Fukui 1972, p.343). 가

1960

가 (1960 5%)

< 10>

가

1960 2.0%

. 1960

가

15

가 . 1960 ~1970

가

15

가

11.1% 20.9% .

1970

(1970

~1975)

가 15

가

7.8%

7.1%가 .

10

1955

< 10>

, 1955~1970

	1955	1960	1965	1970	1975
	(10,000) 8,906	9,326	9,803	10,357	11,161
15	5,925	6,520	7,287	7,885	8,447
	4,194	4,511	4,787	5,153	5,323
	105	75	57	59	100
	4,090	4,436	4,730	5,094	5,223
	1,478	1,273	1,046	842	618
	2,612	3,164	3,684	4,251	4,604
	(%) 66.5	69.9	74.3	76.1	75.7

	1955	1960	1965	1970	1975
	70.8	69.2	65.7	65.4	63.0
	47.1	48.4	48.8	49.8	47.7
	2.5	1.7	1.2	1.1	1.9

: 安藤(1990, p.183).

< 11> < 3> 1970

가 . 1970 1.1%
1975 1.9%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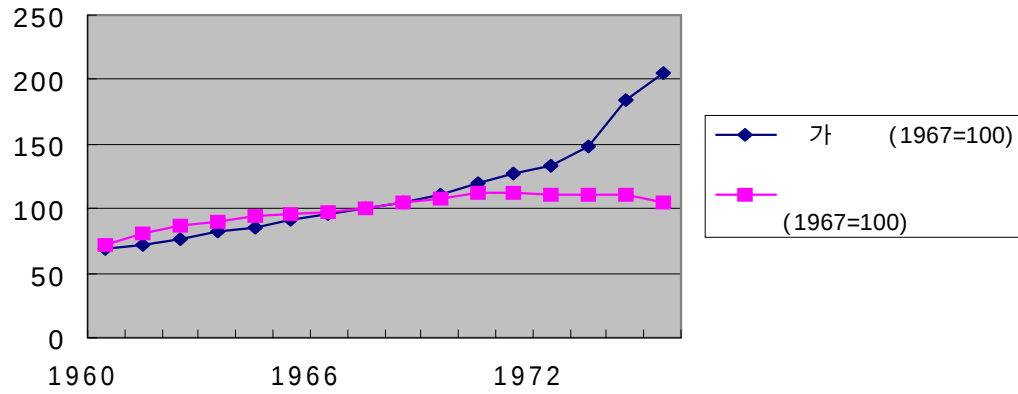
< 11> 가 , 1960~1975 < : 1967=100>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가	68.2	72.0	76.8	82.7	85.8	91.7	96.2	100.0
	71.5	80.4	86.3	89.7	94.3	96.4	96.9	100.0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가	105.5	111.1	119.7	127.3	133.2	148.8	183.4	204.8
	104.1	108.0	112.9	112.8	110.7	111.0	110.5	104.7

: IMF(1997) .

< 3> 가 , 1960~1975



가 가 3 가
 . 1973 가
 가 가
 . 1960
 가
 < 12>

1971

.16)

< 12>

< : 1970=100>

1960	27.2	74.2	36.9	31.1	84.3
1965	47.4	89.6	53.3	50.3	94.4
1968	75.5	95.3	79.8	73.1	91.6
1969	87.8	97.1	90.6	85.0	93.8

16)

1970

가

가

(1993, pp.125~199) Beasley(1973, p.317)

1970	100.0	100.0	100.0	100.0	100.0
1971	102.7	98.2	104.4	113.9	109.1
1972	110.3	94.9	116.0	131.7	113.5
1973	130.0	93.0	139.3	162.6	116.7
1974	126.7	89.4	140.4	205.1	146.1
1975	111.8	83.0	133.3	228.7	171.6

：安藤(1990, p.183).

< 12> 가
, ()
가 가 .
가
.
.
.
가
.
1960 30%
, (40%
가) (佐伯1989, pp.94~95).

< 13> 가 < : 1 (%)>

	가	1 가	2 가	
1960	2,078(34.3)	2,036(33.6)	1,942(32.1)	6,057(100.0)

	가	1가	2가	
1965	1,219(21.5)	2,081(36.7)	2,365(41.8)	5,665(100.0)
1970	845(15.6)	1,814(33.6)	2,743(50.5)	5,402(100.0)
1975	616(12.5)	1,259(25.4)	3,078(62.1)	4,953(100.0)

: 佐伯(1989, p.87).

가 가

1960
가 2가 (< 13>). 1960가 1
가 1가 76% 1972
(佐伯 1989, p.89). ,

.17)

1970
14 1955~1970 52.1%
(39.9%)가 1970~1980
가 60.2% (45.7%)가

< 14> GDP 가 (%)

	1 (A)			• •	(M)	(S)	1 (M+S)	(A+M+S)
1955~70	2.2	26.1	14.9	11.1	52.1	45.7	97.8	100.0
1970~80	- 0.1	23.6	7.8	8.5	39.9	60.2	100.1	100.0

: 南(2004, p.75).

17) Yamamura(1966)
(economic democracy)

가 . < 15> 1955 50
8 가 20
15 가 . 1973
1 21 24

< 15> 50 (1955, 1973)

		1955	1973
		0	0
		0	0
		1	0
		2	0
		0	0
		1	0
		1	0
		2	0
		1	1
		8	1
		0	1
		0	0
		0	0
		1	0
		3	3
		4	0
		1	3
		1	0
		3	7
		1	3
		5	4
		1	0
		20	21

			1955
		1	0
		0	2
		0	0
		5	2
	가	1	0
		0	0
		12	18
		1	3
		0	2
		0	1
		1	0
		1	0
		0	0
		15	24
		50	50

: 米川 (1997, p.8).

.18) < 16> 1968

. 1975 1965
 354.4% , 가
 326.4% . 1968
 가 . 1967 5
 1968 8 8 가
 . , 가 .

18)

(1993, p.129).

< 16> 가 < : >

			가	
1962	687.3	164.7	22.6	114
1963	904.4	186.5	42.7	136
1964	959.1	86.6	30.6	156
1965	549.1	84.3	44.6	167
1966	464.7	129.2	39.8	192
1967	879.8	162.8	32.1	239
1968	1,862.1	687.1	67.1	314
1969	3,523.3	2,485.1	70.4	368
1970	2,811.9	1,579.7	114.5	433
1971	4,256.9	2,667.3	255.5	488
1972	5,583.8	4,067.8	160.4	572
1973	2,926.1	2,038.6	167.3	715
1974	4,914.1	1,611.2	153.7	718
1975	9,695.7	3,575.1	166.5	712

: 安藤(1990, p.166).

.
.
17> 가 1 가가
. 1 가가
1 가
1963 1~3 , 4~9 , 10~29 , 30~99 , 100~299 300~
999 1 가가 : 20:11, 31:39, 40:55, 48:61, 62:69,
79:81 . 1975 1~9 34.5:34.0
48.8:54.4, 55.2:60.7, 71.3:71.9 89.2:84.6 .

< 17>

< 1 =100>

	1 가가						1					
	1~3	4~9	10~29	30~99	100~299	300~999	1~3	4~9	10~29	30~99	100~299	300~999
1960	—	22	28	37	51	71	—	33	44	52	60	75
1961	—	23	30	39	51	70	—	37	48	57	64	76
1962	—	26	33	43	55	70	—	40	52	61	67	79
1963	20	31	40	48	62	79	11	39	55	61	69	81
1964	20	31	38	46	58	74	11	36	59	63	70	81
1965	20.8	32.5	42.2	48.7	61.8	77.9	11.1	40.1	55.8	64.0	71.5	82.2
1966	20.5	31.8	41.4	47.5	61.4	78.6	11.0	40.3	55.7	63.8	71.4	82.2
1967	19.1	30.4	39.5	46.7	61.5	78.8	10.9	41.5	56.6	64.7	71.4	82.0
1968	20.1	31.9	40.9	49.7	63.6	81.8	11.5	42.5	58.2	65.2	71.6	82.2
1969	19.7	31.4	40.4	48.5	60.1	80.5	14.4	43.1	58.5	64.7	70.6	81.6
1970	19.6	32.0	41.2	48.1	60.3	77.0	11.8	43.6	58.3	64.3	70.7	82.4
1971	21.0	33.6	42.9	50.8	64.3	83.0	12.2	43.1	57.1	65.7	71.4	83.3
1972	31.2		44.1	49.6	64.1	84.3	34.8		56.5	62.6	71.4	83.5
1973	30.7		44.0	50.5	64.3	80.1	35.7		57.6	63.2	71.2	83.5
1974	30.8		45.8	54.6	69.6	88.5	34.4		56.0	62.5	73.0	85.7
1975	34.5		48.8	55.2	71.3	89.2	34.0		54.4	60.7	71.9	84.6

: 安藤(1990, p.182).

1,000

가가

1~9

300~999

1960 ~1970

500

2,384 2,225 159

100 ~499

2,432 2,236 196

30~99

2,484 2,254 230 (吉田・石原 2000, pp.40~41).

.

. 1 2, 3

.

. 가

.

4.

1964~1965

,

, 가

가

가

.

1968 GNP

2

. 矢部

(1998, pp.70~71)

,

,

,

가

,

IMF, GATT

19)

.

가

.

,

.

19)

1964 IMF8

OECD 가

三和(2004, pp.198~199) .

가

가

가.

1960 10 가

가 ,

1)

1973

가 가

1960

20) 가

(Bank of Japan)

(credit control)

가

20) 1947 (MPT, Ministry of Posts and Tel

ecommunications)

. Johnson(1989, p.208)

(Suzuki 1980, p.37).

2)

(patronage)

() 가 , Bretton - Woods 가 ²¹⁾, GATT(Gener 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Nixon

1971 (1 35) 가
가 . 가

.22)

가

.23)

(public good)

3)

가

가가

²¹⁾ 1971 8 Nixon 가
(managed fixed exchange rate system)
2

Smithsonian
1

. 12 10
1973
264 .

²²⁾

가 가

가

1973
가

²³⁾ (hegemonic stability theory)
984)

Kindleberger(1973) Keohane(1

가가

(Gourevitch 1986).

_____ , 1950

(Economic Planning Agency), (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OF, Ministry of Finance)

- 24) 가, 1960

(Fukui 1972).²⁵⁾

가 1980

1

(2004, p.278). Suzuki(1986) 1970

，三和(2002, p.198)

.26) 1964 IMF 8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

. Johnson(1982)

24)

(zaibatsu)

25) (天下り)
・ Tsuru(1993, pp.108~109)

(window guidance)가

26) 1950
67).

(Tyson and Zysman 1989, pp.66~

가

.

가

(1966~1970)

,
 , Havens(1987, pp.92~93, p.96, p.260)

\$1,500

\$10

.

가,

(Ozaki 1988, p.157; 土志田 2001, p.109~110),

.27) 春日(2002, p.201)

가

가 1960

1950

6 가

(Havens 1987,

p.93).

가

1)

Keynes

Say

가

가

(1997, pp.34~35).

가

27) Beasley(1973, p.306)

1930

가가 가

(Dosi, et al., 1989, p.14).

가가

가

(Dornbusch & Fischer 1994, pp.45~46).²⁸⁾

$$Y = C + I + G + NX(X - M),$$

Y: (GDP, gross domestic product)

C: (private consumption)

I: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G: (general government consumption)

NX: (export - import, -).

< 18>

(GDP) 1965 32 9

1975 150 4.5 가 . 1965 19
 1975 85 4.4 가 , ()
 1965 9 4 1975 48 4.9 가 .
 2 7 14 9 5.5 가
 .²⁹⁾ 1965~1975 1974

²⁸⁾

²⁹⁾ 1960 35%, 1965 47% 1970 52%
 .春日(2002, p.192)

< 18> (GDP) < : 10 >

	GDP						
1964	29,541	17,028	9,362	2,352	- 52	2,800	2,852
1965	32,866	19,239	9,782	2,690	460	3,451	2,991
1966	38,170	22,142	11,562	3,054	597	4,031	3,434
1967	44,731	25,405	14,288	3,410	100	4,311	4,211
1968	52,975	28,974	17,567	3,934	591	5,348	4,757
1969	62,229	33,300	21,441	4,558	991	6,558	5,567
1970	73,345	38,333	26,043	5,455	941	7,926	6,985
1971	80,701	43,230	27,637	6,422	2,198	9,452	7,254
1972	92,394	49,901	31,524	7,537	2,134	9,779	7,645
1973	112,498	60,308	40,938	9,336	30	11,291	11,261
1974	134,244	72,912	46,695	12,240	- 999	18,258	19,257
1975	148,327	84,763	48,136	14,890	63	18,982	18,919

: IMF(1997).

(4.4) (4.9) (5.5)

가(4.5) 가 .

< 19>

, 52.26~58.54, 29.76~36.39,

7.32~10.04 . 가 가

가 가

.

< 19> (GDP) , 1964~1975 < : %>

1964	57.64	31.69	7.96	-0.18

1965	58.54	29.76	8.18	1.40
1966	58.01	30.29	8.00	1.56
1967	56.80	31.94	7.62	0.22
1968	54.69	33.16	7.43	1.12
1969	53.51	34.45	7.32	1.59
1970	52.26	35.51	7.44	1.28
1971	53.57	34.25	7.96	2.72
1972	54.01	34.12	8.16	2.31
1973	53.61	36.39	8.30	0.03
1974	54.31	34.78	9.12	-0.74
1975	57.15	32.45	10.04	0.04

: IMF(1997).

, < 19> < 4>

가 가

가

가

가 .

가

50%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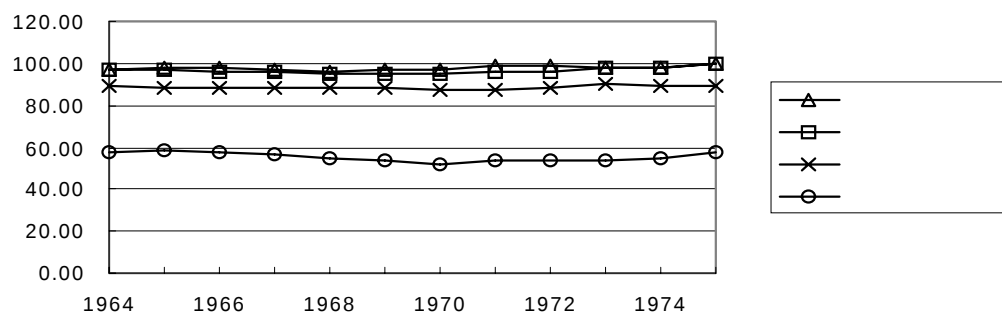
가

.

< 4>

(GDP)

, 1964~1975



: 19

19

가 가
(r=0.91)가 (r=0.64)
(20).

< 20>

Person - (N=11)

	GDP				
GDP	1.000	0.640* (0.034)	0.908** (0.0001)	0.297 (0.375)	- 0.167 (0.624)
	0.640* (0.034)	1.000	0.361 (0.275)	0.825** (0.002)	- 0.569 (0.068)
	0.908** (0.0001)	0.361 (0.275)	1.000	- 0.055 (0.872)	0.226 (0.505)
	0.297 (0.375)	0.825** (0.002)	- 0.055 (0.872)	1.000	- 0.704* (0.016)
	- 0.167 (0.624)	- 0.569 (0.068)	0.226 (0.505)	- 0.704* (0.016)	1.000

: IMF(1997); * p<0.01; **p<0.05.

가 ,30)

가 가

가 .

가

가

가 .

. < 21>

30)

. 1960

가
(正村・山田 2002, pp.113~115).

가 1960 1970 .

가

, 가

가 (1993, p.210).

< 21> 가

1960 30.2%

1970 35.0% 4.8% 가 0.8% 2.4%

가 가 10

5.7% 가

.

,

,

.

< 21> (1960, 1970) < : %>

	1960	1970	1960	1970	1960	1970	1960	1970
	30.2	35.0	24.0	26.4	14.2	13.5	24.0	26.4
	56.9	51.2	57.0	53.8	64.6	63.2	65.8	61.7
	8.9	8.2	13.6	15.9	19.8	22.5	13.6	15.9
가	3.6	4.5	2.9	2.2	0.7	0.5	2.9	2.2
/	11.4	11.7	20.7	23.1	54.	6.4	20.7	23.1
/ ()	11.1	10.5	18.3	21.5	4.6	6.1	18.3	21.5

: 安藤(1990, p.26).

三和(2004, pp.187~188)

. 1955 1970

가 가 (< 22>).

< 22> (1955, 1970)

			(-)	가 (1955~70)	가 (1955~70)
	1955()	1970()			
	% 66.2	% 50.3	% - 15.9	% 8.9	% 46.0
	8.0	23.4	+15.4	19.1	27.6
	3.2	6.1	+2.9	15.7	6.9
	13.2	5.9	- 7.3	5.0	3.9
	6.3	8.4	+2.1	13.0	8.9
	1.3	4.2	+2.9	19.9	5.0
	8.5	13.1	+4.6	14.2	14.3
()	6.7	11.4	+4.7	14.8	12.6
	100	100	± 0	10.9	100

: 三和(2004, p.187).

< 22> 1955~1970 8.0% 23.4%
가 15.4% 가 가 ,
66.2% 50.3% 15.9% .
橋本(1999, pp.142~143) (1955~1970)

. 가
가가 . 가
,

.
가 . 가
.

가 가 .³¹⁾ Forsberg(2000)

31) . 가 .

2)

(< 21>).

가

가

. 1950

1960 , ,

(橋本 1999, pp.153~154).

가

가

. 18

1965 2 700

1975 14 900 가

Balassa and Noland(1988)

1967~1985

(R&D, research and

d evelopment)

3)

1965

가 . 1970 가
, 가
(30%) 가
(Nakamura 1988, pp.59~61).
가 1968
. 1
가 .
,32)
. 1970 6
(No)
(Havens 1987, p.214).
가
. 1971 3
,
,33)
,
가 ,34) 1968
1 . , , , , TV
(Havens 1987, p.103). ()
가 .

32) 가 .

33) . 1971 8
7 ,

34) 1980 .

1969 ()
 , ()
 1965 3,500 1969 2 2,300 가 .
 () 1965~1975
 () 12 8,000
 (Havens 1987, pp.103~104).
 가
 . 가
 가 . 1970 30%가 ,
 15%가 (Beasley
 1973, 309). 가
 , 가
 가 (雁行)
 (flying geese model)가 .³⁵⁾
 , 1966
 (Asia Development Bank)³⁶⁾ ()
 20% 45%)
 .
 가
 가 . 가
 가 가 (2004, p.11).
 (economies of scale) 가

³⁵⁾ Vernon(1971) (product cycle theory) .
 Vernon , 가

³⁶⁾ 1960

가
가
가
가

3.

:

가
(가)
Nakamura(1988) 1956~1970 가
가 (< 23>).
(β_1) 1966~1970 0.0480
, (β_2 ,)
(1966~1970
0.7831). < 18, 19, 20> 22 < 4>

< 23>

< : 10 (1970 가)>

	α	β_1	β_2	R^2
$I_p = \alpha + \beta_1 K_p + \beta_2 Y_c: \quad / \quad = \quad + \quad /$				
1956~70	-587.38	0.0457 (1.94)	1.2538* (7.99)	0.9947
	α	β_1	β_2	R^2
1956~65	-738.68	0.0314 (1.02)	1.6099* (5.64)	0.9752
1966~70	1634.60	0.0480* (3.49)	0.8731* (6.23)	0.9408
$I_p = \alpha + \beta_1 K_p + \beta_2 \Pi_c: \quad / \quad = \quad +$				
1956~70	-9,494.30	0.2331* (25.4)	592.47* (3.14)	0.9817

: Nakamura(1988, pp.67~68); * $p \leq 0.05$; t- .

< 23>

가

β_1 (正) 가

가 가 1956~1965

1966~1970

가 ,

β_2

가가 가 Π_c ,

(Nakamura 1988, pp.67~68).

가 .

가 ,³⁷⁾

1960 가 (金

森 1997, p.88).

(expectation) (Blanch

ard and Fischer 1990, p.51). 8

가 가 .

. 正村 · 山田(2002,

p.113) 가

< 24> 가

	가	가 % (E),	(W), %	(E - W), %
1963	479,914	10.4	5.3	5.1
1964	520,815	11.5	5.4	6.1
1965	550,805	7.5	6.2	1.3
1966	579,958	8.7	6.2	2.5
1967	612,250	8.3	5.9	2.4
1968	640,848	7.5	6.7	0.8
1969	666,993	7.5	5.6	1.9
1970	692,083	5.6	4.5	1.1
1971	721,899	5.1	4.8	0.3
1972	739,623	5.8	4.0	1.8
1973	832,803	8.9	3.3	5.6

³⁷⁾

2000, p.75).

(measure of our ignorance)

(

	가	가 (E), %	(W), %	(E - W), %
1974	890,813	5.6	3.2	2.4
1975	969,666	6.3	2.0	4.3

: Nakamura(1988, p.184).

< 24> (失業) 가 . 가

1960

가 (E) (W)
가 (E - W) . 가

. Nakamura(1988, pp.183~184)

가
가 가

가

가 .

5.

橋本(1999, pp.126~127)

2

,
가

6 · 25

가 6 · 25 가 가

가

가

가

가

38)

1960 . 1964
가 .
가 (對)
가
Sato 1960 1970
\$10
(Havens 1987, p.5).
가
가
. 1965~1970
() \$180
1971 1975 \$6,100 가
1960 가
가
1973 1 27
. 9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1976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1975 4 Thieu 가 ()

³⁸⁾ NHK 1965 가 가 49%
가 1973 4% .
18% 13% 가 . NHK(1975).

(Havens 1987, p.234).

1975

가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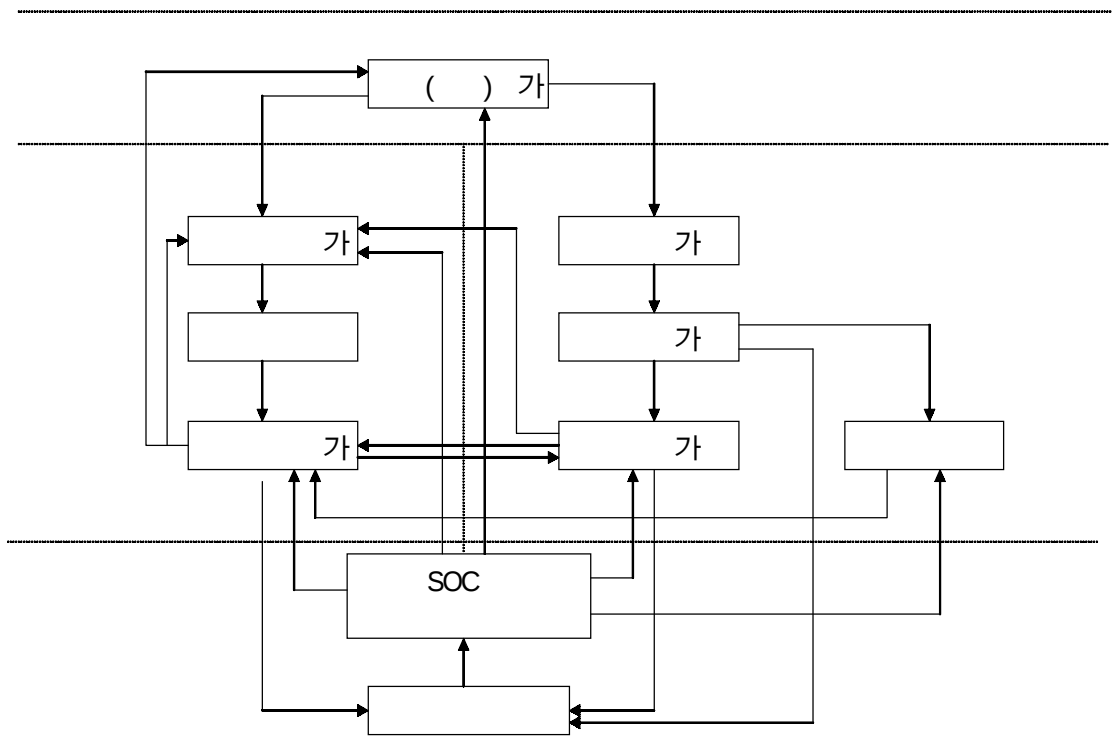
가

가

가

(Havens 1987, pp.245~248).⁴⁰⁾

< 5>



< 5>

39)

(春日 2002, p.202).

40)

()

1975

1978

1984

가 가
가

.
.

.
.

가
가

.

.

. 가 가
. 가

.

.

.

2

.

.

가

20

.

.

, 1960

가

.

.

.

－ 참 고 문 헌 －

1.

- _____, 1994, 『_____] .
- _____, 1993, _____, 『現代日本資本主義論: 社會主義 神話』 .
- _____: _____ .
- _____, 2004, “_____ .”
- _____, 『_____』 38:3.
- _____, 2004, _____, “1960 _____, ”
- _____, 『_____』 13:2.
- _____, 2002, “_____ : _____ (1965~1975)
- _____, _____, ” 『_____』 36:2.
- _____, _____, 1983, Harry G, Summers, 1983, *On Strategy: The Vietnam War in Context*, Carlisle Barracks,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_____, 『_____』 , _____: _____ .
- _____, 2002, “_____ .”
- _____, _____, 『_____』 , _____: _____ .
- _____, _____, 2003, 石井寛治, 1991, 『日本經濟史』,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_____, 『_____』 , _____: _____ .
- _____, _____, 2003, 『_____』 .
- _____: _____ .
- _____, 2000, 『_____』 , _____: _____ .
- _____, 1997, 『_____』 , _____: _____ .
- _____, _____, 2003, Warren I, Cohen. *The American Century*. 2002,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 .

『가』, : .

2.

Balassa, Bela and Marcus Noland. 1988. "The Changing Comparative Advantage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Balassa and Noland, eds. *Japan in the World Economy*.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Beasley, W.G. 1973. *The Modern History of Japan*. N.Y.: Praeger Publishers.

Blackburn, Robert M. 1994. *Mercenaries and Lyndon Johnson's "More Flags": The Hiring of Korean, Filipino and Thai Soldiers in the Vietnam War*. Jefferson, N.C.: McFarland.

Blanchard, Oliver Jean and Stanley Fischer. 1990. *Lectures on Macroeconomics*. Cambridge: The MIT Press.

Calder, Kent E. 1988. "Japanese Foreign Economic Policy Formation: Explaining the Reactive State." *World Politics* 40:4(July).

Daniel, Clifton, et al. 1987. *Chronicle of the 20th Century*. Mount Kisco, N.Y.: Chronicle Publications.

de Carvalho, Anthony & Paavo Suni. 2002. *War, Oil, and Economic Growth*.

Dornbusch, Rudiger and Stanley Fischer. *Macroeconomics*. 1994. N.Y.: McGraw - Hill, Inc.

Dosi, Giovanni, Laura D'Andrea Tyson, and John Zysman. 1989. "Trade, Technologies, and Development: A Framework for Discussing Japan." Chalmers Johnson, Laura D'Andrea Tyson,

and John Zysman, eds. *Politics and Productivity: The Real Story of Why Japan Works*. Berkeley: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Forsberg, Aaron. 2000. *America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Cold War Context of Japan's Postwar Economic Revival, 1950~1960*.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Fukui, Haruhiro. 1972. "Economic Planning in Postwar Japan: A Case Study in Policy Making." *Asian Survey* 12:4(April).

Gourevitch, Peter. 1986. *Politics in Hard Times: Comparative response to International Economic Cris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Havens, Thomas R. 1987. *Fire across the Sea: The Vietnam War and Japan 1965~1975*.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Johnson, Chalmers. 1989. "MITI, MPT, and the Telecom Wars: How Japan Makes Policy for High Technology." Chalmers Johnson, Laura D'Andrea Tyson, and John Zysman, eds. *Politics and Productivity: The Real Story of Why Japan Works*. Berkeley: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_____.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Keesing's Contemporary Archives(Keesing's Record of World Events).

Various issues.

Keohane, Robert O. 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ndleberger, Charles P. 1973.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rieger, Joel, ed. 1993. *The Oxford Companion of Politic of the World*. N.Y.: Oxford University Press.
- Nakamura, Takafusa. 1988. Trans. by Jacqueline Kaminski. *The Postwar Japanese Economy: Its Development and Structure*.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 NHK Hoso Yoron Chosa Kenkyujo. 1975. *Zusetsu sengo yoronshi*. Tokyo. Recited from pp. 3~5 in Thomas R. Havens. 1987. *Fire across the Sea: The Vietnam War and Japan 1965~1975*.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zaki, Robert S. 1988. "The Japanese Economic Internationalized." *Current History*(April).
- Suzuki, Motoshi. 1986. *Money, Finance,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in Japan*. New Haven: Yale University.
- _____. 1980. *Money and Banking in Contemporary Japa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Tsuru, Shigeto. 1993. *Japan's Capitalism: Creative Defeat and Beyo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Tyson, Laura D'Andrea and John Zysman. 1989. "Development Strategy and Production Innovation in Japan." Chalmers Johnson, Laura D'Andrea Tyson, and John Zysman, eds. *Politics and Productivity: The Real Story of Why Japan Works*. Berkeley: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 Vernon, Raymond. 1971. *Sovereignty at Bay*. N.Y.: Basic Books.
- Yamamura, Kozo. 1966. "Growth vs. Economic Democracy in Japan - 1945~1965."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5:4(August).

3.

正村公宏・山田節夫. 2002. 『日本經濟論』. 東京: 東洋經濟新聞社.

金森久雄. 1997. 『新入門日本經濟』. 東京: 中央經濟社.

小峰隆夫. 1997. “日本における經濟計劃の役割.” 香西泰 & 寺西重郎 編.

『戦後日本の經濟改革: 市場と政府』.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佐伯尚美. 1989. 『農業經濟學講義』.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橋本壽朗. 1999. 『戦後の日本經濟』. 東京: 岩波書店.

南亮進. 2004. 『日本の經濟發展』. 東京: 東洋經濟新聞社.

土志田征一. 2001. 『戦後日本經濟の歩み』. 東京: 有斐閣.

三和良一. 2002. 『概説日本經濟史: 近現代』.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吉田忠・石原健一. 2000. 『統計にみる日本經濟』. 東京: 世界思想社.

矢剖洋三・古賀義弘・渡辺廣明・飯島正義. 1998.

『現代日本經濟史年表』.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米川伸一・下川浩一・山崎廣明. 1997.

『戦後日本經濟經營史』. 東京: 東洋經濟新聞社.

春日豊. 2002. “成長と軋轢.” 森武磨・浅井良夫・西成田・春日豊・伊藤正直.

2002. 『現代日本經濟史』. 東京: 有斐閣.

4.

The United States Civil War Center. www.cwc.lsu.edu/cwc.

: 2004. 10. 5.

www.rjsmith.com/kia_tbl.html. : 2004. 10. 5.

5.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7.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CD Rom*.
 November. “가
” 2005 3 1 . 7
 (62 .)
 . (43 .) “가 (가) ‘
 , ” “
 ” . 41)(:)
 “ ”
 . 가 , “ ”
 ‘ 가 , ‘ , “ ”
 , “ ”
 ‘ , 가 ,
 “ ” .

41) 『 』, 2005. 3. 2.

참 전 용 사 수 기

1. 베트남전쟁 참전수기			
-			
2. 안케전투 참전수기			
-	2	3	

1967 4 14 1968 6 12
1972 4 11
4 26
2 3 (,)
.
()
.

베트남전쟁 참전수기

최 대 명

전 주월 한국군사령부 작전부사령관

- < >
1. 베트남에 파병되다
 2. 야간사령부의 편성 및 운용
 3. 주요 작전활동에 대한 회고와 평가
 4. 홍길동 작전의 배경 및 경과와 교훈
 5. 베트남의 땃(舊正)공세와 야전사령부의 활동

1.

1967 4 , 2

14

가

“
 !” .
 . , ,
 4 14 , .
 (Tan Son Nhat)
 .
 1 (4 18) (Tuy Hoa)
 .
 가
 .
 (), ()
 (), (),
 2 () .
 가
 400 km
 가
 .
 ‘ (Nha Trang) ’ ()
 . ()
 () , 가
 가
 2 , 1
 .
 300
 1 가 2
 , 1

, ,
 , 2 2 1
 , ()
 , (,
) 가 (,
) ,
 ,
 1 .

2.

, 가
 .
 .
 .
 가
 가
 .
 가 가
 가
 .

3.

가

가

, ,

5 16 ,

26 1 가

.

(1967. 7. 9~8. 26) .

.

. 가

.

28

.

가

가

.

28 가

.

.

가 (000)

.

가

.

. 가

“ ” ,
 ‘ , (.)
 “ 가
 ? ” .
 가 가
 26 ‘ , ,
 .
 가
 11 , ‘ ,
 (1·2 : 1976. 10. 24~11. 7).
 29 가 2
 .
 .
 가
 2
 1 2 , 1 1 ,
 1 2
 가 2
 .
 가
 .
 28
 .
 .
 가
 .
 28 (Tet) (: 1968. 1. 31)

가 .

가 .

가 .

가 .

가 26

26 ‘ ,

2 가 “

2 ,

1 ,

! ” .

가

2 ,

가 .

1968 1 ~ , (舊正)

1

가 .

2

20 .

.
 20
 .
 1 가
 ‘ ? ’ ,
 가
 , “
 ,
 가
 가? ” 가
 “ ! ”
 “ 가 가? ”
 가 가
 .
 .
 가
 가
 ,
 , 가
 가
 2
 가
 2 (1)
 .
 .
 .

가 . ()

.

.

,

가

.

.

4.

. 가 1

1967 7 9 8 26

가

가

.

가.

1967 4 14

1 (

)

2

(

,

)

.

1

,

,

.

5 16 , 26 2 가
가 .

,
2 가 .

.
가 .

.

1

,

,

, 가 .

가

,

가

가 (Ky Lo)
5 (, 95 , 18B
) .

가 .

.

가 ‘

, ‘
 가 .
 .
 .
 가
 가 ,
 ‘ ,
 .
 .
 가 6 19 ,
 5
 95 1 4
 , 2
 .
 1
 가
 가 .
 .
 .
 가
 .
 .
 28 .
 .

1 가
(
) D - day 7 9
가

26 -2
-3
()
28 -2
29 -2
30 1 29
가

28

2
7 9
(壯觀)
(UH - 1) 1 1
1
(CH - 47)

가

가

1

2

가

3

5

가

394 , 57 ,

185 , 45 ,

21 , 26 .

1

가

2

가 , 3

18B 29

가

271 , 61 , 2 ,

247 , 98 (, 23 ,

9 , 75 .

가

가 가

가 가 , ,
가 .
가 .
가 , 가

가
가 가 28
가 가 .

가
가
가
가

,

.

.

,

.

,

,

가

.

,

1

,

가

.

,

가

가 .
 , 가
 .
 가 .

5. (Tet : 舊正)

(舊正) . 1978 1 30
 ,
 가
 .
 가 가 .
 . ()가 “
 ,
 ?” 가
 가 .
 가 .
 .
 가
 1 .
 가
 ,
 1 가 ,
 1 가 , 가 .

1 가 가

.

1 가 .

1 .

OO

OOO “

1 !” . O

“ 가 ?” .

가 “ O ,

가 ”

.

“OO 1 ,

1 .” . “

1 가 !”

가

가 .

1

가 가 가

가 . 3 4

가 가 .

70 , 8 가

1 2 .

.

.

가 가 .

(舊正)

가 가 .

가 1968 3 ,

2

1

가 ,

가 1

2 3

2 G - 2, G - 3, G - 4

2

가 가

가

가 (可否)

가

, 1 , 1
 (26) 1 .
 , 1 .
 가 ,
 .
 , 1 가
 .
 , () 가
 1
 .
 가
 1 “
 () .”
 가
 1 가 가 . 가 OO
 “ ! ” 3 4
 2 3 2 .
 1
 가
 가 1 .

가

가

.

,

.

가

.

가

.

1968 6 12

. ‘ ’

안케 전투 참전수기

권 태 준

수도사단 기갑연대 수색중대 2소대 3분대 부분대장 예비역병장

<

>

1. 안케패스 Q커브에서 적의 기습을 받다.
2. 1중대기지로 철수
3. 사단장님의 1중대기지 방문
4. 신임 수색중대장의 부임
5. 638고지 공격에 가담하다.
6. 특공대에 차출되다.
7. 반복되는 638고지 공격
8. 638고지 공격 초기작전의 교훈
9. 지원중대의 탄약고 폭발
10. 638고지에 대한 항공폭격
11. 피보다 귀한 물
12. 638고지 공격을 위한 참병 임무
13. 드럼통을 엄폐물로 이용한 공격
14. 다시 시작된 2차 공격
15. 638고지 점령의 감격
16. 전사자 시신회수와 훈장수여
17. 전투기록과 교훈

1.

Q

1972 4 8 ,

가

2

1

1

5

4 12

19

()가

1

3~5

가

가

“

가

!”

2

가

“

”

“

!”

가

가

가

가 3

4~5

가

가 3

가

가 2

19

19

1

가 638

가 1

1 19

가

3 19

가

.
 2 가 가
 , .
 ,
 19 Q ! !
 가
 가 19
 가 가 5~6 가 .
 . 가
 19 . “ ! ! ” “ -
 ! ” 2 가 M60 .
 B40
 가 .
 가
 가 가 가
 가 .
 .
 AK 가 .
 2 가 , 가
 19 , 1
 가 가
 20 가
 . 1 , 3 ,
 .
 .
 Q

106

1 10 .

. 2

, 3

.

2 . 1

2 . 19 Q

가 .

2 . 5 . 5

.

가

2 ! ! , 19

2 .

“ ~ !~ ! ” . 2

, . “ !~ !

~ ” AK 가

. !~ ! 2

.

19 . 19

가

.

가 “ x x x ! ” , M16

“ ~ ! ~ ! ” .

가 .

가

.

19

가

가

638

“ !~ ~ ” AK 가

AK 가

가

“ 가 가? ” 가 . 가

2. 1

가

1

1

가

1

가

1

가

가

가

1 1 12

가 가

가

1

가

가

8 30 가

3

가

1

가

B -

B -

가

가 .

가 .

가 .

3 1 .

가 1 가

가 ,

19

1 가

“

!”

1 1

300m

,

,

,

,

, 1

가

,

, 가

4

가

106

가 . 가
! !

가

1

가

()

1

19

가 가

가

가

가

1

“ ! ! ”

가

“

가

! ”

5. 638 가 .

가 . 638

,

638

.

가 638

,

638

가 2 가

300m~35

0m

638 1 1

가

638 가

1 가 638 2

가

1 가 1

1 가

1 가

.

2 3 가 638

. 638

638 30m 1 . 3 가

638 .

1 638 ,

3 , 1 8 가 638 .

1 638 가 가

638 가 .

가 1 · 3

2

.

1 · 3 1

3 . 1

3

“ !~ ! ”

1

. 1 1 638 가

.

.

가

638 가

가 “ . ” M60

638

.

“ ~ ! ”

가 ~ 가 - 가

- 가

가 3
가

“ ! ”

가

가

가

가

가 2

가 “ 가 . ”

가

2

2

가

가 1

가 - 가

가

가

가

3

638

가 2 .

가 .

가 .

가 . “ x x x ” “ !

가 . “ ! x x x !

가 ! ”

가 !

가 ! ”

1

M60 M16 . “ - ! -

! ! ” 가 .

M60 638

638 가 .

가

.
 1
 .
 1 가 1

 3
 ,
 3
 ,
 ,
 “ _ ”
 3 “ ! x x x !
 . ”
 가
 3
 가
 가
 가
 가
 가
 21 2 가
 638

3

“

! !”

638

가

가

가 1

1 - 3

가

4 30

가

가

가

가

6.

2

가

“ 1

, 2 - 3

() ,

”

3

638

가

4

”

“ × × ×

!”

가

638

가

가

4 ,

가

638

5

가

가 638 300m .

가 .

638 .

가 가 가 가

638 8.5 가

30m .

10m .

가 “

가

.”

“

가 .”

가 .

가

가 638 .

가 .

가 .

가 가

638 .

가 638

“

”

가

7. 638

638

638

가

가

638

1

가

가 .

12 가 가 . 가 . 1

638 가

“ × × × ! ! ” , 가

가 가 .

가 .

“ 4 40 , 05 638 ! ” .

가

638 7

3 , 1 8 가

1 638

“ ~ ! ! ~ ! ~ ”

M60 M16 AK

638

“ ! ~ ! ! ”

“ ! ! ! ~ ”

‘ . ! ~ ’

B40 AK

“ - ~ ~ !~ !~ ! ”

. 638

가 8

. .

81m 가

.

“ ! ! ” 가 .

. 가

.

. 3 1 8 가

,

.

가

.

“ ! ! !~ !~ - ! ! ! ”

가

.

.

가

.

.

.

8

가

.

가

3m

AK

.

“ ~ ~ ! ! ” 3m

“ ! ”

8 1 8 가

3 1 8 가

3 1 8 가
2 M16
1
2 가

2
, B40

가 M16
가

.
 . 1
 . M16
 가 1
 가 1
 .
 .
 가 .
 가
 1
 .
 1 . 1 가
 “ ! ” . 1
 , .
 . 가 638 3 가
 05 가
 638 5
 1 .
 가 .
 .
 가 가 , 가 가
 .
 . 7~8 가
 .
 “ !~ !~ ”

1

1

19

1

가

638

2

“

”

1

638

가

M16

1

8. 638

가 638 2
1 가 ,
.
1 638 ,
.
638
.
가 가 ,
가 가 .
638
가 .
638
.
638 1 638
.
1 가 1 가 가
가 .
.
1
20~30
.
19 가 1
.
.

“ 19 ! ” .

,

638

가

.

. 1

1

175km

.

638

.

638

1

가

1

.

.

가

.

638

1

.

가

.

.

가

.

.

,

.

가

,

.

,

()가

.

.

가

.

.

,

,

가 가 가 . 가 가 . 가 가 ? 가 가 . B52 100 638 19 가 가 1 가 가 가 ? 가 ?

9.

“ ~ ~ ! ! ~ ”

가 . 1

가 2

40~50m

가

가

1

가

TOT 1 가

2

가

가 가

“가 ~ !”

가 가

가

. 638

가

가 가

가

가

가

가“가 ~ !”

.“

가

!”

가

10. 638

. 638

가 . 638 .

가

“
!”

가

가

가

638

가

가

가

가

가

2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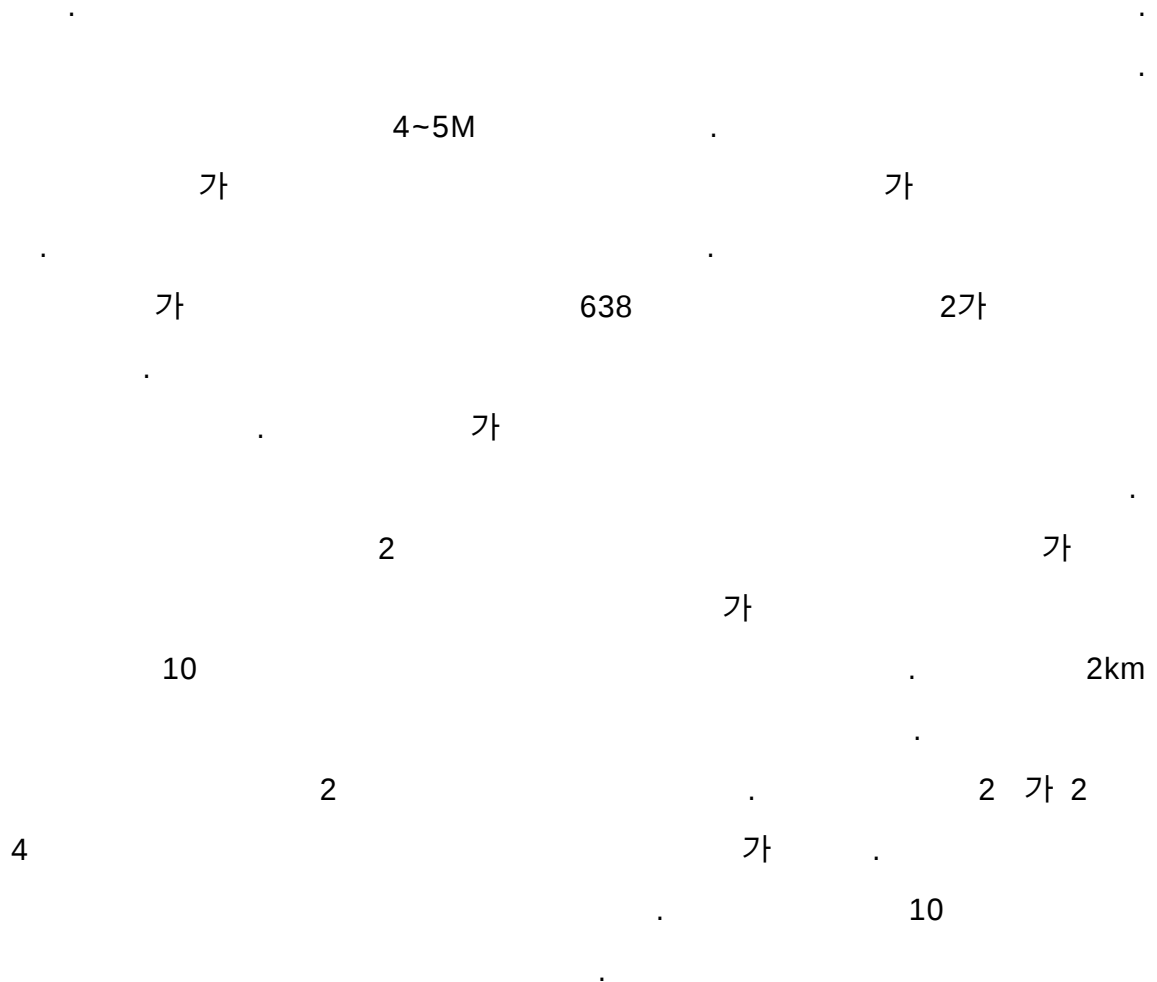
가

가

50 - 60M

“ - ~ ”

가



11.

“ , . ”
가 .
“ ! , 가
..... ”

“ 가 가 . ”

.
.

.

6

.
. 638

가

가 638
6 . 638

.

. 1 가

.

.

, 가

3 2 , 1 .

1

가

.

가 . 638

.

가

가

.

.

가 6

.

.

가 B - 1 (

)

가 .

가

.

.

,

‘ B - 1 ’

.

.

“

! ”

“

! ”

.

.

6

,

. 638

.

가

.

.

.

.

.

.

,

.

.

.

.

.

가

.

.

가

.

12. 638

2 638

가

20

가

가

가

가

3

1

1

638

가

19

638

가

가

가

가

3

3

가

가

가

가

가

200m

AK

가

가

“ ! !
 ! ” 가
 .
 .
 2~3
 가 . 가 가
 .
 가!, 가 .
 가 .
 , .
 1 638 5
 ,
 가 . 7
 “ ? ”
 가 가 .
 .
 . 7 4
 .
 .
 .
 가
 .
 “ ! 가 . 가 1
 8 가 . 가
 ! ” ,
 가 .

638

2 가

1

638

가

. ‘ L ’

AK

“

!”

“ ! ! ”

13.

“

가

!”

가 가

5

1

가

5

가 가 .

가 .

B40



가

,

가 가 가 가 ‘ ’ ‘ ; ‘ 가 ’ “ !

가

가 ?”

가

. 638 가

가

,

. 638 2

가

‘ 가 ’ ‘ 가 ’

,

가.

가

가.

, 가 가 . 가

.

,

.

10 638 2 . 1

. 1

.

가 .

가

가 가 ,

. “ ! ? ” .

“ ! . ” ,

“ . ~ ”

.

8 가 .

,

.

가 .

가

“ . ”

가 “ ! 가 가 ! ” .

“ 가 ! ” .

가 .

.

.

“ 가 가 . ”

가 가 20m 가 .

가 .

가 .

가 .

50~60m .

10 m .

2m .

“ !~ ”

M79 가 M16

2 가

“ ... ~~~ ”

가? 5m M60

가

. 20m

“ x x x ! x x x ! , ,

! ”

1

M60

5

“ !~ ”

2

3

가

가

가

가

가

가

1

14. 2

638

가 .

6.25 .

가

60~70 m .

2

가 가 .

가 .

가

“ !~ ! ” , ,

“ !~ ~ ~ ”

KBS - TV가

638

가 () 638

“

.”

가 .

“ ! ”
.
“ !
?
?
가 2
.
가
20~30m
가
가
1 2 1
2 가
가 가
20m 1 1
1 638
2 가
가
가 가

99% 가 1

, 1

“ 1 가 , 3

, 2

, M60

, 2 .” 1

가 “ ! ”

1 가 M79

가

1

“ 가 ! ”

가 . 1

가

4~5m ,

“ ! ”

1

. 1 1

, 가

638 가 1~2

가

2

. 638

80%

가 .

15. 638

4 4 가

. 6 가 .

4 가

가

. 가 4 ,

04 가

05 가 .

, 3

“ - ”

가 .

2 - 3

“ !~

!~ ”

4 .

“ !~ ~ ”

가

4 .

638

가

.

.

. 638

.

.

가

.

가

.

.

가

.

.

.

.

.

가

4~5

.

2~3

.

,

.

1

가

,

1

.

가

.

16.

638

가

.

,

,

.

가 M14

가

. 638

638

, 1

가

638

2m 가

4

가

가

가

가

48

1

2

.
 , 가 .
 .
 .
 .
 2 가 .
 가 가 2 1 4
 가, 가 .
 가 ,
 .
 가 .
 가 .
 가 .
 .
 638 638 4
 .
 638 4
 가 , 638
 .
 .
 1
 . 1
 1 .
 가
 가
 1 ,
 .

가

가

가

“ ! ” “

!

! ”

가 가

“

!

! ! ! ”

2

가

3

가 2

17.

가 1 가 1

가? 가

705 가

가 ? 1

. 638

638

2 3 11 가 1 가 1

가 20 가

4 30 15

, 3 가

가

638 638

가 가 638

가 가

“

가

“ ”
“ ”
가 가

2
가 638
638

2 19 가
,

가
가

,

.

가? 1 (

) 1 5 가 ()

1

가 ()

638 1

638 가

가 1

가 , 가

1 가 TNT가 . 1 가

가

81mm

82mm

가

가

1

가

638

6

가

가

가

가

가

가

. 638

가

638

가 . 1 638
가 . 가 .
가
.
.
.
.
.
,
가
.
.
.
,
. ‘ ’

□

○

- ()
- ()
- ()
-
- 39
- ()

○

- ()
- ()
-
- ()

□

○

- ()
- (•)
- 3
- ()

○

- ()
- 가 가 ()
- ()

☐

(Trieu Minh Phun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niversity of Missouri ()
-
-
- ()



- Political Economy of Elections in East Asia()
-
- .

□

○

•

()

○

•

2 3 ()